#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차 현 숙•최 혜 선

## 입법평가 연구 13-24-(6)

#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차 현 숙•최 혜 선

#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 A Study on Local Assembly's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연구자 :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br>Cha, Hyun-Sook<br>최혜선(교토대학교 객원연구원)<br>Choi, Hye-Seon

2013. 10. 15.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square$ 지방자치 시행 이후 20 여년의 세월이 지나 지방의회의 위 상이 강화되고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임
$\square$ 특히 최근 들어 지방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하여 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 필요성 검토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로 지 적되고 있음
$\square$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지방 조례로의 도약을 위하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 고 있으며, 현재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 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실정임
$\square$ 이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

## ㅍ. 주요 내용

지방의회 조례의 관련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관련 현황 검토

○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square$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및 시사점

-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분석
- 일본의 조폐 평가를 통한 시사점 도출
$\square$ 조례 입법평가 관련 조례 및 관련 조례안에 대한 분석
- 광주광역시 조례 분석
- 관련 조례안 분석
$\square$ 표준조례안 마련 및 제시


## III. 기대효과

$\square$ 조례 입법평가 도입시 활용가능한 표준조례안을 제시함으 로써 조례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조례 입법평가 의 실질화를 통하여 좋은 조례가 제정•개정되는데 일조함

2 주제어 : 입범평가,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사 전적 입범평가, 표준조례안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square$ As more than 20 years have been passed since enforcement of local autonomy, it's been the point at which the status of local assembly has been strengthened, and the role of that has been enlarged.
$\square$ It's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that the effectiveness and suitableness of the enacted ordinances, whether or not the purpose of those was achieved, the review of the need for revision of ordinances associated with the higher law amendment and etc. were not performed properly, whereas there is a tendency that recently in particular, ordinances initiative number of local assembly has increased dramatically.
$\square$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to leap for better local ordinances, the debate of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of ordinances has been activated, and there are currently local governments that enact the ordinance of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square$ This study intends to prepare and present the applicable Ordinance Standard, when the local assembly tries to introduce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in connection with local assembly's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the demand of which will be expected to continuously occur.

## П. Main Contents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ordinances of local assemblyO the review of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O the review of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The thought-provoking and present condition of the ordinances evaluation of Japan

O the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ordinances evaluation of Japan

O the presentation of the thought-provoking through the ordinances evaluation of JapanThe analysis of the ordinances related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and of the related ordinances

O the analysis of the ordinances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O the analysis of the related ordinances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Ordinance Standard

## III. Expectation

$\square$ In introducing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by presenting applicable Ordinance Standard, this study intends to promote the systematiza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and to help good ordinances be enacted and amended through the practical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D Key Words : legislative evaluation, local assembly,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proactive legislative evaluation, ordinance standard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5
제 1 장 서 론 .....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4
I. 연구의 범위 ..... 14
I. 연구방법 ..... 15
제 2 장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 17
제 1 절 입법평가 개요 ..... 17
I. 입법평가의 개념 ..... 17
ㅍ. 입법평가의 목적 및 기능 ..... 18
III.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 19
제2절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 20
I. 조례 발의 및 제정절차 ..... 20
I. 조례 관련 현황 분석 ..... 23
III.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의 문제점 ..... 27
IV .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요건 ..... 29
제 3 절 현행 조례입법평가 관련 조례 및 조례안 분석 ..... 31
I. 광주광역시 조례 분석 ..... 31
․ 경기도의회 조례안 ..... 38
제 3 장 일본의 조례 평가 ..... 47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법무 ..... 47
I．정책법무의 의의 ..... 47
ㅍ．정책법무의 배경 ..... 48
III．정책 법무（론）의 제 영역 ..... 49
제 2 절 일본의 조례 평가 개관 ..... 54
I．법제평가 시스템의 필요성 ..... 54
․ 법제평가의 의의와 종류 ..... 56
III．자치입 법평가 시스템 ..... 57
IV．조례평가의 관점과 기준 ..... 61
V ．종합적 평가의 한계와 가능성 ..... 68
제 3 절 일본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조례 분석 ..... 74
I．가나가와현（神奈川県） ..... 74
П．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神奈川県 相模原市） ..... 79
III．북해도（北海道） ..... 85
IV．시즈오카시（静岡市） ..... 88
V．니가타시（新潟市） ..... 88
제 4 절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의 시사점 ..... 89
I．일본 조례 평가의 과제와 전망 ..... 89
․ 조례평가를 위한 평가법무의 구조 ..... 97
III．조례 입법평가 도입에의 시사점 ..... 99
제 4 장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 101
제 1 절 조례평가와 관련된 지표 ..... 101
I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 101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의 평가기준 ..... 111
제 2 절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지표와 표준조례안 ..... 113
I．조례 입법평가 지표 ..... 114
ㅍ．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 119
제 3 절 향후 과제 ..... 126
참 고 문 헌 ..... 127
【부 록】
부록 1 일본 도도부현 의회기본조례규정항목등 비교표 ..... 133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141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 정착되어 시행된 지 어느덧 20 여년의 세월 이 지나서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그 역할 또한 활발해지면서 지방의 회의원의 조례 발의 건수도 해마다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다. 규모가 큰 지방의회의 경우 연간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백여건 을 상회하는 등 조례의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 및 상위법령 개정 에 따른 조례의 개정 필요성 검토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 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지방 조례로의 도약을 위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 법 평가조례안"이 발의 된 바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도 제정 조례 및 개정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입법평가)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 하고 있는 등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도입 논의 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는 달리 어떤 조례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나 세부적인 논의 는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동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조례를 대상

으로 한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지표를 포함하여 지방의회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I.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최종 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재 지방의회 조례관련 일반적인 현황 및 조례 제•개정 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는 조례 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제도의 외형을 설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다음으로 조례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조례평가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조례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조례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거 나 실시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안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 을 실시한다. 현행 조례 입법평가 관련 조례의 분석을 통하여 표준조 례안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보다 발 전적인 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결과로 마련된 표준조례안에 대하여 다양한 방 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지방의회의 관련 전문가 및 입법평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결과로 제시하게 될 표준 조례안을 확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 ㅍ．연구방법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조례를 대 상으로 한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지표를 포함하여 지방의회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문헌연구，비교법적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연구는 조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대상 으로 1 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기존의 조례 에 대한 다양한 평가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조례입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례 입법평가 도입에 관한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현재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지방의회의 조례 및 조례안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2013년 9월 현재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제 4251호로 2013년 7월1일 제정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 례」와 발의 예정인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 례안」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또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조례평가 관련 자료를 분석 하고 지방별 실시 현황 및 조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지방의 사 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이러한 일본의 조례평가 현 황 및 사례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표준조례안 마련에 있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이 연구에서 조례평가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데 있어서 일본만을 대상으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수시과제의 연구기간이 3 개월로 비교적 짧고，예산이 한정적이 라는데 있다．또한 일본의 경우 이미 조례평가를 도입하여 수년간 시 행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의 조례평가 관련 현황 및 사례만을 분석대 상으로 하여도 유사한 체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시사점을 다수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례 입안 관련 전문가 및 입법평가 전문가 등 관련 전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입법평가의 제도화 방안 마련 및 표준 조례안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표준조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제 2 장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 제 1 절 입법평가 개요

## I. 입법평가의 개념

일반적으로 말하는 입법평가란 입법 활동에 계획성을 구비하여 법 규의 무절제한 증식을 억제하고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솔함을 제 거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입법현상을 평가함으로써 과학적인 입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학의 방법론적 연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 다.1) 입법과정과 관련하여 입법평가를 살펴본다면 입법자가 "좋은 법 률"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입법과 정을 거치는 동안에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 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칭하여 입법평가라고 할 수 있다.2)

현재까지 입법평가의 개념은 연구의 목적이나 연구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용어와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입법평가(Gesetzesfolgenabschätzung), 영미권 국가에서는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mpact Assessment)와 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용 어를 우리나라에 소개한 학자들이 사용한 용어들을 살펴보면 ‘입법평 가' 뿐만 아니라 '법률결과예측’ 또는 '법률결과평가', '입법영향평가', '입법영향분석' 등의 용어를 보다 적합한 용어로서 주장하는 의견3)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입법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 2002. 3., 20면.
2) 입법평가의 개념 및 용어사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현재까지도 공존하고 있다.
3) 입법평가의 개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논의는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 구원(2008), 533-538쪽; 최윤철/홍완식,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법 제처 정책보고서(2005), 17-18쪽; 김기표, 앞의 논문(2011), 12-16쪽 참조.

## ․ 입법평가의 목적 및 기능

법률의 제정 내지 개정은 한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는 과정이며, 사 회변화에 따른 법률의 변화는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에 커다란 영향력 을 행사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 폐지 등 법률의 변화와 관련하여서 신중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회변 화 및 그에 따른 법률의 변화 및 그 필요성을 충분히 분석하여 입법 에 반영해야 한다. 즉 입법자에게 "좋은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 적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에 따라서 입법자는 "좋은 법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좋은 법률"인가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이념에 따라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좋은 법률"은 헌법정신을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해주는 법 을 말한다.4) "좋은 법률"은 또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으며, 국가발 전을 선도하고, 국민의 법 생활에 기여하는 내용을 가진 법률들이 국 회에서 입법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견 교환 및 대화와 타 협•설득의 과정을 포함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입법 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5) 이러한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것은 입 법의 궁극적 목적이며,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입법평가의 목적이라 할 것이다.

입법평가란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영향을 사전 및 사후에 분석 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 법평가제도는 법률의 입안부터 법률안 초안이 작성되고 법률안이 법 률로서 시행된 후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까지를 분석•평가하여 보다

[^0]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입법평가는 생활관계 의 복잡화, 다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법률의 홍수현상으로 인한 규범의 수용성, 실효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서 사전적으로는 적절한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작용을 함과 동시에 사 후적 평가를 통하여 입법 활동에 계획성을 갖추도록 하여 입법과정에 서의 발생할 수 있는 경솔함을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입법의 현상을 검토하여 과학적인 입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6)

## III.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입법과정의 합리성•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려된 입법평가가 다양한 방법론을 통한 학제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그 시간 및 예산 소요 등에 있어서 장시간 및 고비용을 요하는 결과로 나타나 기도 하여서 모든 입법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하여 입법평가가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입법 평가가 시간적 - 비용적으로 부담이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 라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예를들자 면 법안 자체가 높은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하거나 사회•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큰 경우 등에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평가의 규모나 실시여부는 법규범의 강도•기능•중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어 야 한다. 이렇게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입법평가가 가지는 순기능은 살리면서 시간•비용적 부담으로 인하여 입법 내지 입법과정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6) 차현숙, "의원입법의 입법평가와 평가방법론에 관한 소고", 입법평가연구 제3호, 한국 법제연구원(2010), 91-92쪽.

## 제 2 절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상으로 살펴본 입법평가를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 고 있다. 조례 입법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된 이러한 논의는 최근 조 례 발의 건수의 증가 등 조례 제•개정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 먼저 조 례 제정 절차 등에 대하여 개관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발의 등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 I. 조례 발의 및 제정절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으로 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정된다. 우리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 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 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 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자치법」은 제 22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 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 서 제정하는 자치법의 하나로서 조례의 제정은 헌법규정에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경우 개개의 법률에 근거규정 이 없더라도 제정이 가능하지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벌칙 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원발의, 주민발 의의 세 가지 형태로 제•개정안이 발의된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 분 의 1 이상 또는 의원 10 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지방자치법 제66 조제 1 항）．
주민청구 조례의 경우，「지방자치법」 제 15 조에서＂ 19 세 이상의 주민 은 시•도와 제 175 조에 따른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 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 70 분의 1 이하，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 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 분의 1 이상 20 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 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발의되면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조례제정의 절차를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조례 제정 절차＞


조례제정의 절차에 따라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소관위원회의 소속위원은 그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하 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

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음으 로 위원회에 조례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이를 의사일정에 넣어 위원 회의 회의시에 상정하고 심사한다. 조례안이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취 지설명서•조례안 기타 참고자료를 위원에게 배부한다.

조례안이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설명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우에는 발의한 의원이 설명 하되 발의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 인이 대표하여 설명하며, 발 의자가 설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발의에 찬성한 의원이 대리하여 설 명할 수 있다. 제안자의 조례 제정에 관한 취지 설명이 끝나면 소관 전문위원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한다. 수정의견이 있을 때 에는 조례안에 주서로 표시하여 의원들이 수정내용을 알아보기 쉽도 록 표시하여 배포한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끝나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그 제안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 련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할 수 있다. 질의는 그 조례안에 관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찬•반 토론을 실시한다. 조례에 관 련된 질의와 토론이 끝나면 표결을 통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 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 과된 조례는 5 일안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고, 이송을 받은 단 체장이 20 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 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조례안의 일부나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재의에서 다시 의결되면 조례로서 확정된다.

## ㅍ. 조례 관련 현황 분석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방의회별로 지방의회 의원 1 인당 발의 건 수 및 조례 제•개정 건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전국시도현황(2007년~2012년)>

| 지자체명 | 구분 | 지방의회의원 1 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 지방의회의원 발의 | 지방의회의원 |
| :---: | :---: | :---: | :---: | :---: |
|  |  | $(\mathrm{A} \div \mathrm{B})$ | 조례 제•개정건수(A) | 정수(B) |
|  |  | (단위 : 건) | (단위 : 건) | (단위 : 명) |
| 서울특별시 | 2007 | 0.32 | 34 | 106 |
|  | 2008 | 0.42 | 45 | 106 |
|  | 2009 | 0.71 | 75 | 106 |
|  | 2010 | 0.63 | 72 | 114 |
|  | 2011 | 0.63 | 72 | 114 |
|  | 2012 | 1.01 | 115 | 114 |
| 부산광역시 | 2007 | 0.32 | 15 | 47 |
|  | 2008 | 0.34 | 16 | 47 |
|  | 2009 | 0.47 | 22 | 47 |
|  | 2010 | 0.3 | 16 | 53 |
|  | 2011 | 0.87 | 46 | 53 |
|  | 2012 | 0.87 | 46 | 53 |
| 대구광역시 | 2007 | 0.83 | 24 | 29 |
|  | 2008 | 1.1 | 32 | 29 |
|  | 2009 | 2.03 | 59 | 29 |
|  | 2010 | 0.97 | 33 | 34 |
|  | 2011 | 1.29 | 44 | 34 |
|  | 2012 | 2.29 | 78 | 34 |

제 2 장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 지자체명 | 구분 | 지방의회의원 1 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 지방의회의원 발의 | 지방의회의원 |
| :---: | :---: | :---: | :---: | :---: |
|  |  | $(\mathrm{A} \div \mathrm{B})$ | 조례 제 • 개정건수(A) | 정수(B) |
|  |  | (단위 : 건) | (단위 : 건) | (단위 : 명) |
| 인천광역시 | 2007 | 1.45 | 48 | 33 |
|  | 2008 | 0.91 | 30 | 33 |
|  | 2009 | 1.91 | 63 | 33 |
|  | 2010 | 0.84 | 32 | 38 |
|  | 2011 | 2.58 | 98 | 38 |
|  | 2012 | 1.89 | 72 | 38 |
| 광주광역시 | 2007 | 1.37 | 26 | 19 |
|  | 2008 | 0.68 | 13 | 19 |
|  | 2009 | 2.11 | 40 | 19 |
|  | 2010 | 1 | 26 | 26 |
|  | 2011 | 1.65 | 43 | 26 |
|  | 2012 | 2.77 | 72 | 26 |
| 대전광역시 | 2007 | 1.26 | 24 | 19 |
|  | 2008 | 0.53 | 10 | 19 |
|  | 2009 | 1.53 | 29 | 19 |
|  | 2010 | 0.38 | 10 | 26 |
|  | 2011 | 1.12 | 29 | 26 |
|  | 2012 | 1.35 | 35 | 26 |
| 울산광역시 | 2007 | 0.79 | 15 | 19 |
|  | 2008 | 0.37 | 7 | 19 |
|  | 2009 | 1.47 | 28 | 19 |
|  | 2010 | 0.5 | 13 | 26 |
|  | 2011 | 0.58 | 15 | 26 |
|  | 2012 | 0.5 | 13 | 26 |

제 2 절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 지자체명 | 구분 | 지방의회의원 1 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 지방의회의원 발의 | 지방의회의원 |
| :---: | :---: | :---: | :---: | :---: |
|  |  | $(\mathrm{A} \div \mathrm{B})$ | 조례 제•개정건수(A) | 정수(B) |
|  |  | (단위 : 건) | (단위 : 건) | (단위 : 명) |
| $\begin{gathered} \hline \text { 세종특별 } \\ \text { 자치시 } \\ \hline \end{gathered}$ | 2012 | 2 | 30 | 15 |
| 경기도 | 2007 | 0.42 | 50 | 119 |
|  | 2008 | 0.44 | 52 | 119 |
|  | 2009 | 0.73 | 87 | 119 |
|  | 2010 | 0.37 | 49 | 131 |
|  | 2011 | 0.73 | 96 | 131 |
|  | 2012 | 0.93 | 122 | 131 |
| 강원도 | 2007 | 0.2 | 8 | 40 |
|  | 2008 | 0.55 | 22 | 40 |
|  | 2009 | 0.48 | 19 | 40 |
|  | 2010 | 0.13 | 6 | 47 |
|  | 2011 | 0.28 | 13 | 47 |
|  | 2012 | 0.72 | 34 | 47 |
| 충청북도 | 2007 | 1.32 | 41 | 31 |
|  | 2008 | 1.03 | 32 | 31 |
|  | 2009 | 1.65 | 51 | 31 |
|  | 2010 | 0.86 | 30 | 35 |
|  | 2011 | 1.09 | 38 | 35 |
|  | 2012 | 1.57 | 55 | 35 |
| 충청남도 | 2007 | 0.47 | 18 | 38 |
|  | 2008 | 0.21 | 8 | 38 |
|  | 2009 | 1.18 | 45 | 38 |
|  | 2010 | 0.62 | 28 | 45 |
|  | 2011 | 0.51 | 23 | 45 |
|  | 2012 | 0.52 | 22 | 42 |

제 2 장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 지자체명 | 구분 | 지방의회의원 1 인당 <br> 조례 제•개정건수 | 지방의회의원 발의 | 지방의회의원 |
| :---: | :---: | :---: | :---: | :---: |
|  |  | $(\mathrm{A} \div \mathrm{B})$ | 조례 제•개정건수(A) | 정수(B) |
|  |  | (단위 : 건) | (단위 : 건) | (단위 : 명) |
| 전라북도 | 2007 | 0.34 | 13 | 38 |
|  | 2008 | 0.34 | 13 | 38 |
|  | 2009 | 0.55 | 21 | 38 |
|  | 2010 | 0.3 | 13 | 43 |
|  | 2011 | 1.16 | 50 | 43 |
|  | 2012 | 0.37 | 16 | 43 |
| 전라남도 | 2007 | 0.31 | 16 | 51 |
|  | 2008 | 0.88 | 45 | 51 |
|  | 2009 | 0.76 | 39 | 51 |
|  | 2010 | 0.47 | 29 | 62 |
|  | 2011 | 1.15 | 71 | 62 |
|  | 2012 | 1.05 | 65 | 62 |
| 경상북도 | 2007 | 0.27 | 15 | 55 |
|  | 2008 | 0.27 | 15 | 55 |
|  | 2009 | 0.27 | 15 | 55 |
|  | 2010 | 0.25 | 16 | 63 |
|  | 2011 | 0.33 | 21 | 63 |
|  | 2012 | 0.68 | 43 | 63 |
| 경상남도 | 2007 | 0.32 | 17 | 53 |
|  | 2008 | 0.36 | 19 | 53 |
|  | 2009 | 0.94 | 50 | 53 |
|  | 2010 | 0.24 | 14 | 59 |
|  | 2011 | 0.68 | 40 | 59 |
|  | 2012 | 0.9 | 53 | 59 |
| 제주특별 <br> 자치도 | 2007 | 0.78 | 32 | 41 |
|  | 2008 | 0.78 | 32 | 41 |
|  | 2009 | 0.56 | 23 | 41 |
|  | 2010 | 0.44 | 18 | 41 |
|  | 2011 | 0.78 | 32 | 41 |
|  | 2012 | 0.78 | 32 | 41 |

위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 1 인당 조례 발의 건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8대 시의회에서 발의된 691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가 419건이나 된 다. 1 인 당 평균 3.6 건이며 역대 서울시의회 1 인 당 평균 조례발의 건 수를 살펴보면 6대는 0.2건 7대는 2.6건으로 비교해볼 때 증가폭이 크 다고 할 것이다.7) 이러한 수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 대한 문 제점도 다양하게 제기8)되고 있어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 III.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의 문제점

현재 지방의회 조례의 제•개정 과정을 살펴보려면 조례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조례는 법령과 달리 "법령 의 범위 안에서" 제정•개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로 나누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 한 차이에 따라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도입 내지 제도화의 모양 도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례는 법령의 위임여부에 따라서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로 나눌 수 있으며, 조례제정의 재량여부에 따라 필수조례와 임의조례로 나눌 수 있고, 주민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나눌 수 있다.9)
7) 박종일,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길", 아시아경제, 2013년 6월 24일자, http://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62406183441863 참조(2013. 10. 2 검색)
8) 서보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유럽헌법연 구 제 12 호, 유럽헌법학회, 2012; 김병록, 조례제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지공 법연구 제43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등
9) 한상우 외 3 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 방안, 제주발전연 구원, 2012, 74면.

아래에서는 위임사무를 위한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지속가 능성의 측면에서，고유사무를 위한 조례 제•개정은 적합성 및 필요 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1．위임사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검토

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 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인 단체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가 있다．단체위임사무의 경우 일부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처리되는 바 지방의회의 의결•동의• 사무감독•회계감독의 범위에 속하나 보조금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의견제시권한만을 가지고 사무 처리에 간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임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위임조례의 경우에는＂법령의 범위 내 에서＂라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법령의 범위 내에＂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할 것이다．이러한 제약 요소를 기반으 로 평가를 수행하면 족하므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평가가 가 능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위임조례에 대한 개정에 따른 평가의 경 우 지속가능성 측면의 검토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고유사무 ：적합성 및 필요성 측면에서의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즉 헌법 제 117 조 1 항에 규정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또는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 규정된「그 지방의 자치사무」를 말하며，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사 업의 경영 또는 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고유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치조례의 경우에는 적합성과 필요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요건

조례에 대하여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입법 평가를 할 것인가의 문제인 입법평가의 주체 문제 및 사전평가•사후 평가와 같이 평가의 시기에 관한 문제, 또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에 대하여 구속적인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의 여부, 조례의 종류 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입법평가의 주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자 기시정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자기평 가에 있어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 여서는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가를 위한 제 3 의 기관 을 설립하는 방안 또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2.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 : 평가의 시기

조례 제정 전에 사전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 가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입법평가를 실시할 것인지에 따라서 입법평가의 기준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사전적인 평가의 경우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체크사항을 확 인하는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사후 평가의 경 우에는 조례의 유효성, 실효성, 체계성, 효과성 등에 대한 다양한 평 가를 수행하여야 조례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조례에 대한 평가시기에 적합한 입법평가 기준 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조례의 종류에 따른 평가 기준 마련 여부

조례의 종류에 따라서 입법평가의 기준을 달리 마련할 것인가의 여 부도 중요한 문제이다.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의 경우 그 위임의 범위 등 위임의 한계에 따른 판단으로 족하게 될 것이지만, 고유사무 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것인지, 적합한 것인지 등 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례의 종류에 대응하는 입 법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구속력 부여 여부

입법평가가 "좋은 법률(법령)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때, 입법평가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하 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법평가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 의회 입법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만, 의회 혹은 집행부가 스스로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자기시정의 기회를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입법평가에 대한 구속력을 일정 정도까 지 인정하는 경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의회가 자체 적으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속력의 인정에 대한 필요성도 보다 커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 회가 자체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속력의 범 위나 한계 등에 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간의 사전적인 합의가 필요하 다고 할 것이다.

# 제 3 절 현행 조례입법평가 관련 조례 및 조례안 분석 

## I . 광주광역시 조례 분석

조례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광주광역 시의 조례는 다음과 같다.

>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 2013-07-01 조례 제4251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 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 3 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 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평가 대상)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조례로 한다. 다만, 기 관설치 - 조직운영 - 업무분장 -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 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 에서 제외한다.

제 5 조(평가 기준 및 시기) (1)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 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 •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2) 사후 입법평가는 2 년마다 실시한다.

제 6 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 의 장은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입법 총 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 7 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1) 시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한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광주광역시 기획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광주 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의 임기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
(5)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 8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사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 8 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 입법평가 결 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 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11 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 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시장은 위원회의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와 소관 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 고서를 해당 연도 6 월 말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주요 내용

광주광역시의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이하에서는 "광 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로 약칭한다)"는 총 13 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조는 목적 규정으로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는 "광주광역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 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 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2조에서는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는 사후입법평가로 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조례 중 에서 기관설치•조직운영 - 업무분장 -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 용의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 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평가 대상을 확정하고 있다(제4조). 사후 입법평가는 2 년마다 실시하며, (1) 입법 목 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 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 -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제5 조).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 각 1 명을 포함한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광주광역시 기 획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평가결과의 반영과 관련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 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제 10 조).
2. 분 석
(1) 사전적 입법평가의 부재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는 입법평가를 사후 입법평가로 한정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의 제정시 입법평가를 통하 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있 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대하여 사전 적인 입법평가를 함으로써 위임조례 등의 경우에는 특히 간단한 평가 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입법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2) 입법평가위원회 관련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 제7조에서는 시장이 입법평가위원회를 구 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간 발의 되는 조례의 건수에 대비하여 입법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성인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조 례 발의 건수 및 평가 대상 조례의 건수，평가의 수준 등에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이 결정되어야만 실효적인 입법평가가 가 능할 것이기 때문이다．또한 위원회의 구성원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법률 전문가，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서 입법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다양한 관점에서 의 평가 수행을 통한 더 좋은 입법 만들기라는 입법평가의 목적에서 살펴볼 때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3）입법평가 기본자료의 작성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이 해당조례를 검토하여 사 후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기본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에서는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입법평가를 위한 기본자료의 작성은 입법평가 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단계라고 할 것인바，기본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강의 내용 을 조례에서 밝혀주었더라면 내실 있는 입법평가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평가기간 및 조례일몰제 관련
조례일몰제도는 규제일몰제도에서 착안한 제도이다．규제일몰제도는 제로베이스（zero base）방식이라고도 한다．규제를 신설할 때는 규제 상 한선에 맞춰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인 규제총량제（規制總量制） 와 함께 도입된 개념이다．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부터 4년 동안 정 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각종 규제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규제가 폐지되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져 실질적인 규제는 줄 어들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4년 4월부터 규제총량제와 함께 도입되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존속기한을 설정 하고, 그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제도를 일컫는다. 규제 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안 에서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5 년을 넘길 수 없다. 규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규제의 존속기한이 끝나기 1 년 전까지 규제의 신설•강화의 절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규제의 신설•강화와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는 규제영향을 분석 해 그 결과를 자체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때 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예를 들어 2004년 4월부터 시행된 주택거래 신고제에 따르면,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만 한시적으로 신고제를 운영하고, 필요하면 더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이렇듯 한시적으로 규제 가 제한되는 제도가 규제일몰제이다. 그 외에 존속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규제도 5년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자동적 으로 효력이 상실된다.10) 이와 같은 규제일몰제도를 조례에 도입한 것이 조례일몰제도라고 할 것이다. 조례일몰제도 역시 규제일몰제도 와 유사하게 기간을 정해서 존속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조례의 경 우에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광주광역시의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는 2 년마다 실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기관설치 - 조직운영 - 업무분장 -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 적인 내용의 조례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및 시행일로부터 2년 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년마다 조례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평가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를

[^1]대상으로 하는 입법평가라기 보다는 조례일몰제도와 닮아 있다고 할 것이다．특히 입법평가서의 작성을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 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례일몰제와의 유사 성이 확인된다．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평가의 모습 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4조에서는 평가대 상에서 위임조례를 제외하고 있어서 평가대상 조례가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5）평가기준의 실효성 관련
광주광역시의「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는 입법 목적의 실현성，비 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여부，예산 편성 및 집행여부，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를 기 준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광주광역시의 「조례 사후 입법평 가 조례」 제4조에서는 평가대상에서 위임조례를 제외하고 있어서 자 치조례만을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이 경우「조 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5조의 기준을 적용하는 조례는 자치조례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제 5 조의 기준에 따라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평 가하도록 하고 있는데，입법평가위원회는 1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광주 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법률 전문가，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조례가 예정하고 있 는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제 5 조의 기준을 적용하여 충분한 조 례입법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 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ㅍ. 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원미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년 월 일
발 의 자:
찬 성 자:

1. 제정이유

○ 현재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관리 뿐만 아니라, 의회 내 객관적 입법영향분석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합 성, 목적 달성여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재검토 등의 적절한 입법영향분석을 하려고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해 정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활동 지원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 1 조)
나. 경기도에서 심의하는 제정조례를 입법영향분석대상으로 하되 전부개정 조례도 제정조례로 보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따라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 원이 실시하도록 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그리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용역의 근거 를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라. 입법영향분석지표 수정에 대한 심의를 규정함(안 제7조)
마. 입법영향분석 결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그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의 입법 활 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경기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분석"이란 제4조의 분석지표에 따라 자 치법규의 실효성•적합성 등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입법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등) (1) 이 조례에 의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에서 의 원 발의하여 제출하거나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2) 이 조례에 의한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에서 제정되거나 전부 개 정된 조례 중 시행 후 2 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3) 제 1 항과 제 2 항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조 직운영 • 업무분장 • 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사전•사후 입법영 향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4 조(입법영향분석 기준) (1)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2)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별표2를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사전 입법영향분석) (1)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별표 1 을 기준으 로 해당 조례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결과를 해당 상임위 원회 조례심의 전에 공표할 수 있다.
제 6 조(사후 입법영향분석) (1)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2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2)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 및 제출한 집행 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위 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 -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입법영향분석 용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입법영향분석기준 수정의 심의) 별표에서 정한 입법영향분석지표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입법영향분석지표를 추가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 8 조(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1) 제 5 조제 1 항의 소관 상임위 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사전 입법영 향분석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2) 제 6 조제 1 항의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후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 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3) 소관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는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경기도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충실히 반영된 경우, 이를 모범 조 례로 선정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 례를 선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의장은 제 4 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조례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제5항에 따른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 9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입법영향분석주기) (1) 최초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이 조례 시행 후 2016년 12월 중에 시행한다.
(2)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최초 사후 입법영향분석 이후 4년마다 매년 12월 중에 시행한다.
[별표1]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

| 입법영향분석항목 | 세부항목 | 입법영향분석척도 |  |
| :---: | :---: | :---: | :---: |
| 1. 입법의 필요성 |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 하는가? | (1) 그렇다 | (2) 그렇지않다 |
|  | 공익 및 정책실현에 필요한 조례인가? | (1) 그렇다 | (2) 그렇지않다 |
|  |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 <br> (규칙으로 정하거나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 | (1) 그렇다 | (2) 그렇지않다 |
| 2. 적법성 / 중복성 | 입안내용이 헌법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는가? | (1) 그렇다 | (2) 그렇지않다 |
|  | 중복되는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가 있는가? | (1) 그렇다 | (2) 그렇지않다 |
|  | 중복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별도로 제 정할 필요가 있는가? | (1) 그렿다 <br> (3) 해당없음 | (2) 그렇지않다 |
| 3. 비용 / 의견수렴 | 비용이 많이 수반되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소지는 없 는가? | (1) 그렇다 | (2) 그렇지않다 |
|  | 비용추계는 이루어졌는가? | (1) 그렇다 | (2) 그렇지않다 |
|  | 조례제정시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가? | (1) 그렇다 | (2) 그렇지않다 |
|  | 조례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의견 및 반대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1) 그렇다 | (2) 그렇지않다 |

[별표2]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

| 입법영향분석항목 | 세부항목 | 입법영향분석척도 |
| :---: | :---: | :---: |
| 1. 입법목적의 실현성 |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은 그 의도대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가? | (1) 매우 그렿다 <br> (2) 그렇다 <br> (3) 보통이다 <br> (4) 그렇지않다 <br> (5) 전혀 그렇지않다 |
|  |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을 수행할 수 없 도록 하는 새로운 사정이나 위험이 나타났거나 나 타날 우려가 있는가? | (1) 매우 그렇다 <br> (2) 그렇다 <br> (3) 보통이다 <br> (4) 그렿지않다 <br> (5) 전혀 그렇지않다 |
| 2. 유효성 및 효율성 | 조례의 집행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은 편익은 입법당 시 기획하였던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 (1) 매우 그렿다 <br> (2) 그렇다 <br> (3) 보통이다 <br> (4) 그렇지않다 <br> (5) 전혀 그렇지않다 |
|  |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 는가? | (1) 매우 그렇다 <br> (2) 그렇다 <br> (3) 보통이다 <br> (4) 그렿지않다 <br> (5) 전혀 그렇지않다 |

제 2 장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 입법영향분석항목 | 세부항목 | 입법영향분석척도 |
| :---: | :---: | :---: |
| 3. 법적합성 | 조례내용이 헌정질서 및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위 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 (1) 매우 그렇다 <br> (2) 그렇다 <br> (3) 보통이다 <br> (4) 그렇지않다 <br> (5) 전혀 그렇지않다 |
|  |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 (1) 매우 그렇다 <br> (2) 그렇다 <br> (3) 보통이다 <br> (4) 그렿지않다 <br> (5) 전혀 그렇지않다 |
|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 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 (1) 매우 그렇다 <br> (2) 그렇다 <br> (3) 보통이다 <br> (4) 그렿지않다 <br> (5) 전혀 그렇지않다 |
|  | 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녀(성별영향)/장애인(장 애인차별금지) 등을 차별하는 효과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 (1) 매우 그렿다 <br> (2) 그렇다 <br> (3) 보통이다 <br> (4) 그렇지않다 <br> (5) 전혀 그렇지않다 |
| 4. 조례의 기여도 | 조례시행으로 도민의 후생복리의 개선에 영향을 미쳤 는가? | (1) 매우 그렇다 <br> (2) 그렇다 <br> (3) 보통이다 <br> (4) 그렿지않다 <br> (5) 전혀 그렇지않다 |
|  |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는가? | (1) 매우 그렇다 <br> (2) 그렇다 <br> (3) 보통이다 <br> (4) 그렿지않다 <br> (5) 전혀 그렇지않다 |
| 5. 조례와 도민의 관계 | 조례 혹은 조례의 집행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긍정 적인가? | (1) 매우 그렇다 <br> (2) 그렇다 <br> (3) 보통이다 <br> (4) 그렿지않다 <br> (5) 전혀 그렇지안다 |
|  | 조례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여 도민들이 조례에 대 해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하였는가? | (1) 매우 그렇다 <br> (2) 그렇다 <br> (3) 보통이다 <br> (4) 그렇지않다 <br> (5) 전혀 그렇지않다 |
|  | 도민들은 조례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 는가? | (1) 매우 그렇다 <br> (2) 그렇다 <br> (3) 보통이다 <br> (4) 그렇지않다 <br> (5) 전혀 그렇지않다 |
|  |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민원사항이 제기된 적이 있 는가? | (1) 매우 그렇다 <br> (2) 그렇다 <br> (3) 보통이다 <br> (4) 그렿지않다 <br> (5) 전혀 그렇지않다 |
|  |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 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 (1) 매우 그렇다 <br> (2) 그렇다 <br> (3) 보통이다 <br> (4) 그렿지않다 <br> (5) 전혀 그렇지않다 |


| 입법영향분석항목 | 세부항목 | 입법영향분석척도 |
| :---: | :---: | :---: |
|  |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는 없었는가？ | （1）매우 그렇다 <br> （2）그렿다 <br> （3）보통이다 <br> （4）그렇지않다 <br> （5）전혀 그렇지않다 |
| 6．조례의 필요성 |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1）매우 그렿다 <br> （2）그렿다 <br> （3）보통이다 <br> （4）그렇지않다 <br> （5）전혀 그렇지않다 |

1．주요내용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은 경기도 자 치법규에 대해 정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활 동 지원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은 경기도에 서 심의하는 제정조례를 입법영향분석대상으로 하되 전부개정 조례도 제정조례로 보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입법영향분석지표 에 따라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실시하도 록 하고，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 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용역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입법영향분석지표 수정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 고 있으며，입법영향분석 결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분 석
（1）입법평가의 대상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은 사전 입법 평가의 경우 의원발의 제출 조례 및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사후 입법평가는 경기

도에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 중에서 시행 후 2 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관설치•조직운영 - 업무분장 - 문서관 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의 대상 조례에서 제외하고 있 다(조례안 제3조).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조례를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가 제출하는 경우까지 포괄하여 적용하고자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조례를 아우르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를 대 상으로 사전 입법평가 및 사후 입법평가로 나누어 입법평가를 실시하 고 있고, 전부 개정하는 조례를 사전 입법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입법평가의 기준 및 평가서 제시

사전 입법평가와 사후 입법평가에 대하여 별표로 별도의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광역시 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 입법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별표1을 살펴보면, 입법의 필요성, 적법성/중복성, 비용/의견수렴의 항목으로 나누어 세부지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1) 그렇다"와 "(2) 그렇지 않다"의 척도로 응 답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세부항목은 상위법령 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가, 공익 및 정책실현에 필요한 조례인가,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의 세 가지를 규율하 고 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지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의 세부항목에서 묻고 있어서 하나의 항목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도록 작성되어 있어서 항목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항목은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목 적의 실현성, 유효성 및 효율성, 법적합성, 조례의 기여도, 조례와 도

민의 관계, 조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세부항목을 두고 "(1) 매우 그렇 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전혀 그렇지않 다"의 다섯 단계로 척도를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조사에서 5점 척도로 제시되는 경우 "(3) 보통이다"를 선택하는 항 목이 많아질 우려가 있어서 평가자체가 가지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 다는 주장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 평균값을 통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는 점에서 척도에 대한 분석이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사후적으 로 입법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이므로 조 례안의 영향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척도를 주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의 사후 입법평가의 세부항 목을 분석하면 비교적 유효성을 가지는 항목들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례의 명확성 및 필요성에 관한 세부적인 항목들의 추 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 한 사항은 제 4 장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 제 3 장 일본의 조례 평가

##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법무

## I．정책법무의 의의

정책법무란 ‘정책（공공정책）＇을 배려한 ‘법무（법률실무）’，정책지향형의 법무를 의미하는 것이다．정책법무의 정의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법을 정책실현의 수단으로 삼고，이를 위해 어 떠한 입법 • 법집행 • 쟁송평가가 요구되는가를 검토하고 실현하는 실무 및 이론 구조＇11）라는 정의에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12）

이 정의의 주된 논점은 다음의 3 가지이다．첫째，법을 정책실현의 수단으로서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물론 법의 목적•기 능은 다양하며 사회정의의 실현，인권 보장，분쟁의 해결이라는 목적
－기능도 거론되는데，정책법무에서는 법이 가지는 정책실현이라는 목적 및 기능에 착안하여 또는 정책실현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을 거 론하고，수단으로서의 법의 방향성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다．13）둘

11）礒崎 初仁，分権時代の政策法務，北海道町村会，1999，5頁。
12）정책법무와 관련하여 유사한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다．정책법무는 ‘지 자체법무’ 또는 ‘지자체법학’이라는 개념이 있다．지자체법무를 ‘법적 관점 또는 법 치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본 지자체（직원）의 활동－업무 및 이에 관한 이론을 만드 는 제활동（이론구성행위，이론형성작업，이론구성활동）＇을 지칭하고 있다（木佐茂男，田中孝男）．또한，정책법무와의 차이를 인식하여 지자체법무론은 ‘지자체가 스스로 의 정책을 실현하고 또는 자립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어떠한 입법•법집행•쟁송평 가가 요구되는가를 검토하고 실행하는 실무 및 이론의 구조’라고도 한다（礒崎 初仁）．한편，정책법무는 ‘법정책학’ 또는 ‘정책법학’이라는 개념도 있다．‘정채책정시 의 법적 관점의 제공과 정책실시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 설계＇，＇법해석학，입법과 정학，법의 집행과정학 등을 넘어 응용학문으로서의 입법학’이라고도 한다（阿部泰隆）．
13）西尾 勝，神野 直彦，礒崎 初仁『自治体改革 4 政策法務の新展開』，ぎょうせい， 2004，3頁。

째，입법•법집행•쟁송평가라는 3단계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실 현을 위한 법무를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다．법무의 프로세스는 크 게 나누면 법을 만드는 단계，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단계，집행활동 에 대한 제기되는 쟁송에 대응하고 법이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각각의 단계가 정책실 현을 위한 법무라는 의미를 더욱 중요시하기 위해 정책법무의 대상으 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셋째，실무뿐만 아니라 이론의 양면에서 고려 되는 것이다．정책법무는 추상적인 이론의 구축보다도 실질적인 내용 을 그 기초로 하여야 한다．그러나 각각의 실제 사례를 축적하는 것 만이 아닌 실무의 축적을 일반적인 언어나 법칙으로 집약하여 이론으 로 정립함으로써 다른 실무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렇게 실무 와 이론을 융합•교류에 의해 정책법무（론）가 전개해 나가는 것이며， 실무와 이론은＇자동차의 양쪽 바퀴’라고 할 수 있다．14）

## ㅍ．정책법무의 배경

정책법무론이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유와 배경으로는 거시적 관점에서 크게 정책화•분권화•자치화라는 3 가지의 변화가 이야기 될 수 있다．

현대국가는 복지행정，환경행정，도시계획 등 행정기능이 확대되어 고도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행정기관의 활동에 관한 행정법규가 증대하는 것에 더하여 그 내용이 정책（공공정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정책법무＇가 되었다．여기에서의 정책（공공정책）이란 공공 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한 결정이나 활동의 지침을 말한다．15）이러한 정부의 결정이나 활동지침 을 법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처 법적 구속력을 가지

14）西尾 勝，神野 直彦，礒崎 初仁『自治体改革 4 政策法務の新展開』，ぎょうせい， 2004，3頁。
15）新藤 宗幸，『解説 日本の公共政策』，東京大学出版会，2004，2－3頁

도록 한 것이 정책지향의 법무이며, 법의 정책화라고 할 수 있다.
2000년에 시행된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해 분권개혁이 이루어졌는 데, 이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국가 관여의 축소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해석권이 확대됨과 함께 조 례제정권의 대상도 확대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법적 권한을 활 용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추진과 개성있는 지역 만들기를 추 진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종래는 국가가 정책을 만들고 지방자치단 체가 이를 집행하는 역할분담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는 정책적인 방침 - 배려에서 벗어나 법률의 규정을 충실하게 집행해야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불식하고 스스로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법무를 실현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이 요 구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정책법무가 요청되고 주목되고 있다.

셋째, 정치행정의 자치화의 경향 및 요청이다. 정치행정을 하는데에 있어 주민참가, 주민•NPO와의 협동 등 주민자치의 보장이 요구된다. 현대사회에서는 국민과 주민의 가치관이 다양하고 선거 이외에서 그 의사를 정치행정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이러한 주민참 가는 주민에 친근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실정에 응해서 진행하 는 것이 필요하고, 이점에서 자치화의 요청은 분권화의 요청으로 이 어지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를 중심으로 주민참가나 주민

- NPO 와의 협동을 진행하기 위한 조직이나 주민투표등 주민의 자기 결정(직접민주주의)의 조직을 어떻게 제도화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 러한 측면에서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주민자치를 진행하 기 위해 정책법무론이 요구되는 것이다.


## III. 정책법무(론)의 제 영역

단계적 구분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법무의 프로세스를 3 단계로 나누 고 정책법무(론)도 이 3 영역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해

가 쉬울 것이다．즉， $\operatorname{Plan}($ 계획 $)-\operatorname{Do}$（실행）$-\operatorname{See}($ 평가 $) ㅇ ㅢ ~ ㄱ ㅜ ㅂ ㅜ ㄴ ㅂ ㅏ ㅇ ㅅ ㅣ ㄱ ㅇ ㅡ ㄹ ㅗ ~$ 입법－법 집행－쟁송•평가의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6)}$

## 1．입법법무

정책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입법단계에서 얼마나 유효한가를 확인하 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제도설계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단계는 국가의 경우는 법률이나 정령•성령을 제정하기 위해 단계이며，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단계이다． 즉，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정하는 정령의 경우는 국가가 입법단계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단계 이후를 담당하는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법무의 흐름>


피드백（재검토）

정책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입법이 중요하고，법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각종 소송에 잘 대응한다고 하여도 입법의 방향에 문제가

16）西尾 勝，神野 直彦，礒崎 初仁 『自治体改革 4 政策法務の新展開』，ぎようせい， 2004，9頁。

있다면 정책목적을 실현할 수 없고 관계자의 이해를 이끌어낼 수도 없을 것이다．따라서 정책법무론은 입법의 방향에 집중하는 것이며， 여기에 기존의 법률학과의 차이가 있다．

## 2．집행법무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정책실현을 위한 배려나 조직 이 요구된다．각각의 법에서 정한 내용은 일반적•추상적이므로 이를 해석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재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또한，규제적인 법에서는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는 것이 필요한데，한정된 인재와 재원 등의 자원을 사용하여 어디까지 효과적인 적발•시정이 가능할지는 집행기관의 판단과 대응에 의해 달라진다．집행법무에 대해서는 우선 법률학（행정법학）이 법의 해석에 대해서 규범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다．법률학은 개별의 법집행의 실 태적인 분석만이 아닌 일반적•규범적인 이론의 구축을 중심으로 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또한，행정학이나 법사회학은 법의 집행과정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하고 있다．이들 중에는 집행활동의 유효성이나 효율성에 착안한 연구가 있으며 이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정책 법무론은 유효성과 효율성이라는 양방향의 연구를 병행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 }^{17)}$

## 3．쟁송•평가법무

법집행과정에서 불허가，명령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 에 불복하면 그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나 불복심사청구를 하 게 된다．이러한 쟁송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서는 당해 처분이 적법 하다는 것과 근거 법률－조례가 적법한 것임을 주장하고 처분의 효과

17）西尾 勝，神野 直彦，礒崎 初仁『自治体改革 4 政策法務の新展開』，ぎょうせい， 2004，11頁。

를 유지할 수 없다면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따 라서 쟁송법무는 정책법무론의 중요한 영역이다．

또한 법집행의 결과를 위해 입법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평가의 결과，입법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 등이 필요하게 되고 법집행 에 문제가 있다면 집행의 방법이나 체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쟁 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계기로 하여 법제도나 법집행의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이러한 의미로 쟁송과 평가는 관련되어 있다．법집행의 결과에 따라 법의 본연의 자세를 평가하고 이를 입법 단계나 법집행단계에서 피드백하는 것에 의해 보다 좋은 입법과 법집 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이렇게 정책법무의 흐름은 순 환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법무는 그 종결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18)}$

## 4．평가법무의 현황

정책평가 또는 행정평가에 대해서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 고 있는데 조례 등의 법제도에 관한 평가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 는 예는 많지는 않다．물론，정책평가•행정평가의 일환으로서 조례의 내용이 평가대상이 되는 것은 있지만，조례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법 적 성격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은 많지 않다．그 결과，정책실현이라 는 목표에 효과적이지 않은 조례나 위반행위가 많아지는 등의 실효성 의 면에 있어 실패를 하고 있는 조례가 있어도 개정이나 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조례 등에 의한 정책실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의 시 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 등의 개정이나 집행방 법의 재검토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이러한 피드백의 순환적 구조 가 기능하게 되는 데에는 평가의 구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2]이러한 조례 등의 평가에도 개개의 법률이나 조례를 평가하는＇입 법평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전체나 어느 분야의 조례를 계획 적으로 평가하는 ‘법제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조례 등의 평가에 있어서 명확하게 평가를 하는 구조를 설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예 를 들면，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부칙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행상황을 평가하고 재검토하는 것을 정해두는 것이 있다．또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전체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후에 평 가를 하는 구조나 매년 한가지의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하는 조례를 평가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이러한 구조를 지방 자치단체의 요강에서 정해도 좋고，이런 내용 자체를 조례로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또한，평가의 주체도 집행기관만이 아닌 의회가 하는 것과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제 3 자 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좋다．${ }^{19)}$
법률은 기본적으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며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운용하는 데에 있어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그러나 긴요 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전국 보편적인 사태가 아닌 경우 법률개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의 입 법사실을 정하고 조례제정을 하게 된다．조례에는 다양한 형태와 기 능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법령사무조례20）와 독 자의 사무를 창설하고 대응하는 자율조례21）가 있다．이 단계에서＇Do－ See－Plan＇의 과정이 형성되어 평가법무는 법률의 집행에서 조례제정으 로 이어지고，법무매니지먼트로서 중요한 단계가 된다．더불어 조례를 제정한 후의 재평가는 법률집행과 조례집행의 쌍방이 대상이 되는 것 에도 유의해야 한다．

[^3]그리고 지역의 종합정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에서 해결해 야하는 과제나 정책목표에 대해서 법률이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독자의 조례를 제정•집행하고，그 결과를 평가하는 조례의 재검토로 이어지는＇Plan－Do－See＇의 자기완결형 법무매니지먼트도 존재한다．지 방자치단체는 분권개혁으로 이뤄진 법해석권과 조례제정권의 확대를 계기로 법률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만이 아닌 독자적인 해석을 하 는 것에 의해 법률집행의 개선，조례제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 고 그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과하고 있는 것이 ‘평가법무’이다．22）

## 제 2 절 일본의 조례 평가 개관

## I．법제평가 시스템의 필요성

일본에서 현재 정책평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표준 장비＇이다．국가는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평가법（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성청에서 정책평가가 시행되고 있다．정책평가의 목적은（1）국민에 대한 행정의 설명책임 을 철저히 하는 것，（2）국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을 실현하는 것，（3） 국민의 시점에서 성과중시의 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다．또한， 자치단체에서도 미야기현，북해도 등이 조례에 대해 정책평가•행정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입법과 관련하여는 정책평가법에 의거하여 국가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규제의 사전평가23）＇가 있다．

22）北村 喜宣•山口 道昭•出石 稔•礒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有斐閣，2011年， 21頁。
23）＇규제의 사전평가＇는 제 외국에서의 규제영향분석（RIA）을 참고로 하여，2007년부 터 시행되고 있다．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도입이나 수정시에 실시에 소요되는 비 용이나 편익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공표하는 것에 의해 규제제정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규제의 사전평가는 각종 규제가 국민의 권리•활동을 제한하는 의 무를 부과하는 것에서 부터，행정기관이 법률 도는 정령에 의해 새로 운 규제를 신설하는 개정•폐지를 할 때，규제에 대하여 효과와 부담 을 비교하는 등의 사전평가를 의무로 하고，그 결과를 정책결정의 소 재로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평가가 비용과 효과의 면에 한정되어 있는 점과 실제 사 전평가에서는 정량적 분석이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문제 가 있지만，입법의 옳고 그름을 대상으로 사전평가를 하는 것이며，자 치단체에서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조례（특히，규제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참고가 된다．

한편，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평가는 일반적으로 조례에 의 거하여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며，평가의 결과，조례 의 개정등이 필요하면 행해지는 모습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에 한해 조례평가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그러나，조례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 는 평가는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다．24）

무엇보다 정책평가와 같이 조례평가를 실시하면＇우수조례’가 가능 하여 조례평가의 기준에 적용하면 자동적으로＇결론＇을 도출할 수 있 는 기대를 할 수는 없다．우수조례 여부의 유효성，공평성 등 다양한 시점과 기분이 있으며，하나의 척도로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이 러한 시점과 관점은 유효성을 중시한다면 공평성이 경시되는 등 상호 대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최종적으로는 정책적 판단（결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이점에서 조례평가는 하나의 결론은 도출하는 도구가 아닌，입법자（또는 제안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적 절한 판단을 촉진하는 것이며，조례평가의 기준이나 절차도 아닌 행

24）예외로，가나가와현의 「조례의 재검토에 관한 요강」（2008년）에 의거하여 재검토 와，북해도의 「조례의 재검토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서」（2008년）에 의거하여 재검 토하며，요코하마시의 「재검토」（2009년도～）가 있다．

정직원의＇독선＇이나 의회 • 수장의＇정치판단＇만으로 조례가 만들어지 는 무모함•위험성을 생각하면 조례평가의 틀은 중요하다．

## П．법제평가의 의의와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법제평가는 자치단체에 관한 법제도를 일정기간 경 과 후에 재검토하여 유지，수정，폐지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입법시 의 평가를 사전평가라고 한다면 법제평가는 사후평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입법에 관한 기획（Plan）• 실시（Do）• 평가（Check）• 개선（Action）의 관 리 단계의 차원에서 보면＇평가＇의 단계에 해당한다．또한＇개선＇의 단 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25）
법제평가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국가의 법률 도 포함여부에 따라 2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 1．법률 및 자치입법평가형

일본에서 법제평가에 관한 최초의 문헌인 田中孝男（다나카 타카오）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관리의 제 활동은 Plan－Do－See의 관리단 계로 구성되며，지방자치단체의 법제 관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집행에 관련되는 국가의 법률•정성령의 관리（법제정•법집행 • 법제평 가）도 포함되는 것，＇See＇가＇법제평가＇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것，법제 평가는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절차에 속하고，법제 관리단계의 중심이 되므로，법제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자체에 편입되는 것이 요망된다고 하는 그 방법을 정리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즉，이러한

25）田中孝男•木佐茂男，『テキストブック自治体法務』，ぎょうせい，2004年，157頁。
＂＂지방자치단체법의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법의 제정 • 집행의 활동결과를 그 입법목 적•목표에 비추어 측정•평가하고，평가의 결과를 다음 지방자치단체법의 제정시 또는 현재 회기의 목적•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정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다음 회기로 이어지는 것은 Plan－Do－Check의 See에서 Plan으로가는 것을 의미한 다．수정활동의 전개란 Plan－Do－Check－Action의 Check와 Action에 상당하는 것이다．＂

분류방식에 의하면 법률도 지자체 법제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이다.
2. 자치입법평가형

법제평가를 자치입법의 조례 등에 한정하는 견해가 있다. 법제평가란 ‘지자체의 법제관리 사이클의 기획(Plan) • 실시(Do) •평가(See)의 See의 부분이며, 이는 즉 조례 등의 제정(Plan), 운용(Do)에서 이를 재평가하 고, 조례 등의 자치입법의 재검토를 통해 보다 좋은 제도도 향상시킨 다고 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 }^{26)}$ 이러한 분류는 법제평가의 대상을 자 치입법에 한정한 것이다.

## III. 자치입법평가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의 평가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이것이 개 선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례의 사후평가기준, 진행관리 및 평 가주체에 관해 적절한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시스템 은 적절한 예규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법규범에서 설 정된다면 안정적인 법제평가 제도운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에 서는 이러한 과정 전체를 자치입법평가 시스템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 1. 조례의 사후평가기준

일반적으로 개별조례는 일정기간 사회에서의 운용상황을 관찰 후, 재평가한다면 사전평가보다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지방 자치단체기본조례에서 분야별기본조례•기별조례라고 하는 조례체계 의 정비규정을 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또는 조례정비방침에 근거
26) 자치입법의 법제평가를 '협의의 법제평가', 쟁송을 계기로 하는 법제평가를 포함 하여 ‘광의의 법제평가’라고 한다.

하여 조례의 정비도 하고 있다．이러한 조례체계에 관한 평가도 필요 하다．이는 조례체계평가라고 한다．
（1）개별 조례 평가
개별조례의 사후평가는 조례의 사전평가와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사전평가 기준으로서는（1）필요성，（2）유효성，（3） 효율성，（4）공평성，（5）협동성（참가성），（6）적법성의 기준이 제안되어 있다．（1）부터（6）까지는 조례의 성립요건이며，그 외의 항목은＇보다 좋은＇또는 ‘우수한＇조례의 평가기준이다．또한 사후평가의 관점으로 서는 입법목적•목표평가，제도내용평가，법제기술평가，조례의 운용 평가라는 평가관점도 제시되어 있다．27）개별조례평가에 관해서는 가나 가와현이 「가나가와현 조례의 재검토에 관한 요강」을 제정하고（2008 년 4월 시행），모든 조례를 재검토 대상으로 하여 그중에서 일정부분 은＇재검토조서＇를 작성하고，（1）필요성，（2）유효성，（3）효율성，（4）기 본방침적합성 및（5）적법성의 관점에서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28)}$
（2）조례 체계 평가
조례체계의 평가는 조례의 체계와 현황의 괴리를 측정하고 적절한 체계화를 진척시키는 활동이다．세 가지 구조의 조례체계평가가 거론 된다．첫째，어떠한 경우에 조례화하여하만 하는가라는 조례정비방침 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29)}$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神奈川県横須賀市），가나가와현 야마토시（神奈川県大和市），치바현（千葉県），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静岡県静岡市），고치현（高知県）등이 이러한 구 조로 조례정비를 하고 있다．이는 지역의 과제해결을 위해 조례를 제

[^4]정하여 대응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체계적인 조례제정을 진 행하는 것이다．둘째，자치기본조례－분야별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피 라미드형의 조례체계화를 실시하는 것이다．북해도 니세코마치（北海道 ニセコ町），북해도 도마코마이시（北海道苫小牧市），효고현 타카라즈카시 （兵庫県宝塚市）등의 자치기본조례에 이러한 유형의 규정이 있다．셋 째，횡단적인 조례의 정합성인 종래의 법제집무는 이러한 기능을 담 당해왔다고 생각된다．즉，조례의 횡단적인 검증을 실시하여 각각의 조례규정의 용어나 규정의 방식의 통일，또는 사용료 등의 균형 등을 도모하는 것에 의해 조례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2．조례의 진행 관리

조례의 평가개선이라는 법제평가활동을 관리하는 것을 조례의 진행 관리하고 칭한다．개별조례의 진행관리의 방법으로는 조례의 재검토조 항，한시입법 ${ }^{30) \text { ，평가기관설치조항 등이 있다．이는 조례자체에 법제 }}$ 평가의 계기나 법제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내재시키는 조례를 자동 실효시키는 것 등에 의해 조례를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한편，조례체계의 진행관리는 보통은 법무담당조직이 중심이 되어 실 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자치기본조례에서 조례체계의 정비조항을 가지고 자치기본조례의 진행관리에 관해서 평기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관도 조례의 체계화의 진척상황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31)}$

## 3．조례의 평가주체

조례의 평가주체로서는 해당자치단체의 행정，주민 및 의회이다．우 선，조례평가시스템의 구축은 행정이 주체로 되어 행해지는 것이 기

[^5]31）시즈오카시나 북해도의 도마코마이시의 자치기본조례에 이에 해당한다．

대된다．이 경우에 조례평가의 절차（1）평가주제의 설정，（2）실시계획 의 책정，（3）정보•데이터의 수집，（4）정보•데이터의 측정•분석，（5） 평가결과의 정리，（6）평가결과의 공표，（7）법의 제정•개정 등에의 반 영32）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법무담당조직，또는 기획담당조직등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법제평가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법무에 대해 조례의 제정，집행과 정의 감시，법률•조례의 평가•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기대된다．33） 조례의 재검토조항은 집행기관에 의한 조례집행을 의회가 감시하는 방법으로서의 의의도 가지고 있다．의회는 행정에 대하여 조례평가의 실시 및 평가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의무로 부과할 수 있고，그 평 가결과를 심사하는 감시기능을 하여야 하며，의회가 적극적으로 조례 평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민은 조례 제정개폐청구라는 방법으로 조례의 평가주체인 것으로 되어 있다．퍼블릭 코멘트 절차（의견공모절차）에 의한 의견제출，심의 회에의 참가，조례안 등의 작성 수탁 등에서 법제평가에 관여하고 있 다．34）주민자치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조례평가의 구조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 4．조례관리 시스템의 정비

법제평가를 실시하고 조례를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규가 일원적으로 관리되어 공표되어 있는 것이 필수이다．예규는 일 반적으로＇조례＇，＇규칙’외에 훈령에＇규정＇，내규인＇요강＇도 포함되지 만，여기에서는 조례에 대한 것을 말한다．예규관리체제의 기본으로 예규의 존재와 그 관할부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제평가에

[^6]있어 필수이다．그리고 예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관성을 확보하 고 이를 일원적으로 관리할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법제평가의 기반이 된다．${ }^{35)}$

5．법제평가시스템의 규범설정

법제평가라는 활동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정착시키고 안 정적으로 법제평가시스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6)}$ 법제평가를 받아들인 행정평가시스템을 조례에 의 해 실현하는 것도 생각될 수 있지만37），자치기본조례의 제정이 진행 되고 있는 것에 정책법무의 내용으로서 법제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기대된다．${ }^{38)}$

## IV．조례평가의 관점과 기준

## 1．조례평가의 관점

정책평가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조례평가에도 적용할 수 있다．국가가 하는 정책평가는 필요성，효율성，유효성을 기본으로 하고，정책의 성질 에 따라서는 공평성의 관점이 있고，게다가 이러한 평가를 근거로 우선 성의 관점이 있다고 한다（정책평가 각부성 연락회의 2001：제2－2참조）． 조례평가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을 기본으로 하여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그 평가에 있어서는 주 민표의 평등취급 등의＇공평성’은 불가결한 기준으로 생각되고，적법

35）법제평가에 필요한 예규관리체제의 구축에 대하여는 政策法務研究会，『政策法務 の理論と実践』，第1法規，2003年，7239－7242頁。
36）田中孝男，「分権時代の法制評価を考える」，地方自治の職員研修434号，1999年，46頁。
37）政策法務研究会，『政策法務の理論と実践』，第1法規，2003年，7271－7272頁。
38）北村 喜宣•山口 道昭•出石 稔•礒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有斐閣，2011年， 16頁。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적법성’도 필수조건으로 생각된다. 또 한, 자치입법인 조례의 경우는 주민의 참가나 NPO 등과의 협동을 추 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조례에 근거하여 시장이 동의처분 을 한다던가 행정계획을 책정하는 것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 의 의견을 듣고, NPO 등의 의견 제안을 요구하도록 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를 위해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지만 '협동성’이라는 기준 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역으로, '우선성'은 재정지출 등 한정된 자원 하에서는 중요하더라도 권한이라는 자원을 기초로 하는 입법의 경우 에는 불가결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필요서의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법률학의 논의에서는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것이 많 다. 예를 들면, 헌법소송에서는 위헌성의 판단에 있어서 ‘합리성의 기 준'이 사용되고 있고, '입법사실'을 입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유지하 는 사회적 사실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넓어서 '합리적인 정책안'이 다수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들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론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여기에 서도 보다 분석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에서, 조례평가의 일반적 기준으로서는 필요성, 유효성, 효율성, 공평성, 협동성, 적법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2. 평가기준의 내용
(1) 필요성

필요성이란 해결하려는 과제에 대조하여 애초에 해당조례의 제정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정하는 기준이다. 조례시행에는 통상비용이 요구되 므로, 만약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있어도 사인간의 조정이 가능 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필요는 없고, 요강이나 예산사업 등

조례 이외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으로도 충분하 다. 특히, 규제조례는 사권의 제한을 수반하므로 그 필요성을 보다 진 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애초에 조례의 내용은 커다란 목적과 수단에 의해 구성되지만 필요 성은 주로 ‘목적’이 절적한가를 묻는 것이며, 이것이 흠결되지 않는 경우는 이하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검토는 불필요하게 되므로, 필 요성은 조례제정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검토가 불충분한 채로 조례의 내용문제로 관심이 쏠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필요성은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조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자료(데이터나 사례)를 수집 할 필요가 있다. 입법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사 실을 '입법사실'이라고 하는데, 입법사실은 우선 필요성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필요성은 형사재판에서와 같은 '증명’을 요구하는 것 은 아니며,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경우의 피해발생의 개연성 내지 구 체적인 가능성(우려)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복잡한 현재사회에 있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불특정 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다수가 근무하는 사무소에 대해 흡 연금지 조례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대해 건강 증진법(2002년 제정)에서 간접흡연 방지의무가 정해져 있는데, 재차 조 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도 덕이나 에티켓의 문제이며 법이 개입해야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 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조례의 필요성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노력 의무나 도덕률만으로는 간접흡연 방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사실•자료에 기준하여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간접흡연에 의해 어떠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있는가, 연기나 냄새 등이 비흡연자에게 어떠한 불쾌감이나 불이익을 갖게 가 는가, 대상시설에서 흡연(간접흡연)의 상황이 어떠한가 등에 대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하여 간접흡연과 건강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충 분한 증명이 나와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건강피해의 우려가 일 정의 개연성 내지 구체적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이 나타난다면 필요성 의 보증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2) 유효성

유효성이란 해당조례의 목적 실현을 위해 어디까지 기여하는가, 문 제의 해결에 어디까지 효과를 발휘되는가를 묻는 기준이다. 이러한 검 토에 따라 조례의 '목적’이 설정되면 다음 조례의 ‘수단'이 문제로 되 지만, 수단에 관해서는 우선, 그것이 목적의 실현에 어디까지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를 묻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대상의 범위, 수단의 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의 내 용 등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는 목적 실현의 정도를 정량적•객관적으 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례의 목적은 복 합적이고 정성적으로 밖에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실현 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여기에서 어떠한 대표 적•대체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그 변화를 측정•검증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만약 정량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하여도 이것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효율성’과의 일체적인 평가는 어렵

다．39）여기에서（1）시계열 비교，（2）지방자치단체 간 비교，（3）시뮬레 이션，（4）앙케이트，（5）케이스스터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한 정량적•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유효성평가 방법＞40）

| 평가방법 | 내 용 | 실시 조건 |
| :---: | :---: | :---: |
| （1）시계열비교 | 시행 전 일정기간•시점의 <br> 상황과의 비교 | 시행 전의 상황파악이 <br> 필요 |
| （2）지자체간 비교 |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br> 않은 유사 지자체와 비교 <br>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br> 경우를 상정하여 비교 | 유사 지자체의 정보가 <br> 필요 |
| （3）시뮬레이션 | 시뮬레이션이 필요 |  |

더불어，행정법의 분야에서는 법령의＇실효성 확보 방법＇의 문제가 논해지고 있다．이것은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다시 말해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억제 및 시정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 는가，이를 위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법적을 검토하는 것이며，형 벌，행정상의 강제집행，이름 공표 등의 조치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이 검토는 주로 유효성에 관한 검토를 말한다．이 검토를 참고로 하

39）국가의＇규제의 사전평가＇에서는 편익의 종류로서 안전성의 향상，환경의 개선， 자원의 확보，생활의 질 및 건강의 향상，편의성의 향상 등에 집중하고 있다．우선 규제의 목적에서 정하고 있는 편익이나 그것에 부연되어 얻어지는 편익을 정성적으 로 기술하고，다음으로 그것들이 규제전의 상태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 는가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하고，금액환산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금액단위로 표현하고，금액환산의 방법으로서 간접시장법，표명선호법，편익이전법의 세 가지를 표현하여 참고로 한다．규제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회 2007 ：제2부 1 （7）참조．
40）礒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講義，第一法規株式会社，2012，99頁。

면서 여기에서는 권리제한을 수반하지 않는 조례를 포함해 보다 넓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3) 효율성

효율성은 해당 조례의 집행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한 수단은 없 는가를 묻는 기준이다. 목적 실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시행을 위한 인건비, 급부비 등의 비용이 방대하다면 우수한 조례라고는 말 할 수 없다. 여기에서의 비용에는 조례운용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내 부적 비용과 주민 등의 조례의 대상자나 사회전체에서 발생하는 외부 적 비용이 있다. 내부적 비용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직원의 인건 비, 보조금 등의 사업비, 사무비 등이 있다. 외부적 비용에는 주민이 나 기업이 조례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정비 등의 비용, 규제 등이 없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일실이익), 이것들이 고용이나 지역경 제에 부여하는 악영향 등이 있다.

효율성의 평가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과 비교한다면 정량적인 방법 을 활용하기 쉽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내부적 비용은 금액(화폐가치) 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외부적 비용은 그 대상자가 폭넓고 사회적인 영향도 포함하여 정량적인 방법을 취하더라도 추계에 머무 르는 것이 많고, 정성적인 방법으로 파악•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경 우도 적지 않다.

유효성과 효율성은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한쪽이 약화되는 경 향이 있으므로 이 두 요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간 접흡연방지 조례에서 간접흡연방지의 효과를 강조하여 '유효성'을 높 이려고 한다면 소규모의 공공시설이나 사무소 등에도 대상을 확대한 다던지 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나 엄격한 처분을 하는 제도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측의 인건비나 사업

비가 많이 소요되고 관리자의 시설정비 등의 부담도 증가하고, '효율 성’이 훼손된다. 역으로, 이러한 비용을 저감시키면 간접흡연 방지라 는 목적을 실현을 어느 정도 희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조례 만들기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공평성

공평성은 해당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조례에 의한 효과나 비용이 공평 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평등하게 취급되고 있는가를 묻는 기준이다. 조례 는 공공의 룰이므로 단순히 목적을 실현하면 되는 것이 아닌 그 수단이 주민이나 사업자에 있어 공평할 것, 즉 합리성이 없는 불평등한 취급이 없어야 한다. 이것도 주로 조례의 '수단'에 관한 기준이라고 한다.
어떠한 이익배분과 권리제한이 '공평’한가는 어려운문제이다. 이익 이나 부담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배분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경우(객관적 평등)이 있으며, 주민이나 사업자의 수입, 자산, 연령 등 의 속성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주관적 평 등), 배분의 결과보다 그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어 있는가가 공평하 다고 생각되는 경우(기회적 평등)도 있다. 조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복수의 시점에서 공평성을 검토하여 입법자의 판단에 맡길 필 요가 있다. 또한, 이 평가는 정성적 평가가 된다.

예를 들면, 간접흡연 방지 조례의 경우는 흡연자의 권리•이익을 필 요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가,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과대한 부담•제한을 부가시키는 것은 아닌가, 대상 시설과 그 이외의 시설 에서 합리성이 없는 불평등한 취급이 없는가 등이 문제가 된다.

## (5) 협동성

협동성은 조례의 구조에서 주민이나 $\mathrm{NPO}($ Non-Profit Organization) 등 의 참가와 협력을 어디까지 편입하고 존중하고 있는가를 묻는 기준이 다. 조례가 지역사회의 룰인 이상, 그 구조에서 주민과 NPO 의 의견을

반영시키거나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의 실정 을 꼼꼼히 반영할 수 있고, 주민과의 사이에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물론, 조례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는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목 적 실현과 비용에 큰 변화가 없다면 협동의 구조를 포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 기준은 일반적인 정책평가나 '규제의 사전평가'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조례평가의 기준으로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기준도 정성적 평가이다.
예를 들면, 간접흡연방지조례의 경우는 조례에서 주민에게 지역사회 에서 간접흡연방지의 취급을 진행하는 역할과 책무를 정하고 간접흡 연방지를 추진하는 협의조직의 설치 등에 의해 봉사단체나 커뮤니티 조직의 자발적인 조직을 촉구하는 것이다(다만, 이러한 주민동원형의 구조에는 행정의 하청화 및 '상호감시사회화'의 우려도 있어 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6) 적법성

적법성이란 해당 조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위법이 되지는 않는가, 법률이나 다른 조례와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묻는 기준이다. 조례의 내용이 우수하여도 위법한 것이면 효력이 없으므로 조례의 최 저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조례의 목적과 수단을 포함한 전체적인 평가이며, 기본적으로 는 적법한가 위법한가의 양자택일형의 평가가 된다(다만, 적법한가 아 닌가가 미묘한 경우에는 재판을 할 경우 적법판단 가능성의 높고 낮음 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적법성 평가는 정성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 V . 종합적 평가의 한계와 가능성

조례를 평가하는데 있어 앞서 서술한 6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한 평 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6항목 기준은 정성적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 많고 정량화할 수 있어도 그 척도가 다르므로，이를 단순히 합산하여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유효성의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효율성면에서는 부족한 조례가 있는 반면，효율 성의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 조례도 있다．이러 한 평가결과를 통해 어떠한 기준을 어느 정도 중시할 것인가에 대해 서는 다면적인 검토를 요하며，최종적으로는 입법자（제안단계에서는 제안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
무엇보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조례자체가 불필요하게 되고，적법성에 대해서는 위법인 조례는 만들 수 없다는 의미로 필요불가결의 기초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유효성과 효율성은 두 항목이 일체되는 존재이며，조례의＇성능＇에 관한 기준이 라 할 수 있다．공평성과 협동성은 누구에게 어떠한 수익•부담이나 역할을 부여하는 가에 관한 기준이며，단적으로 말하면＇관계자 조정＇ 에 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우수조례의 조건>41)


41）礒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講義，第一法規株式会社，2012，103頁。

무엇보다도 어떤 조례안을 작성한 경우 상기 열거한 기준으로 조례 의 평가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이것으로 ‘이 조례안은 유효성 면 에서는 우수하지만，효율성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등의 해당 조례안 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협동성이나 적법성의 관점에서는 이 러한 개선이 필요하다＇와 같은 조례안을 수정하는 계기가 된다．42）

또한，어떤 조례안（혹은 대체안）을 설정하여 상호를 비교해 보는 것 도 중요하다．행정실무에서는 검토의 단계에서 의회의 반응 등을 예 상하여 삭제를 결정하는 것도 많으며，처음부터 1 개의 조례안 내지 소수의 조례안밖에 없으면 충분한 평가•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특히，평가에 있어서 정량적인 분석은 어려우므로，당면한 쉬운 방 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생각된다．예를 들면， 6 항목의 기준에서 이해득 실을 검토하여（○）우수，$\bigcirc$ 문제없음，$\triangle$ 약간 문제 있음，$\times$ 문제 있음의 간단한 평가를 하고，각각 5 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총점을 산출해보는 방법이 생각된다（다만，이 경우의 평점은 5단계로 표시하고，기준에 있어 중요도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총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은 아니다．）．
＜조례의 종합적 평가 이미지（간접흡연금지 조례의 경우）＞43）

| 조례안 | 조례안의 내용 |
| :---: | :---: | :---: | :---: | :---: | :---: | :---: | :---: |$\quad$ 유효성 $\quad$ 효율성 | 공평성 |
| :---: | | 협동성 |
| :---: | 적법성 | 종합 |
| :---: |
| 평가 |

42）礒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講義，第一法規株式会社，2012，105頁。
43）礒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講義，第一法規株式会社，2012，105頁。

| 조례안 | 조례안의 내용 | 유효성 | 효율성 | 공평성 | 협동성 | 적법성 | 종합 <br> 평가 |
| :---: | :---: | :---: | :---: | :---: | :---: | :---: | :---: |
| D 안 |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게 <br> 법적의무＋벌칙＋시정명령등을 <br> 정한 조례안 | $\left(\begin{array}{c}\text {（ }\end{array}\right.$ | $\Delta$ | $\circ$ | $\circ$ | $\Delta$ | 채용 |

（○）매우 우수함，$\bigcirc$ 우수함，$\triangle$ 약간 문제 있음，$\times$ 문제 있음

특히，집행의 결과 등의 데이터가 없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우선 시도해보고，그 정보를 관계자들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조례시행 후의 사후평가에 있어서는 일정한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 경우는 일정한 점검항목을 설정하여 각 항목별 평가 • 재검토를 진 행하여야 한다．사전평가시의 점검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조례평가의 점검사항（사후평가시의 표준례）＞44）

| 기 준 | 점검항목 | $\begin{gathered} \text { 소 재 } \\ \text { (입법사실 등) } \end{gathered}$ | 주된 적용 대상 | 성질 <br> 위치 |
| :---: | :---: | :---: | :---: | :---: |
| 1. 필요성 | （1）조례의 목적은 현시점에 서도 적절한가 <br> （2）조례가 해결하려고한 문 제는 현시점에서도 존재하고 있는가（입법사실 확인） <br> （3）제정 후에 같은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 은가 <br> （4）사인간의 자율노력이나 민 사절차에 의한 대응의 가능 성이 제기되지 않았는가 등 | （1）목적에 관 한 사회상황 <br> （2）과제에 관 한 사회상황 <br> （3）법령의 제 정 등의 상황 <br> （4）사인간의 제 도 등의 상황 | $\begin{gathered} \text { - 조례의 } \\ \text { 목적 } \end{gathered}$ | 조례제 <br> 정 의 <br> 기 초 <br> 전 제 <br> 조 건 |

44）礒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講義，第一法規株式会社，2012，104頁；北村 喜宣•山口道昭•出石 稔•礒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地域特性に適合した法環境の創造，有斐閣，2011，415頁。礒崎 初仁교수가 설정한 6가지 기준과 이에 대해 평가한 山本博史교수의 정리를 종합하여 재정리．

| 기 준 | 점검항목 | 소 재 （입법사실 등） | 주된 적용 대상 | 성질 위치 |
| :---: | :---: | :---: | :---: | :---: |
| 2. <br> 유효성 | （1）과제의 상황에 변화가 생 기지 않았는가，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예방，시정，개선） 되고 있는가 <br> （2）（목표가 명확한 경우）그 목표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는가 <br> （3）［규제조례의 경우］위반행 위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 는가，엉성한 법（ザル法）은 아 닌가 <br> （4）［급부조례의 경우］주민 등 이 제도를 어느 정도 이용하 고 있는가 <br> （5）문제의 해결이 조례에 의 한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과관계） | （1）～（4）조례의 시행실적，각 종 통계，조사 결과 등 <br> 【기초정보】 <br> －조례에 근거 한 처분－행 위 건수 등 <br> －위반행위 건수 <br> 【응용정보】 <br> －과거 상황의 데이터 <br> －타 지자체의 데이터 <br> －주민 등의 앙 케이트 결과 <br> －케이스스터 디의 결과 등 | －채용하 <br> 는 행정 <br> 절차 | ＇성능＇의 <br> 시 점 에 <br> 서 ‘우수 <br> 조례’가 <br> 되기 위 <br> 한 기준 |
| 3. 효율성 | （1）내부 비용（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 <br> －사업비（보조금，시설정비，의식 계몽 등） <br> －운영비（사무소 운영비，용구비， 여비 등） <br> －인건비（담당직원，관리직의 급 여 등） <br> （2）외부비용（사회적 불경제）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 <br> －대상자의 비용（지출한 비용，과 실이익） <br> －비대상자의 비용（가격의 상승） | （1）예산서•결 산서，직원 정 수관리 데이 터 등 <br> （2）사업자앙케 이트，케이스 스터디，사회 통계 등 |  |  |


| 기 준 | 점검항목 | 소 재 (입법사실 등) | 주된 적용 대상 | 성질 <br> 위치 |
| :---: | :---: | :---: | :---: | :---: |
| $\begin{gathered} 4 . \\ \text { 공평성 } \end{gathered}$ | (1) 특정의 대상자•지역•단 체 등에 과대한 부담이나 이 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br> (2) 주민•관계자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합리 적 이유가 있는가 <br> (3) 대상자-관계자로부터 불 만이나 소송제기는 없는가 | (1) 조례의 시 행실적, 각종 통계 <br> (2) 주민등의 의 견, 앙케이트 <br> (3) 불만제기, 소송제기 등의 상황 |  |  |
| 5. 협동성 | (1) [주민참가형의 규정이 있 는 경우] 이것이 기능하고 있 는가,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 는가 <br> (2) 조례의 집행에 주민이나 어느정도 NPO 의 참여•협력 하고 있는가 <br> (3) 새로운 주민참가나 주민 협동을 도입할 가능성은 없 는가 <br> (4) 주민으로부터 불만이나 상 담은 있는가, 이에 어떻게 대 응하고 있는가 | (1) 조례 등의 시행상황을 자 로(의견서의 수, 참가자 수 등) <br> (2) 조례시행에 대한 주민, NPO 의 참가•협력 상황 <br> (3) 직원•주민 등에 대한 청취 (4) 불만 등의 상황, 직원에 대한 청취 |  |  |
| 6. <br> 적법성 | (1) 주민•사업자의 권리•이익 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않 은가, 예상이상의 부담이 발생 하고 있지 않은가 <br> (2) 새로 제정된 법령에 저축되 지 않는가, 최근판례의 비추어 위법의 의심이 발생되지 않는가 (3) 행정소송이나 불복심사가 제 기되어 있지 않은가 <br> (4) 사법절차로 인해 조례의 효 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없는가 | (1) 주민의 의견 <br> (2) 관계 법령, 판례 등 <br> (3) 소송, 불복 심사의 상황 | - 조례의 목적 <br> - 채용하 는 행정 절차 | $\begin{array}{ll} \text { 조 례 제 } \\ \text { 정 } & \text { 의 } \\ \text { 기 } & \text { 초 } \\ \text { 전 } & \text { 제 } \\ \text { 조 } & \text { 건 } \end{array}$ |

## 제 3 절 일본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조례 분석

최근 조례에 대한 재검토（평가）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 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아직은 많지 않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을 각각의 평가방법을 채택하고 있다．현재 일본에서 조례평가를 시행하 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45）

## I．가나가와현（神奈川県）

가나가와현（神奈川県）46）에서는 「조례의 검토에 관한 요강」을 제정 （2008년）하고 2008년 4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이 요강에 의해 가 나가와현의 모든 조례（의회 관계를 제외）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재검 토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제도도입의 초기에는 2010년 3월말까지 2 년간은 거의 모든 조례에 대해 최초 조례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정 하였다．현재는 이 기한 내에 조례의 재검토를 하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는 순차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 1．제도 도입의 배경 및 검토의 경위

가나가와현에서는 2004년에 ‘행정시스템개혁중기방침＇을 정하고 행정 시스템개혁을 추진하였다．이 당시의 가나가와현지사였던 마츠자와 지 사는 재선을 위한 선거에서 공약으로 스마트 현청만들기를 정하고 행

45）이와 관련하여 일본 도도부현 의회의 기본조례 규정항목 관련 비교표를 부록 1 에 첨부하였다．주요 도도부현의 일반적인 조례의 규정항목 및 재검토 규정의 유무 를 확인할 수 있다．자세한 것은 본 보고서의 부록 1 참조．
46）가나가와현의 조례평가 결과는 본 보고서의 부록 2에 첨부하였다．가나가와현의 조례 재검토 현황 및 관련 조례의 재검토 조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2 를 참 조할 것．

정개혁의 조직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일정기간마다 조례 의 재검토를 하는 즉，＇조례 선셋시스템의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주요 선거공약으로 삼았다．

마츠자와 지사는 재선 후 2004년 6월에 현 의회에서 이 선셋시스템 에 대해서＂지금까지 제정된 가나가와현의 조례의 필요성 및 규정내 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또한 법률 개정 및 사회상황의 변환 에 비추어 적시개폐를 해오고 있지만，한번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전 체에 대해 재검토나 검토가 좀처럼 행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이에 조례가 항상 시대에 합치되도록 일정기간마다 재검토를 하고，폐지를 포함한 검토를 반드시 하도록 제도를 도입하 고 싶다＂라는 발언을 하였다．이러한 방침은 동년 7월에 「행정시스템 개혁 기본방침」에서 업무프로세스 개혁의 일환으로서 「조례 및 제도 등에 대해서 재검토하고，목적을 달성한 것 및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폐지를 포함하여 검토를 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조례선셋 시스템의 도입에 대하여 법령조사사무를 소관하고 있는 법무문서과를 중심으로 검토가 시작되었고，검토에는 현내의 전 청에서 조례조사를 하는 것과 함께 다른 도도부현의 상황파악도 하였 다．현의 청내조사는 2007년 5월과 9월에 실시되었으며，9월 조사시의 가나가와현 조례는 329 개로 조사의 결과，현민에의 영향 등 조례의 성 격에 맞게 분류를 하였는데， 80 여개의 조례가 현민 또는 현민 생활에 직접영향이 있는 조례로 파악되었다．또한，다른 도도부현의 상황으로 서는 개개의 조례 중에서 일정기간 후에 재검토를 실시하는 취지의 규정을 정하고 있는 사례와 조례 중에서 실효규정을 두고서 재검토를 실시하지 않으면 폐지하는 것으로 되는 사례도 파악되었다．그러나 통일적인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례전체의 재검토를 실 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사례는 없었다．

법무문서과에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재검토의 구 조를 구성하면서 이에 관한 과제 등에 대하서 현민 또는 현민생활에 직접 영향이 있는 조례 등을 소관하는 과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공 청을 실시하고 원안을 정리하여 2008년 2월 현의회에서 소관상임위원 회에 보고하고 요강을 제정하여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 2．제도 도입 시에 문제가 되었던 주된 논점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1）대상조례의 범위，（2）재검토의 관점，（3）현민，지식인，의회 등 당국이외의 관련된 사람들이 주된 논 점이 되었다．
우선，＇대상조례의 범위＇는 정책적인 조례로서 당연히 재검토의 대 상이 되며，법률상 제정이 의무로 되어 있는 조례나 정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해진 조례 등은 대상 외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지，또한 현민 생활에 직결한 조례로 운용 중에 검토•연구를 적정하 게 운용하고 있는 조례는 새로운 재검토규정을 마련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이 나왔다．그러나 법률상 제정이 의무지워져 있 는 조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의 판단에 맡기고 있고，또한 어떠한 조례는 최소한 필요성，적법성의 검증은 필요한 것으로 정리되었다．더 욱이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는 조례는 그 검토결과를 전청 공통시스템 에 의한 보고 및 공표하고 있는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전체 조례를 재검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또한，재검토의 관점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전문가 등의 연구성과를 참고로 하여 내부적으로 의 논하고 최소한 다섯 가지의 기준（필요성，유효성，효율성，기본방침적 함성，적법성）을 중심으로 하여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47）

[^7]
## 3．제도 도입 후 운용상황 및 효과

가나가와현（神奈川県）에서는 ‘조례의 검토에 관한 요강’（2008년 제 정）에 근거하여 매년 조례의 재검토를 하고 있다．2011년 4월 현재 재 검토대상 조례 307 건 중 개정을 검토한 것은 67 건，폐지 검토는 12 건， 개정•폐지 필요 없음은 228 건이다．검토 결과 약 4 분의 1 의 조례에 대해 개정－폐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 1 년간은 단순한 규정의 정리를 포함하여 상 당히 이전부터 개정해야하는 상황에 있었던 조례에 대하여 이 시스템 의 검토를 계기로 재검토가 진행되었던 것에 대한 의의를 평가하기도 한다．이러한 개정의 다수는 아마도 이러한 계기가 아니었다면 조례 개정이 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또한，의회보고•현민 공표를 전제 로 하고 있는 이 재검토시스템에 있어서 행정은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의회•현민으로 부 터 엄격한 비판을 받게 된다．즉，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경직성 이 높았던 조례의 개폐가 재검토를 통한 사회의 상황을 유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가나가와현에서는 현재 300 이상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 및 인허가 등의 제도를 만드는 조례，현민 생활 에 관계가 깊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등 다양한 내용의 조례가 있다．또한 본 현에서는 현재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새로운 조례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조례는 법률상의 문제는 없는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효한 것인 지 등의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제정된 후에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사회상황에 알 맞은지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현의 조례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1）필요성，（2）유효성，（3）효 율성，（4）기본방침적합성，（5）적법성 5가지 관점에서 재검토하여，홈 페이지에 조례를 재검토한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덧붙여 재검토 결과＂개정을 검토한다．＂로 결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의 상황을 바탕으로 조례 재검토 결과일람표에 다음 재 검토 일정을 공표한다．${ }^{48)}$

条問の見直しの仕組み


48）http：／／www．pref．kanagawa．jp／cnt／f6823／

## П．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神奈川県 相模原市）

가나가와현의 사가미하라시는 2010년에 정령지정도시가 되면서 지 방자치단체로서의 결정권이 이전보다 광범위해짐에 따라 이러한 지방 자치단체의 결정권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사 가미하라시 조례정비방침을 정하였다．사가미하라시의 조례정비방침은 다음 표와 같다．
［사마히마라시 조례등정비방침］

> 사가미하라시 조례 등 정비 방침

본 방침은 정령지정도시에의 이행이나 국가의 지역주권개혁 등으로 확대하는 자기결정권을 활용하고 복잡•다양화하는 행정 과제에 대응한 적절한 정책의 실행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규칙，규정 및 요강（이하＂조례 등＂이라 한다．） 에 정하는 사항의 기준을 밝혀 조례 등의 정확한 정비를 목표로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1．조례로 정비해야 할 사항
（1）반드시 조례로 정하는 것
1）지방 자치 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취지 규정되어 있는 것
（1）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
（2）부속 기관 설치에 관한 것
（3）분담금，사용료，가입금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것
（4）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것 등
2）기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취지 규정되어 있는 것
（2）원칙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
1）시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 혹은 기본 이념 또는 시민，사업자 등에 대한 책무를 정하는 것
2）금전의 징수를 하는 자（징수금을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
3）권리 의무 규제할 순 없지만 시민들에게 일정한 조작을 요구하는 것（행 정 지도 중 규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며，행정 지도에 따른 결과가 시민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줄것을 포함한다．）
4) 시의 시책 등에 대해 주민 참여의 추진이나 절차를 정하는 것
2. 규칙에서 규정해야 하는 사항
(1) 반드시 규칙에서 정하는 것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취지 규정되어 있는 것
(2) 원칙적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것
(1)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절차 등에 관한 것
(2) 급부에 관련된 시민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것
(3) 행정 내부 규율(조직, 운영 등)에 관한 것
(4) 조례를 제정해 내지는 않지만, 시민에 일정한 조작을 요구하는 것
(5) 조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것
3.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1) 고시에 따른 것
(1) 법령, 조례나 규칙의 위임 등에 의해 그 내용을 보충해 외부로 공시하는 것
(2) 주민 등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이지만, 공공 시설이 아니라 행정 재산 으로서 관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설의 명칭, 위치 관리 등에 대해 정하 는 것 등
(2) 훈령에 의한 것

직원에 대해 내부적인 사무 운영 등에 대해 지휘 감독하기 위해 정하는 것
4. 요강으로 정하는 사항
(1) 보조금, 보조금 등 시민에게의 지원 시책의 세목을 정하는 것
(2) 사업의 실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사가미하라시는 복잡 - 다양화하는 행정 과제에 대응한 적절한 정책 의 실행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 규칙, 규정 및 요강(이하 "조례 등"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의 기준을 밝혀 조례 등의 정확한 정비를 목표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가미하라시 조례 등 정비 방침」을 정 하였으며, 정해진 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조례화의 검토 및 정확한 예 규 정비를 실시해 가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조례 등에 대해서도 본 방침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 증이 필요함에 따라「기존 조례 등의 재검토」에 의해 조례 등의 적시 성의 관점에서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수행하였다．이를 위하여 다음 의 기준을 적용한다．

> [기존 조례 등의 재검토에 대해]

정령지정도시로의 전환 등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조례 등도 있다는 점에서 시행 상황이나 「조례등정비 방침」 등을 근거로 하여 조례 등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조례 등을 재검토한다．

1．재검토의 내용
（1）조례의 재검토
1）재검토의 대상
다음의 조례를 제외한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대상 조례 230건）
（1）의회 관련 조례（ 6 건）
（2）제정 후 5 년 이내의 조례（53건）
2）재검토의 시점
조례의 적시성이 확보되도록 다음을 기본으로 재검토한다．

| 필요성 | 제정 당시의 과제가 존재하고 현재도 필요로 하고 있는가 |
| :---: | :---: |
| 유효성 | 조례제정 목적이 현재 실현됙 있는가 |
| 효율성 | 조례제정 목적의 내용이 현재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
| 협동성 | 조례의 내용이 시민，시민 단체，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의 참 가•참가，협동，시민 활동의 자주성•자기 결정성이 실현되고 있는가 |
| 적합성 | 신－사가미하라시 종합계획 등 시정의 기본방침 등에 적합한가 |
| 적법성 |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가，사법판단으로 위법성 을 물을 가능성은 없는가 |
| 적절성 | 조례가 규정해야 할 예규의 종류로서 적절한가 |

（1）예규 소관과에 의한 재검토 결과를 부국에서 집약하여 국의 방침을 결정한다．
（2）부국의 방침에 대해 총무국과 조정을 하고，관청의 회의에서 의결하 고 재검토 결과를 확정한다．
(3) 재검토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4) 검토의 결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례에 대해서는 제정 및 개폐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5) 재검토의 내용에 따라 공청회나 관계 심의회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를 실시한다.

가나가와현의 조례 재검토 조서를 통해 살펴본 조례 재검토의 사례 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조례 재검토 조서 사례 1



조례 재검토 조서 사례 2


|  | 적법성 <br> 헌법• <br> 법령에 <br> 저촉되지 <br> 않는가 | 어린이•보육 지원에 대해서 기본이념이나 지원의 조 직체계등을 정하고 있고，제정후의 법령의 제정•개폐 상황에 있어서도 헌법，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은 없다．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재 1．개정•폐지 및 운용의 개선 등의 필요는 없다． <br> 검 2．개정•폐지의 필요는 없다．운용의 개선 등을 검토한다． <br> 토 3．개정을 검토한다．운용의 개선 등의 필요는 없다． <br> 결 4．개정 및 운용의 개선 등을 검토한다． <br> 과 5．폐지를 검토한다． | 1．개정•폐지 및 운용의 개선 등의 필요는 없다． <br> 2．개정－폐지의 필요는 없다．운용의 개선 등을 검토한다． <br> 3．개정을 검토한다．운용의 개선 등의 필요는 없다． <br> 4．개정 및 운용의 개선 등을 검토한다． <br> 5．폐지를 검토한다． |  |  | 이유 등 <br> 례의 운용상 과 견되지 않음． |

## III．북해도（北海道）

1．조례 재검토 제도 도입의 경위
북해도에서는 「조례의 재검토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서」（2008년 7 월 1 일 총무부장 결정）을 정하고 순차개정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조례의 일제점검•재검토제도 구축은 2009년도 제 1 회 북해도의회정 례회에서의 일반질문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 었다．해당 질의에서 가나가와현의 「조례 선셋시스템」을 참고하여 북 해도에서도 도민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를 시작으로 조례전체 를 일제점검하고 필요한 재검토를 하고，이와 더불어 「선셋조항」 등 재검토 규정을 설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이에 대해 북해도의 지사는 분야별로 매우 다양한 조 례를 분류화하고 그 시행상황 등을 일제히 점검하여 필요의 재검토를 하는 방법이나 재검토 규정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려고 한다 는 답변을 하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북해도의 조례재검토가 시작되 었다．
2. 조례 재검토의 대상

북해도의 2008년 및 2009년도 일제점검•재검토에서는 총조례 412 개 중에서 의회관계조례와 제정 후 5년 이내(2008년 4월 1일 시점)의 조례 44 개 제외한 358 개 조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1) 도민의 권 리를 제한하고 또는 도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조례(17개), (2) 도민생활 관련 정책에 관한 조례(17개), (3) 특정 도민에게 직접이익을 부여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5 년마다 재검토를 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재검토 조항이 있는 조례는 88개 이다. 또한, 이외의 조례에 대해서는 사무사업에 관한 정책평가의 결 과를 활용하면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조례 재검토의 기준

조례 재검토시의 관점으로 조례의 시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례의 적시성이 확보되도록 (1) 필요성, (2) 효과, (3)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4) 적법성, (5) 규정의 적정화의 5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점검•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필요성 등의 판단에 대하여는 행정•재 정개혁이나 규제완화, 지역주권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요구에 유의여 그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법의 시행조례 등에 있어서는 재검토의 결과, 필요한 규정을 설계할 때에 법령으로 인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 규정의 개폐 등을 국 가에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 - 조례가 대응하도록하고 있는 과제는 현재에도 조례 <br> 에 의해 대응해야만하는 과제인가, 도가 대응해야만 <br> 하는 과제인가 <br> - 규제의 방향이 현재의 사회 정세하에서 필요이상으 <br> 로 되어성 있지는 않은가 <br> -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의해 불필요한 규정은 아닌가 |
| :--- | :--- |


| (2) 효 과 | -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시점에서도 조례의 규 <br> 정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가 |
| :--- | :--- |
| (3) 기본방침과의 <br> 정합성 | - 조례의 내용이 도정의 장기적인 기본방침(신 • 북해도 <br> 종합 계획 등)에 적합한가 |
| (4) 적법성 | -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범위내인가 |
| (5) 규정의 적정화 | - 사회정세의 변화에 수반하여 적절하지 않은 표현은 <br> -즌가 <br> - 조례의 규정이 알기 윕게 정리되어 있는가 |

## 4. 조례 재검토의 순서

재검토의 순서로는 우선 중점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1) 소관과에서 조례 제정취지의 확인, 조례의 성격 등의 분석, 최근 시 행상황을 파악하고 조례의 재검토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조례 개폐등 의 여부를 판단하고 점검표를 작성한다. (2) 법제문서과에서 각 조례의 소관부서 등의 검토결과를 종합정리하고 검토한다. 또한, 이외의 조례 에 대하여도 중점적으로 재검토를 할 조례에 준하여 하고 있다.
5. 조례 재검토의 결과

일제점검•재검토의 결과, 재검토 대상 조례 358 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 총조례 | 재검토 <br> 대상 <br> 조례 | $\begin{aligned} & \text { 개폐 } \\ & \text { 조례 } \end{aligned}$ | 개 정 | 폐 진 | $\begin{aligned} & \text { 규정 } \\ & \text { 정비 } \end{aligned}$ |  | 정세변화에 의한 개정을 하지 않는 것 으로 한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검토 규정의 설정 <br> (제정후 5년 이내 포함) |  |
| 412 | 358 | 182 | 9 | 18 | 114 | 80 | 2 |

* 「개폐조례」의 수는 '개정', '규정의 정비', '재검토 규정의 설정’을 중복 실시하고 있는 조례도 있으므로, 세 항목(‘개정', ‘규정의 정비', '재검토 규정의 설정')의 합계의 수와는 맞지 않는다.

6． 2010 년 이후 조례의 재검토

2010년 이후 조례 재검토 대상은 재검토 규정이 있는 조례인 법제 문서과로부터 제정 또는 전회의 재검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관부서에 재검토를 의뢰한다．검토기준은 상술한 5가지 항목（1）필 요성，（2）효과，（3）기본방침과의 정합성，（4）적법성，（5）규정의 적정 화）이며，조례 내용에 대해 외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 다．2010년에는 7월에 소관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2011년 1월에 재 검토 상황에 대해 조회하고（회답기한은 3월말까지），4월에 결과를 취 합하였다．이후에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2015년에 일괄하여 취합한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49）

## IV．시즈오카시（静岡市）

시즈오카시에서는 2008년에＇정책법무추진계획＇을 정하고 이에 근거 하여 행정의 Legal Dock 또는 Legal Check를 실시하고 있다．이것은 일 상의 사무사업 실시방식에 대해 예방법무•컴플라이언스（법령준수）나 분권개혁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주고이며，전문가（정책법무 어드바이 서）도 참가하여 소관과의 설명을 들으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넓게는 법률의 집행을 포함하여 일상적인 사무처리를 실무에 입각하여 점검하는 것이며，집행법무（특히，집행관리）의 일환으 로서도 평가법무의 취급으로서도 주목된다．

## V．니가타시（新潟市）

니가타시 자치기본조례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후 5년 이내에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

49）川崎 政司，『シリーズ 自治体政策法務講座 第1巻総論•立法法務』，ぎょうせい， 2012，315頁。

다．이에 따라 관청내외에 검토조직을 설치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하기로 하였다．

니가타시의 자치기본조례는 시민자치의 기본이 되는 조례로서 2010 년 2월 22 일에 제정되었다．이 조례에서는＂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조례의 시행 후 5 년 내에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재 검토를 한다＂라고 정하여 외부의 관점에서 재검토를 실시하는 기관으 로서 위원회가 2012년 5월 25일에 설치되었다．
2012년 7월 이후 총7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니가타시 자치기본 조례에 관련된 조례•제도 등의 운용 상황에 대해 시가 실시한 내부 검증결과를 확인하면서 조례의 취지에 따라 시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다．

## 제 4 절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의 시사점

## I．일본 조례 평가의 과제와 전망

## 1．조례제정과정에서 조례평가기준의 적용가능성

일본의 경우 2000 년에 시행된 지방분권개혁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다양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이러한 다양한 조례 중에는 이 미 제정되어 있는 다른 조례의 존재자체가 마치 조례제정의 정당한 근거인 것처럼 오해되어，다른 조례를 기계적으로 모방하여 제정되고 있는 조례도 있다．조례의 제정과정은 조례의 내용에 큰 영향을 기여 한다．적절한 조례제정과정을 거치치 않은 조례의 제정은 행정의 자 기만족，또는 한정된 행정자원의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50）

50）北村 喜宣•山口 道昭•出石 稔•礒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有斐閣，2011年， 414頁。

磯崎（이소자키）교수가 설명한 6가지 기준51）에 의한 우수한 조례의 조건52）은 기초적 조건인＇필요성’과＇적법성＇을 충족하고 그 외의 4가 지의 기준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이것들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독립 적인 입법사실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 의하면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형식인 조례 의 성질을 반영하여＇법률의 입법평가＇와 구별하여＇조례의 입법평가＇ 를 수행할 때에 유용한 기준을 정립한 점，그리고 지금까지는 지방자 치단체의 법무매니지먼트 사이클（Plan－Do－See）의 구조에 의하면＇See＇ 의 단계에서의＇사후평가＇가 고찰의 중심이고，오히려 6가지 기준을 ＇사후평가＇의 고찰에서도 활용해야 한다는 점53）에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그러나 조례평가의 착안점이 ‘사전평가＇에까지 확대를 보였 지만 평가의 직접대상은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한＇조례내용＇그 자체 이다．＇조례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한 6가지 기준은＇조례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제정과정’을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54)}$

51）주33）의 조례평가의 점검항목－사후평가의 경우 표준례
52）＇우수한 조례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자체는 어려운 주제이다．礒崎교수도 하나로
 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형식인 조례의 성질을 반영하고，규제조례에 한하지 않고 일반 조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부터 이 구조를 만족한 조례를 ‘우수한 조례’라 고 할 수 있다．北村 喜宣•山口 道昭•出石 稔•礒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有斐閣，2011年，415頁 注3）参照。
53）조례입안자는 예를들면 재판소에 의한＇사후평가＇를 깊이 의식하고，조례의＇사전 평가＇를 하게 되고，해야만 한다．이렿게＇사후평가＇와＇사전평가＇는 연동되고 있으 므로，이 점에 대해서는 礒崎교수의 주장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이를 굳이 적극적으로 의식하게 하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北村 喜宣•山口 道昭•出石稔•礒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有斐閣，2011年，416頁参照。）
54）＇조례제정과정’에 있어서＇조례내용＇이 평가되는 것을 생각하면＇조례내용＇의 평 가기준을 의식하지 않은 ‘조례제정과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어떠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가가 문제로 되는가에 대하여 신규조례의 입 안실무에 있어 礒崎교수의 6가지 기준을 활용한 결과，유용성을 확인했으므로 이 6 기준이 ‘조례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한 기준인 것을 전제로 한다（北村 喜宣•山口 道昭•出石 稔•礒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有斐閣，2011年，416頁参照。）。

2．조례 제정 시의 정책적 과제

정책적 검토의 출발점임과 함께 기반이 되는 것은 ‘우수조례’란 무 엇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입법평가의 이론이며，그 중에서도 평가이론 이 중요하다．앞에서 입법평가에 있어서 정책평가법 등의 정책평가의 틀을 기초로 한（1）필요성，（2）유효성，（3）효율성，（4）공평성，（5）협동 성（참가성），（6）적법성의 총 6가지의 기준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적절 하다고 언급하였다．55）이 중에서도 필요성과 적법성은 조례가 성립하 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며，그 외의 항목은 보다 좋은 법이 되기 위 한 조건이다．또한，평가에 대하여는 목적과 수단의 두 가지를 대상으 로 하는 것인데，필요성은 주로 법의 ‘목적’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 며，유효성，효율성，공평성，협동성은 주로 ‘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 준이며，적법성은 이것들의 전체를 묻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입법평가의 구조-우수조례의 조건>


55）礒崎 初仁，『立法評価の理論』，鈴木 庸夫『自治体法務改革の理論』，勁草書房，2007， 100頁以下参照。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조례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우수조 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후평가만이 아닌 제정 전에 시행 후의 효과 등을 예상하여 사전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입안 작업에 반영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각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유효성을 어떠한 데이터 와 방법에 의해 측정할지, 유효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공평성의 내용으로 어떠한 배분원칙을 정할지 등, 이론적이고 실재적 인 과제가 있다. 이것들을 가능한 한 구체적인 소재를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법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법무를 활용하여 실현하는 구조 이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활동과 자치입법평가의 시스템 또는 법령평가의 시스템을 적절하게 연동시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실현이 효과적으로 행해지게 된다.

## 3. 평가법무의 과제

(1) 조례의 개정 - 폐지절차와 평가
(1) 개정이 필요한 조례의 파악

돗토리현의 경우는 의회의 개회 2개월 전에 당해 의회에서 제정• 개폐해야하는 조례 및 당해 년도 제정•개폐해야하는 조례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법무실장명의으로 조회문서를 제출하고 원칙적으 로 조회의 대상이 된 조례에 대해서는 의견청취•심사를 하고 있다. 현민의 의견을 묻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제안한 당 해 의회의 개회 전에 소관상임위원회에의 보고를 한 뒤, 퍼블릭 코멘 트(의견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벌칙에 관련 한 조례의 제정 및 통상 $2 \sim 3$ 개월이 소요되므로(길게는 6 개월 이상을 요한다), 당해 년도 초기에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책법무실에서 사전심사를 한 조례안은 총무부장을 회장으로 하는 ‘법령심사회’에서 심사를 하고，심사결과에 대한 대응，최종확인，기안 결재의 절차로 진행된다．

최근 돗토리현의 독자시책의 결정 시기 등의 요소에 의해 법령심사 회 개최의 가까운 시일이나 법령심사회 후에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다음회기로 넘기는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각 소관부서의 해 당 시책이 조례 제정•개폐로 진행되는 경우에 정보의 제공을 의뢰하 는 것과 함께 정책법무실로서도 예산 등의 정보를 기본으로 한 조례 제정개폐정보의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관보 등의 체크를 하여 법령의 제정개폐에 의해 조례의 제정개폐가 필요유무를 확인하 고 있다．
（2）정책평가와 조례의 제정개폐

각 소관부서에서 조례의 제정•개폐 필요여부의 판단은 그 소관부 서에 속하는 시책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평 가결과나 의견 등의 정보를 기본으로 진행되며，스스로가 매년도 임 시재검토나 평가를 하고，그 중에서 조례의 제정개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소관 부서에서 검토하고，지사－부지사와의 협 의를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는 것이 결정된다．

시책대상자의 요망
업계단체의 요망
심의회의 심사결과 등
현민의 요구
Summer Review（サマーレビュー）${ }^{56)}$
위 5 가지 항목의 정보를 받은 의회의 질문 등

56）국가 예산의 신년도 편성을 위해 여름에 사업의 전망이나 예산의 재점검을 하는 것．

또한 지사 스스로가 각종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정책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의해 조례의 제정개폐가 필요하다고 된 경우는 지사의 의 견을 받은 담당부서가 조례안을 입안하게 된다．
（3）조례제정목적의 질적 전환
지방공공단체가 하는 자치입법의 주요 목적인 조례 중에는 개개의 법령으로부터 직접 위임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지방자치법등의 법 령에서 조례에서 정해진 것으로 되어있는 조직，급여 등 지방공공단 체가 조례에서 정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제정된 것도 있지만， 돗토리현에서는 현 단독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는 사례 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제일의 돗토리 사구를 지키는 조례（日本一の鳥取砂丘 を守り育てる条例 2008년 9월 의회），돗토리현 산간지역진흥조례（鳥取県みんなで取り込む中山間地域進行条例 2009년 6월 의회）등 현의 중 요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수동적으로 조례의 제정•개폐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 등을 하는 것이며，이 는 2000 년의 지방분권개혁이후에 더욱 명확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 스스로가 정해서 얻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조례를 활용하고，요강 등에서 정해진 경우 에 비교하여 실행성의 면에서 보다 강하다고 보고 있다．57）

## （4）조례평가의 실제

시책대상자，업계단체，심의회，현민 등의 평가를 받는 것과 함께 현 스스로의 평가로서 Summer Review（사무사업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의 결과에 기하여 정책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폐 등을 판단하게 된다．

57）衣笠章，評価法務の課題，ジュリスト No．1391，2009．12．15．，136頁。

시책의 소관과에서는 이러한 평가에 더하여 조례에 대응하는 것으 로 입법사실이나 관련한 법령 등이 변하지 않은가 등을 자세히 조사 하여 조례의 제정개폐를 입하는 것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 퍼블릭 코 멘트（의견공모절차）를 통해 현민의 의견을 물어 필요한 수정을 하는 것으로 된다．

정책과 조례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사，소관부서，소관과 등 각 단계 에서 하고 있으며，각각의 단계에서 평가결과를 근거로 최종적으로는 지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2006년까지는 조직관계 조례 등을 제외하고 주된 조례는 실효 규정을 두는 것과 함께，그 실효기한까지 재검토를 하는 것을 의무규 정으로 하고 적어도 실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지만，규 제조례 등에서 직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조례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규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현민에게는 불이익을 발생하는 것이다．이는 획일적인 취급을 요하며 조례의 재검토의 필 요성 등을 고려하고 조성을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의 실 효규정을 두고，실효규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 재검 토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개정을 하고 있다．

의회의 제안에 의해 조례가 신설되거나 또는 조례의 일부개정이 이 뤄지는 경우에는 의회가 그 조례가 필요한 것을 보증하는 입법사실을 파악하고，정책으로서 그 조례의 신설을 하는 일정의 평가를 하여 기 존 조례의 일부개정을 한다는 것은 조례평가가 이뤄진 것과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또한，의회에서 지사가 제안한 조례에 대해 동 기가 제출되어 조례안이 수정된 것과 대안이 제출된 것，또는 부결되 는 것이 있는가，이것들과 의회에서 평가의 하나를 나타낸다고 생각 된다．${ }^{58)}$

58）衣笠章 前掲論文，137頁。
（2）평가법무의 효과와 향후 과제

돗토리현에서는 시책이나 조례의 평가에 기준하여 조례의 제정개폐 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으며，이러한 평가나 법령개정 정보를 파악 하는 노력에 의해 필요한 조례개정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 로 생각되며 각종 평가의 효과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59）

다만，조례제정 및 개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시기나 시책의 실시 의 결정시기가 조례의 제정 및 개폐가 적절하게 행해지기 위해서 필 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보여진다．보다 좋은 조례 를 입안하기 위해서도 더 여유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조례의 실효규정은 스스로의 사무의 근거가 없어져버리는 것으로 직원을 조례 개폐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현민의 입장에서의 방침을 재검토한 것으로 직원이 지금까지의 이상으로 시책이나 조례의 평가 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돗토리현의 경우에는 ‘평가법무’라고 명칭 지어진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실제 실시하고 있는 업무는 ‘평가법무’에 관한 사항으로 정 리할 수 있다．

지방분권이 진행되면 될수록 현의 조직 내의 각 부국에서 필요한 법무에 대한 소양을 가진 인재의 확보나 육성도 조례평가와 관련된 과제라고 생각한다．${ }^{60)}$ 조례평가가 확대되어 진행될수록 이와 관련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인재의 육성에 대해서도 지 방의회 전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8]
# П．조례평가를 위한 평가법무의 구조 

## 1．조례평가의 실천

조례평가를 위한 각 기준들에 의해 평가법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평가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평가법무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 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조례평가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고려되 어야 하는 구조로는 첫째，누가 조례를 평가하는가에 대한 평가주체 의 문제이다．평가작업 자체는 개별의 법제도의 집행을 담당하는 담 당과가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왜냐하면，집행상황에 관한 정 보를 가지고 있고，이후의 재검토시에도 실무적인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담당과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현황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평가결과를 취합함에 있어서는 전체를 총괄하는 법제담당과 등의 조직이 점검•조정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야 한다．더욱이，주민이나 전문가의 시점을 방영하여 시민들 중에서 공모위원이나 전문가들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의 평가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둘째，무엇에 대해 평가를 하는가라는 평가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고 있는 주요법률에 대하여는 법률 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각 분야의 정책을 지원하려는 주요법률 에 한정함과 함께 집행상황에 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또한， 정책적인 조례에 있어서는 자율조례와 법정사무조례가 있는데 주요 자율조례를 대상으로 하여 법정사무조례는 중요한 것에 한정하게 된 다．규제에 대하여는 법률이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충적 으로 정하는 것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 이 적절할 것이다．${ }^{61)}$

61）礒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講義，第一法規株式会社，2012，277頁。

셋째，어느 시점에서 평가를 할 것인가라는 시기의 문제이다．새롭 게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조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시행상황에 관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므로，시행으로부터 5년 정도의 시점에 실시 할 필요가 있다．이 외의 정기적인 평가•재검토에 대해서는 사회경 제상황의 변화와 작업비용을 고려하여 5～10년 정도의 주기로 실시하 는 것으로 하였다．무엇보다도 사전에 실시시기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62)}$

넷째，어떠한 관점 및 척도에 의해 평가하는가라는 기준의 문제이 다．연구자 및 실제 조례평가를 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르지만，조례의 목적에 대해서는＇필요성＇의 검토를 하고， 수단에 대해서는＇유효성＇，＇효율성＇，＇공평성＇，＇협동성＇의 평가를 하고， 전체에 대해서는＇적법성’의 검토를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조례의 실시목적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63）

## 2．법제평가의 실천

각각의 법률•조례에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전체 또는 특정 분야 전체의 법률•조례를 점검하고，그 문제점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전체적인 평가를 법제평가라고 한다．구체적으로는 법률이나 조례의 전체에 대해서 부족한 영역이나 과제는 없는지，법 제도간의 중복이나 통일적이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전체의 체계성은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치기본조례인 마을만들기 조례 등 기본적•종합적인 조 례의 제정이 이루어져 조례자체의 체계성이 의식되고 있다．특히，자

62）礒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講義，第一法規株式会社，2012，277頁。
63）현재 조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가나가와현에서는 필요성，유효성，효율성，기본 방침적합성，적법성，그 외의 6 가지 항목，북해도에서는 필요성，효과，기본방침과의 적합성，적법성，규정의 적정화라는 5 가지 항목，요코하마시에서는 조례의 설치•목 적•필요성，규정내용，시의 시책，외적요인과의 관계등의 4 가지 구분을 설정하고 17 개의 체크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치기본조례가＇지방자치단체의 헌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하에서 환경기본조례 등 분야별의 기본조례가 있고 개별조례가 있 는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이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체 계를 염두에 두고 현행 조례를 평가하고 이후의 과제를 도출한다．${ }^{64)}$

III．조례 입법평가 도입에의 시사점
이상으로 일본의 조례평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조례의 제정과정은 조례의 내용에 큰 영향을 기여한다．적절한 조례제정과정을 거치치 않은 조례의 제정은 행정의 자기만족，또는 한정된 행정자원의 낭비 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이 수렴되어 보다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 이 없을 것이다．

일본의 조례평가 현황 및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바，지방자치 단체가 정하는 법형식인 조례의 성질을 반영하여＇법률의 입법평가＇와 구별하여＇조례의 입법평가＇를 수행할 때에 유용한 기준을 정립한 점，그 리고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매니지먼트 사이클（Plan－Do－See）의 구조에 의하면＇See＇의 단계에서의＇사후평가＇가 고찰의 중심이고，오 히려 6가지 기준을＇사후평가＇의 고찰에서도 활용해야 한다는 점 등에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그러나 조례평가와 관련하여 그 착안점 이＇사전평가＇에까지 확대를 보였지만 평가의 직접대상은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한 ‘조례내용＇그 자체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보인 다．즉 ‘조례제정과정’에 관련된 실례를 반영한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연구에서는 살펴보지 못하였다．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본의 조례평가에서 중요한 시사점으로 조례 입법평가에 있어서 기준인（1）필요성，（2）유효성，（3）효율성，（4）공평성，（5）협동성（참가

64）礒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講義，第一法規株式会社，2012，279頁。

성), (6) 적법성의 총 6 가지의 기준의 확인이 있다. 이 중에서도 필요 성과 적법성은 조례가 성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며, 그 외의 항 목은 보다 좋은 법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또한, 평가에 대하여는 목 적과 수단의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필요성은 주로 법의 ‘목적’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며, 유효성, 효율성, 공평성, 협동성은 주로 '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며, 적법성은 이것들의 전체를 묻 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제4장에서 제시하 게 될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표준조례안 및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 을 것이며, 향후 실제 조례 입법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요한 기준 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제 4 장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의 마련과 관련하여 우선 기존에 제시된 조례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조례에 대한 사전평가 지표와 사후평가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제 1 절 조례평가와 관련된 지표

기존에 조례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의 연구결과 는 물론이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 등 조례 입안 관련 사 항도 포함되어 있다．이 절에서는 기존의 조례평가에 관련된 지표를 제시하고 검토하기로 한다．

## I．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입안심사기준표 마련의 배경
민원과 관련되는 각종 자치법규가 적법하고 시행가능하며 효율성을 갖는 수준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치법규 입안을 심사하는 심사기준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이 심사기준표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이와 같이 민원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을 갖는 자치법규의 제정 등 두 가지 투명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 기 위해 우선 입법담당공무원의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울특 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를 만들었고 이를 규범화하기 위해 새 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65）를 제정하고 이

6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2002년 5월 20일 제정 조례 제 4003호）

조례의 별표로 '입안심사기준표'를 포함시킨 것이다.66)

## 2. 입안심사기준표의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자 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 사후 관리의 네 가지 대분류를 두고, 20 개의 소분류로 심사항목을 세분하 고, 소분류에 따른 심사항목을 111개로 확대하여 평가를 하도록 기준 표를 구성하고 있다. 자세한 입안심사기준표는 다음 표와 같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 구 분 | 심 사 항 목 | 평 가 |
| :---: | :---: | :---: |
| I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 1. 입법수요 동향조사 |  |
|  | 가. 입법수요조사는 어떻게 시작하는가(상위법령 제• 개정, 시민여론, 자체 필요 등) |  |
|  | 나. 입법요구(의사)는 어떤 매체를 통하여 수집되는가 |  |
|  | 다. 어떻게 수집하는가 |  |
|  | 라.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
|  | 마.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및 결정 |  |
|  | 2. 종전제도의 운영실태조사 |  |
|  | 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가 |  |
|  | 나.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가 없는 경우 훈령•지 침 또는 지시 등에 의하였는가 |  |
|  | 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예산 편성근거는 무 엇이며 적법하게 편성되었는가 |  |

66) 한상우 외 3 인, 제주특별자치도 조레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 방안, 제주발전 연구원, 2012, 54-55면.

| 구 |  | 심 사 항 목 | 평 가 |
| :---: | :---: | :---: | :---: |
|  |  | 라. 시민은 종래의 제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이 있었 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  |
|  |  | 마. 자치법규를 입법하지 않고 종전 제도로 운영할 경 우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가 |  |
|  |  | 3. 입법의 필요성 조사 |  |
|  |  | 가. 자치법규 입법이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의 필요에 의한 입법인가 |  |
|  |  | 나. 법령에 자치법규의 제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 우에 법령의 시행을 위한 보완적인 제정인가 |  |
|  |  | 다. 현재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 |  |
|  |  | 라. 지방의회의원 또는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요구에 의한 입법인가 |  |
|  |  | 마. 시민단체등의 조례 제정 및 개폐의 요구 또는 다 른 입법 요구에 의한 것인가 |  |
|  |  | 4. 입법추진 일정의 확인 |  |
|  |  | 가.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가 |  |
|  |  | 나. 긴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인가 |  |
|  |  | 다.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 기간이 충 분히 주어지고 있는가 |  |
|  |  | 라. 계획된 기일안에 입법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의 대 안은 무엇인가 |  |
|  |  | 5. 자치법규 입법효과의 사전예측 |  |
|  |  | 가.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는 구체적으로 측정되었는가 |  |
|  |  | 나.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해 결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  |


| 구 분 | 심 사 항 목 | 평 가 |
| :---: | :---: | :---: |
|  | 다.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예산의 확보등 의 문제는 검토되었는가 |  |
|  | 라. 자치법규 입법으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거 나 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
| II 자치법규 <br> 내용의 <br> 정당성 확보 | 1. 헌법규정의 적합성 |  |
|  | 가. 자치법규가 관련된 헌법규정 또는 국가목표와 일 치하는가 |  |
|  | 나.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가 |  |
|  | 다.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의무, 세금, 손실)을 주는 것 은 아닌가 |  |
|  | 라. 자치법규 내용이 헌법이념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 이는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닌가 |  |
|  | 2.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  |
|  | 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 렇다면 그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 고 있는가 |  |
|  | 나.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서울시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인가 |  |
|  | 다. 상위 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 항을 새로이 자치법규로 입법하고자 할 경우 그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  |
|  | 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 나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벌칙규정을 두 고 있지는 않은가 |  |
|  | 3. 통일성 및 조화성 |  |
|  | 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가 |  |
|  | 나.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  |


| 구 |  | 심 사 항 목 | 평 가 |
| :---: | :---: | :---: | :---: |
|  |  | 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내용이 다른 자치법 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  |
|  |  | 라. 자치법규의 내용이 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 정방향과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  |
|  |  | 마. 자치법규의 내용이 과거의 자치법규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  |
|  |  | 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 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  |
|  |  | 사. 고시 등으로 정할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  |
|  |  | 아. 여러건의 자치법규로 입법할 사항을 하나의 자치 법규로 정하는 무리한 입법은 아닌가 |  |
|  |  | 자. 자치법규안에 합리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때 관 련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필요성은 없는가 |  |
|  |  | 4. 입법체계의 정밀성 |  |
|  |  | 가. 자치법규의 명칭은 자치법규 내용을 충분히 포괄 하되 간략하고 기억하기 쉽게 되었는가 |  |
|  |  | 나. 목적규정의 표현이 입법취지와 본문의 규정범위 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  |
|  |  | 다. 조문이 장/절/조/항/호로 배열되고 반복적으로 규 정되고 있지는 않은가 |  |
|  |  | 라. 원칙과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양자의 균형이 이 루어지도록 유의하였는가 |  |
|  |  | 마. 효력발생시점을 정할 때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준비기간을 두고 있는가 |  |
|  |  | 바. 지역적 • 시간적으로 적용의 제한을 두는 경우 필 요한 경과규정은 적절하게 두고 있는가 |  |


| 구 |  | 심 사 항 목 | 평 가 |
| :---: | :---: | :---: | :---: |
|  |  | 사. 종전의 법규를 완전히 정리하였는가, 실효되는 법 규를 준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 였는가 |  |
|  |  | 아. 경과 규정을 두는 경우 법령이나 본문 규정과의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
|  |  | 자. 자치법규 내부의 체계유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상세히 규율하고 있지는 않은가 |  |
|  |  | 차. 자치법규 이외에 예규 등 내부규칙을 자치법규로 상향조정하여 규정하는 방법은 검토되었는가 |  |
|  |  | 카. 해당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칙 또는 자 치구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가.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위임 하는 것은 아닌가 |  |
|  |  | 타. 규칙으로 위임할 경우 집행부의 재량범위가 주민 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가 |  |
|  |  | 파. 위임과 재위임의 경우 그러한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적정한 것인가 |  |
|  |  | 하. 관련법규를 준용토록 하는 경우에 준용한 법규의 내용 및 형식, 체계가 당해 법규와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준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  |
|  |  | 거. 준용을 엄격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는 가, 편의상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
|  |  | 너. 준용되는 규정이 지금의 법규내용에 비해 지나치 게 복잡하거나 다른 문제점이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준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  |
|  |  | 더. 위원회의 설치는 법적근거에 의하는 것인가 |  |
|  |  | 러. 과태료 등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 우 법적근거는 명확한가 |  |
|  |  | 5.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  |
|  |  |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되었는가 |  |


| 구 |  | 심 사 항 목 | 평 가 |
| :---: | :---: | :---: | :---: |
|  |  | 나.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 우 그 의미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  |
|  |  | 다. 용어의 정의•내용이 상위 법령 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는가 |  |
|  |  | 라. 용어의 정의•내용이 법원의 판결과 학문이론상 의 정의와 일치 또는 근접하고 있는가 |  |
|  |  | 6. 경제성 |  |
|  |  | 가.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그 필요성 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
|  |  | 나. 새로운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의 확보등 재 원의 조달이 가능한가 |  |
|  |  | 다.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그 필요성 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
|  |  | 라. 새로운 입법으로 절약되거나 추가되는 예산의 규 모와 효과는 검토되었는가 |  |
|  |  | 7. 시민과의 친숙도 |  |
|  |  | 가. 새로운 규율은 시민의 부담(시간, 경비)을 종전에 비해 감소시키는 것인가 |  |
|  |  | 나. 중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 을 정도로 쉬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
|  |  | 다.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규정이 있는가 |  |
|  |  | 라.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은 없는가 |  |
|  |  | 마. 시민에게 승인,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조건을 지 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 그렿다면 그 사유 는 타당한가 |  |
|  |  | 바. 행정행위로 손실이 발생할 때 그에 대한 보상규 정은 있는가 |  |


| 구 분 | 심 사 항 목 | 평 가 |
| :---: | :---: | :---: |
|  | 사.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 히 수렴 - 반영하였는가 |  |
|  | 아. 전문가 등 여론의 수렴을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 고 그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가 |  |
|  | 8. 실효성 |  |
|  | 가. 규제하려는 내용은 시민의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 는 수준인가 |  |
|  | 나. 행정권한의 주체와 사무진행의 흐름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
|  | 다. 행정집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예산은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인가 |  |
|  | 라.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위법규 등은 시행일 이전에 정비될 수 있는가 |  |
| III 자치법규 <br> 입법절차의 <br> 정당성 확보 | 1. 자치법규안의 내부심의 |  |
|  | 가. 입안부서와 심사부서간의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는가 |  |
|  | 나. 내부적으로 입법심의기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 고 그 심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다. 심의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 기 록을 첨부하였는가 |  |
|  | 라. 입법관련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받고 있는가, 사 전검토 의뢰시 충분한 기간, 자료, 의뢰자의 의견 을 제공하고 있는가 |  |
|  | 2. 관계기관간의 협의 |  |
|  | 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 하다면 그 협의를 거쳤는가 |  |
|  | 나. 서울시 내부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 요하다면 그 협의는 거쳤는가 |  |


| 구 |  | 심 사 항 목 | 평 가 |
| :---: | :---: | :---: | :---: |
|  |  |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를 거쳤는가 |  |
|  |  | 라. 기타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없는가 |  |
|  |  | 3. 관련위원회의 심의 |  |
|  |  | 가. 입법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심의절차는 완료되었는가 |  |
|  |  | 나.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 또는 자문인가를 위원들에 게 고지하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그리고 심의 자료를 첨부하고 있는가 |  |
|  |  | 다. 위원회의 심의가 형식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아닌가 |  |
|  |  | 라.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저촉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  |
|  |  | 4. 공청회 |  |
|  |  | 가. 입법을 전제로 할 경우 입법안을 완성한 후 개최 한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정책사항만을 제시하 고 개최하였는가 |  |
|  |  | 나. 공청회의 주제발표자, 토론자 선정은 공정하게 되 었는가 |  |
|  |  | 다. 공청회의 개최예고는 충분한 기간, 시민이 접하기 쉬운 매체로 하였는가 |  |
|  |  | 라. 공청회 결과는 공정하게 정리되어 반영하고 있는가 |  |
|  |  | 5. 입법예고 |  |
|  |  | 가.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는가, 아니면 생략 하였는가, 생략한 경우 그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 |  |
|  |  | 나.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였는가 아니면 정책사항 등 일부만을 예고하였는가 |  |


| 구 분 | 심 사 항 목 | 평 가 |
| :---: | :---: | :---: |
|  | 다.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계층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가 |  |
|  | 라. 접수된 의견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는 가, 아니면 유리하거나 찬성한 의견만을 반영하 는 것은 아닌가 |  |
|  | 6. 재의 요구 |  |
|  | 가. 의회의결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 조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재의요구하고 있는가 |  |
|  | 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재의요구에 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는가 |  |
|  | 다.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한 경 우에도 여론과 시민의 압력에 의하여 재의요구가 결정되는 경우는 없는가 |  |
|  | 라. 재의요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충 분히 받고 있는가 |  |
| IV 사후관리 | 1. 사후관리 기준 |  |
|  | 가. 시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이루어 졌는가 |  |
|  | 나. 인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따른 조 치는 이루어졌는가 |  |
|  | 다. 주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반대 또는 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이 파악되고 있는가 |  |
|  | 라. 언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평가는 분석되었는가 |  |
|  | 마.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었는가 |  |
|  | 바. 시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였는가 |  |


| 구 분 심 사 항 목 | 평 가 |  |  |
| :---: | :---: | :---: | :---: |
|  | 사. 평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가 |  |  |
|  | 아.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 <br> 는가 | 자.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br> 있는가 |  |

3. 분 석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는 세부항목을 111 개로 구성하 여 세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그 항목이 너 무 방대하고 평가척도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자의적인 평가에 그치 게 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례입법평가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필요한 항목을 비교분석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너무 방대해서 평가가 불가능하게 되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П.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의 평가기준

1. 평가기준 마련의 배경

법령은 전국을 대상으로 제정하되 평균적인 성과와 영향을 기준을 정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특수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에 비해 조례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자치단체내의 지역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령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은 제 거할 수 있다. 나아가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나 효율성, 민주성 등 입법평가의 여러 항목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된다. 법령과

조례의 입법평가 필요성을 고려하면 제주도조례의 입법평가의 필요성 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체계는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게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별법의 범위안에서의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이라는 또 하나의 법률과 시행령이 상위법령으로 존재한다. 이와 같이 특별한 입법체계와 지방행정의 목표를 시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는 내용 과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는지, 앞으로 제정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다.67)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가지는 특수성을 골 려하여 조례 입법평가의 도입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것이다.

##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제도도입방안 연구에서 제시 한 평가항목은 13 가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평가할 항목68)>

| 번 호 | 항목명칭 | 내 용 |
| :---: | :---: | :--- |
| 1 | 필요성 | 정책과 정책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br> 법령의 위임, 규범화의 필요, 주민의 청구, <br> 종전 조례의 평가결과 조례제정 • 개정할 필요가 있는 가. |
| 2 | 정당성 | 사익과 공익이 조화되고 헌법의 사회적 경제적 민주적 <br> 이념에 합치하는 내용인가. |
| 3 | 적법성 | 상위 법령, 판례 등에 저촉 • 위배 • 상충되지 않는가. |
| 4 | 조화성 | 다른 조례와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고 중복되거나 상충 <br> 되지 않는가. |
| 5 | 명료성 <br> (평이성) | 공직자와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가 |

67) 한상우 외 3 인 공저, 앞의 책, 82 면.
68) 한상우 외 3 인 공저, 앞의 책, 99 면 표4-2.

| 번 호 | 항목명칭 | 내 용 |
| :---: | :---: | :--- |
| 6 | 효율성 <br> (경제성) | 조례를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경제적인가. |
| 7 | 공평성 | 조례의 집행결과가 주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는가 |
| 8 | 참여 | 조례집행에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가 |
| 9 | 절차의 <br> 정당성 | 조례제정 절차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가 |
| 10 | 부패방지성 | 조례집행과정에 공직자의 부패방지가 가능한가 |
| 11 | 지방분권성 |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이념을 살리는 분권형인가 |
| 12 | 환경보전성 | 제주도의 천연자연을 유지 • 보존이 가능한 내용인가 |
| 13 | 사후관리 | 제정 후 일정시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가 |

3. 분 석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제도도입방안 연구에서 제시 하고 있는 평가항목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일반적인 지방의회에서 적용하기에는 다 소 그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가능한 평가항목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지표 개발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 제 2 절 조례 입범평가를 위한 지표와 <br> 표준조례안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을 위하여 먼저, 평가대상 축소 및 평가주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집행부 발의 조례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의 판단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평가대상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사전적•사후적 평가로 이원화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평가대상을 축소하고, 평가수행은 외부에 맡기

고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담당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집행부 발의 조례를 포함할 것인가 에 관해서는 의회의 집행부 통제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유지라는 측 면에서는 물론이고 좋은 법령(조례)을 만들고자 하는 입법평가의 목적 과 연계할 때에도 집행부 발의 조례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입법평가의 지표와 표준조례안을 제시한다. 조례 입법평가의 지표는 표준조례안에 있어서 별도로 제시될 사전• 사후평가의 지표로 활용된다.

## I. 조례 입법평가 지표

지방의회에서 적용 가능한 조례의 입법평가 지표는 위임사무에 대 한 것과 고유사무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위임사무에 관한 것 은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며, 위임의 범위 안에서 조례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간단한 체크를 통해서 바로 평 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시 사점을 분석하여 본다면 최소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서 체크해야 하는 항목은 (1) 필요성, (2) 유효성, (3) 효율성, (4) 공평성, (5) 협동성 (참가성), (6) 적법성이다. 이 여섯가지 항목은 조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조례 입법평가 지표는 다음 표와 같이 사전 입법평가의 지표와 사후 입법평가의 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
<사전 입법평가 지표>

| 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척도 |
| :---: | :---: | :---: |
| 필요성 | - 자치법규의 제정이 위임근거 <br> 가 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 <br> 에 따른 것인가 | (1) 예 <br> (2) 아니오 |


| 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척도 |
| :---: | :---: | :---: |
|  | -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 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조례로 규정할 사항인가 | (1) 예 <br> (2) 아니오 |
| 유효성 | - 입안내용이 헌법 및 상위법령 에 부합하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새로운 자치법규 제정의 경 우 이미 시행중인 조례 또 는 규칙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조례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정 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효율성 | - 조례의 집행비용이 과다하게 수반되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비용추 계가 수행되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공평성 | - 자치법규의 내용이 위반행위 의 경중에 따라 다른 자치법 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 형을 이루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협동성 | -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 여할 수 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 수 렴을 하였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적 법성 | -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명 확하고 위임근거 하에 제정 되고 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척도 |
| :---: | :---: | :---: |
|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자 <br> 치법규에 새로운 규제를 추 <br> 가하였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 <br> 거 없이 벌칙규정을 두고 있 <br> 는가 | (1) 예 |
|  |  |  |

사전 입법평가의 경우에는 조례의 시행이후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 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항목을 체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러한 항목을 제외하고 구성하였다.
<사후 입법평가 지표>

| 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척도 |
| :---: | :---: | :---: |
| 필요성 | - 자치법규의 개정이 위임근거 <br> 가 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 <br> 에 따른 것인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 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조례의 목적이 현시점에서도 적절한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조례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현시점에서도 존재하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조례의 제정이후 같은 법률 이나 제도가 만들어지지는 않 았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유효성 |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 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제 4 장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 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척도 |
| :---: | :---: | :---: |
|  | -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의 요구는 없었는가 | (1) 예 (2) 아니오 |
|  | -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 여하였는가 | (1) 예 (2) 아니오 |
|  | -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 수 렴을 하였는가 | (1) 예 (2) 아니오 |
|  |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적법성 | -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명확 하고 위임근거 하에 제정되 고 있는가 | (1) 예 (2) 아니오 |
|  |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자 치법규에 새로운 규제를 추 가하였는가 | (1) 예 (2) 아니오 |
|  | -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 거 없이 벌칙규정을 두고 있 는가 | (1) 예 (2) 아니오 |
|  | - 주민•사업자의 권리•이익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아 니한가 | (1) 예 (2) 아니오 |
|  | - 행정소송이나 불복심사가 제 기되어 있지 아니한가 | (1) 예 <br> (2) 아니오 |

위임사무에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의 경우에는 필요성 항목에 대 한 체크만으로도 조례 입법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척 도는 "(1) 예"와 "(2) 아니오"의 2단계 척도로 구성하여도 입법평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항목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효성에 관한 항목을 체크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 조사 결

과 등은 물론이고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 등을 첨부할 수 있을 것이며, 효율성에 관해서는 예산•결산서 및 사회 통계 등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의 첨부는 지표를 담은 서식을 통해서도 구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입법평가의 결과 를 객관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지방의회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도입가능한 조례 입법평가 관련 표준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 다. 먼저 조례 입법평가의 목적, 대상 조례, 평가 주체, 기준, 입법평 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는 목적은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 원하며,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조례 입법평가에 있어서 "입법평가"는 제시된 지표에 따라 자치법 규의 실효성과 적합성을 사전•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례 입법평가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사전 입법평가의 경우에는 제정되는 조례 및 전부개정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 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사후 입 법평가는 시행 후 3 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 - 업무분장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대상 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여 원활한 입법평가가 가능하 도록 규정하였다.

조례에 대한 사전 입법평가와 사후 입법평가는 별도로 제시된 기준 에 따라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사전 입법평가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별표의 기준에 따 라 실시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 후입법평가는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조례 제정에 관한 전문가를 중 심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세부적인 표준조례안의 내용은 아래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
000 조례 제 호
```


## 000 도(시) 입법평가 기본 조례안

제 o 조(목적) 이 조례는 000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시행효과 및 목적달성 등을 평가함으로 써 조례의 실요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o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제o조의 지표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평가하여 실효성•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 한다.

제 o 조(적용범위 등) (1) 000 의회에서 발의, 제출 또는 전부개정되는 조례의 경우에는 사전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2) 이 조례에 의한 사후 입법평가는 000 의회에서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 중 시행 후 3 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3) 제 1 항과 제 2 항의 사전•사후 입법평가 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 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 서 제외한다.

제o조(입법평가의 원칙)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는 자치법규의 목적 실현에 가 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o 조(입법평가의 기준) (1) 사전 입법평가는 별표 1 을 기준으로 한다.
(2) 사후 입법평가는 별표2를 기준으로 한다.

제 o 조(입 법평가위원회) (1) 제 o 조의 사후입법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 여 000 의회 소속으로 입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한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자격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o조(사전 입법평가) (1)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해 당 조례에 대한 사전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입법평가의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의 조례심의 전에 공표할 수 있다.

제 o 조(사후 입법평가) (1) 사후 입법평가는 위원회에서 별표2를 기준으로 실 시한다.
(2)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 및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위원회는 사후 입법평가를 위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위원회는 입법평가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입법영향분석 용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000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5) 제 4 항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입법 목적 달성도, 비용과 편익 비료, 상 위법령 관련 적합성 등 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o조(입법평가기준 수정의 심의) 별표에서 정한 입법평가지표의 일부를 변 경하거나 새로운 입법평가지표를 추가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o 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1) 제o조제 1 항의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사전 입법평가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제 o 조제 1 항의 위원회는 사후 입법평가 후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 는 제출한 집행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소관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는 사전•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000 의회 홈 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 및 위 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o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o 조(시행일) 이 조례는 0000 년 oO 월 oO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전입법평가의 지표

| 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척도 |
| :---: | :---: | :---: |
| 필요성 | - 자치법규의 제정이 위임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것인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 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조례로 규정할 사항인가 | (1) 예 <br> (2) 아니오 |
| 유효성 | - 입안내용이 헌법 및 상위법령 에 부합하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새로운 자치법규 제정의 경우 이미 시행중인 조례 또는 규 칙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척도 |
| :---: | :---: | :---: |
|  | - 조례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 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정확 히 표현되고 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효율성 | - 조례의 집행비용이 과다하게 수 반되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비용추 계가 수행되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공평성 | - 자치법규의 내용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협동성 | -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 할 수 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을 하였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 토하였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적법성 | -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명확 하고 위임근거 하에 제정되고 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자 치법규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 하였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제 4 장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 <별표 2>

| 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척도 |
| :---: | :---: | :---: |
| 필요성 | - 자치법규의 개정이 위임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 른 것인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 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조례의 목적이 현시점에서도 적절한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조례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현시점에서도 존재하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조례의 제정이후 같은 법률이 나 제도가 만들어지지는 않았 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유효성 |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 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 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 았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새로운 자치법규 제정의 경우 이미 시행중인 조례 또는 규 칙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조례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 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정 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효율성 | - 조례의 집행비용과 그로 인하 여 얻은 편익은 효과를 달성 하고 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 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재정부담이 제정 초기에 비하 여 (과다하게) 증가하였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척도 |
| :---: | :---: | :---: |
| 공평성 | - 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 녀(성별영향)/장애인(장애인차 별금지) 등을 차별하는 효과 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하고 있 지는 아니한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자치법규의 내용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대상자•관계자로부터 불만이 나 소송제기는 없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협동성 | -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 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 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의 요구는 없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 하였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 수 렴을 하였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적법성 | -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명확 하고 위임근거 하에 제정되고 있는가 | (1) 예 (2) 아니오 |
|  |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자 치법규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 하였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가 | (1) 예 <br> (2) 아니오 |


| 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척도 |
| :--- | :--- | :--- |
| - 주민•사업자의 권리 • 이익을 <br>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아니 <br> 한가 | (1) 예 <br> (2) 아니오 |  |
|  | - 행정소송이나 불복심사가 제 <br> 기되어 있지 아니한가 | (1) 예 <br> (2) 아니오 |

## 제 3 절 향후 과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여 필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에 수반하는 예산 및 인력에 관련된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아가서는 조례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의회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입법담당 공무원 및 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조례 입법평 가에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조례 입법평가 제도 도입에 전제가 되는 다양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조례 입법평가 제도가 성공적으 로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방 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 입법평가의 결과를 축적하고 그에 따 라서 관련 지표 및 표준조례안에 대한 수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조례 입법평가 관련 지표의 항목 및 그러한 항목의 객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제시에 관한 표준화에 관해서도 추가 적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김기표,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2011)

김병록, 조례제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지공법연구 제43집, 한 국토지공법학회(2009)

김수용 외8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 제531호(2002.3)
박영도, "입법관리로서의 입법평가의 제도화", 한국입법학회 학술대 회자료(2006)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2007)
서보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 향, 유럽헌법연구 제12호, 유럽헌법학회(2012)

신상환, "독일의 입법과정상 입법평가적용의 구체적 사례분석 및 조 망을 통하여 본 한국입법평가의 발전과제", 법제 제540호(2002.12)

임종훈/박수철, 입 법과정론, 박영사(2006)
차현숙, "의원입법의 입법평가와 평가방법론에 관한 소고", 입법평 가연구 제3호, 한국법제연구원(2010)

최윤철, "의원입법의 평가와 평가제도의 발전에 관한 이론적 검토",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2005)

최윤철，＂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입법평가의 과제와 전망＂，한국법제연구원 2007년 국제학술회의 자료집（2007）

최윤철／홍완식，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법제처 정책 보고서（2005）

최환용，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가능성，사단법인 한국지방 자치법학회，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22호 제9권2호（2009．6）

한상우 외 3 인，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제도 도입 방 안，제주발전연구원（2012）

홍완식，＂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독일 연방헌법재판 소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공법연구 31 집，한국공법학회（2002）

## 일본문헌

天野巡一，石川久，加藤良重編著『自治体政策と訴訟法務：判例解説』 （学陽書房，2007年）

礒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講義』（第一法規株式会社，2012年）
礒崎初仁編著 『政策法務の新展開 ：ローカル・ルールが見えてきた』 （ぎょうせい，2004年）

出石稔，「自治立法の整備活用方針」（ガバナンス62号，2006年）
大島稔彦監修『法制執務の基礎知識：法令理解，条例の制定•改正の基礎能力の向上 第3次改訂版』（第一法規，2011年）

木佐茂男編著『自治立法の理論と手法』（ぎようせい，1998年）
北村 喜宣•山口 道昭•出石 稔•礒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地域特性に適合した法環境の創造』（有斐閣，2011年）

衣笠章「評価法務の課題」（ジュリスト No．1391，2009年）
鈴木 庸夫『自治体法務改革の理論』，（勁草書房，2007年）
政策法務研究会，『政策法務の理論と実践』（第1法規，2003年）
自治体法務検定委員会編『自治体法務検定公式テキスト 政策法務編 平成23年度検定対応』（第1法規，2010年）

田中孝男 「分権時代の法制評価を考える」（地方自治の職員研修434号， 1999年）

田中孝男，木佐茂男『テキストブック自治体法務』（ぎようせい，2004年）
田村泰俊，千葉実，吉田勉編著『自治体政策法務』（八千代出版，2009年）
松本英昭著『地方自治法の概要 第4次改訂版』（学陽書房，2012年）

## 인터넷 자료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
네이버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 召尼•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  |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如星吕交 |  |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  |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l y \\ & t \exists \\ & t< \\ & h \end{aligned}$ | $\begin{aligned} & l y \\ & \text { ta } \\ & \text { ly } \\ & \text { ㅍ } \\ & \text { l은 } \end{aligned}$ | $\begin{aligned} & l y \\ & \ddagger \\ & \text { ¢ } \\ & \text { 区 } \\ & t \end{aligned}$ | $\begin{aligned} & l y \\ & t a \\ & t \exists \\ & 10 \\ & t y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鹪 } \\ & L E \\ & \text { ty } \\ & \text { to } \\ & \text { t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品 } \\ & \text { ta } \\ & \text { ly } \\ & \text { 豆 } \\ & \text { 옹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肖 } \\ & \text { 亚 } \\ & \text { 悪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品 } \\ & \text { ta } \\ & \text { ly } \\ & \text { 世 } \\ & \text { t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fog } \\ & \text { to } \\ & \text { t } \\ & \text { ly } \\ & 10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옹 } \\ & \text { I } \\ & k \\ & t<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프 } \\ & \text { 늘 } \\ & \text { 놉 } \end{aligned}$ |  |  | $\begin{aligned} & \frac{1}{A} \\ & t \in \\ & t y \\ & \frac{1}{\circ} \end{aligned}$ |  |  | $\begin{aligned} & \text { bos } \\ & \text { ta } \\ & \text { ly } \\ & \frac{1}{E} \\ & \frac{1}{s} \end{aligned}$ |  | 눔－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도부현 의회］ ［정령시 의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 목 | 미 에 현 | $\begin{aligned} & \text { 후 } \\ & \text { 쿠 } \\ & \text { 시 } \\ & \text { 마 } \\ & \text { 현 } \end{aligned}$ | 카 <br> 나 <br> 가 <br> 와 <br> 현 | 이 <br> 와 <br> 테 <br> 현 | $\begin{aligned} & \text { 오 } \\ & \text { 사 } \\ & \text { 카 } \\ & \text { 부 } \end{aligned}$ | 오 <br> 타 <br> 현 | $\begin{aligned} & \text { 미 } \\ & \text { 야 } \\ & \text { 기 } \\ & \text { 현 } \end{aligned}$ | 북 <br> 해 <br> 도 | $\begin{aligned} & \text { 나 } \\ & \text { 가 } \\ & \text { 노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고 } \\ & \text { 치 } \end{aligned}$ 현 | 이 <br> 시 <br> 카 <br> 와 <br> 현 | $\begin{aligned} & \text { 가 } \\ & \text { 고 } \\ & \text { 시 } \\ & \text { 마 } \\ & \text { 현 } \end{aligned}$ | 나 <br> 라 <br> 현 | $\begin{aligned} & \text { 교 } \\ & \text { 토 } \\ & \text { 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히 } \\ & \text { 로 } \\ & \text { 시 } \\ & \text { 마 } \\ & \text { 현 } \end{aligned}$ | 에 <br> 히 <br> 메 <br> 현 | $\begin{aligned} & \text { 가 } \\ & \text { 와 } \\ & \text { 사 } \\ & \text { 키 } \\ & \text { 현 } \end{aligned}$ | 사 <br> 이 <br> 타 <br> 마 <br> 시 | $\begin{aligned} & \text { 나 } \\ & \text { 고 } \\ & \text { 야 } \\ & \text { 시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히 } \\ & \text { 로 } \\ & \text { 시 } \end{aligned}$ 마 시 | 니 가 타 시 |
| 2．총칙 | 《조례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활력있는 마을만들기－발전 등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  | 주민복지의 향상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  | 주민의사의 적확한 반영 등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이념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  | 기본방침（사명）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  | 용어정의（시민과시，회파 등）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3．의회． 의원의 활동원칙 | 《의회의 활동원칙，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공평성，투명성，신뢰성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열린의회로서의 활동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  | 주민에 대한 설명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0 | $\bigcirc$ | $\bigcirc$ |
|  | 주민참가의 추진 | $\bigcirc$ | $\times$ | $\bigcirc$ | O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O | $\bigcirc$ | $\bigcirc$ |

부록 1 일본 도도부현 의회기본조례규정항목등 비교표

| ［도도부현 의회］ ［정령시 의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 목 | 미 에 현 | $\begin{aligned} & \text { 후 } \\ & \text { 쿠 } \\ & \text { 시 } \\ & \text { 마 } \\ & \text { 현 } \end{aligned}$ | 카 <br> 나 <br> 가 <br> 와 <br> 현 | 이 <br> 와 <br> 테 <br> 현 | $\begin{aligned} & \text { 오 } \\ & \text { 사 } \\ & \text { 카 } \\ & \text { 부 } \end{aligned}$ | 오 <br> 타 <br> 현 | 미 <br> 야 <br> 기 <br> 현 | 북 <br> 해 <br> 도 | $\begin{aligned} & \text { 나 } \\ & \text { 가 } \\ & \text { 노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고 } \\ & \text { 치 } \\ & \text { 현 } \end{aligned}$ | 이 <br> 시 <br> 카 <br> 와 <br> 현 | $\begin{aligned} & \text { 가 } \\ & \text { 고 } \\ & \text { 시 } \\ & \text { 마 } \\ & \text { 현 } \end{aligned}$ | 나 <br> 라 <br> 현 | $\begin{aligned} & \text { 교 } \\ & \text { 토 } \\ & \text { 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히 } \\ & \text { 로 } \\ & \text { 시 } \\ & \text { 마 } \\ & \text { 현 } \end{aligned}$ | 에 <br> 히 <br> 메 <br> 현 | $\begin{aligned} & \text { 가 } \\ & \text { 와 } \\ & \text { 사 } \\ & \text { 키 } \\ & \text { 현 } \end{aligned}$ | 사 <br> 이 <br> 타 <br> 마 <br> 시 | $\begin{aligned} & \text { 나 } \\ & \text { 고 } \\ & \text { 야 } \\ & \text { 시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히 } \\ & \text { 로 } \\ & \text { 시 } \\ & \text { 마 } \\ & \text { 시 } \end{aligned}$ | 니 가 타 시 |
|  | 위원회의 강좌의 개최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 위원장 보고의 자기작성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 《정보공개，정보제공，설명책임》 |  |  |  |  |  |  |  |  |  |  |  |  |  |  |  |  |  |  |  |  |  |
|  | 본회의 및 위원회의 공개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O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의회활동에 관한 자료의 공개（회의록 등）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의회활동에 관한 보고회의 개최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 4．주민과 | 홍보기능의 충실도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O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 의회와의 | 중요의안등에 대한 각의원의 태도 공표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  | 《주민 참가》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의 참가에 의한 의견교환회의 개최 （일반회의 등）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0 |
|  | 참고인，공청회제도의 활용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  | 청원，진정자로부터의 의견청취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부록 1 일본 도도부현 의회기본조례규정항목등 비교표

| ［도도부현 의회］［정령시 의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 목 | 미 | $\begin{aligned} & \text { 후 } \\ & \text { 쿠 } \\ & \text { 시 } \\ & \text { 마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카 } \\ & \text { 나 } \\ & \text { 가 } \\ & \text { 와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이 } \\ & \text { 와 } \\ & \text { 테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오 } \\ & \text { 사 } \\ & \text { 카 } \\ & \text { 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오 } \\ & \text { 이 } \\ & \text { 타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미 } \\ & \text { 야 } \\ & \text { 기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북 } \\ & \text { 해 } \\ & \text { 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나 } \\ & \text { 가 } \\ & \text { 노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고 } \\ & \text { 치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이 } \\ & \text { 시 } \\ & \text { 카 } \\ & \text { 와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가 } \\ & \text { 고 } \\ & \text { 시 } \\ & \text { 마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나 } \\ & \text { 라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교 } \\ & \text { 토 } \\ & \text { 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히 } \\ & \text { 로 } \\ & \text { 시 } \\ & \text { 마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에 } \\ & \text { 히 } \\ & \text { 메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가 } \\ & \text { 와 } \\ & \text { 사 } \\ & \text { 키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사 } \\ & \text { 이 } \\ & \text { 타 } \\ & \text { 마 } \\ & \text { 시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나 } \\ & \text { 고 } \\ & \text { 야 } \\ & \text { 시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히 } \\ & \text { 로 } \\ & \text { 시 } \\ & \text { 마 } \\ & \text { 시 } \end{aligned}$ | 니 간 타 시 |
| 5．의회와 집행기관과 의 관계 | 《본회의의 형식 등》 |  |  |  |  |  |  |  |  |  |  |  |  |  |  |  |  |  |  |  |  |  |
|  | 문답방식의 실시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  | 기타 직원의 반문권의 부여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의회와 단체장과의 관계（명문화）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정책 등의 형성과정의 설명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 중요정책결정에 관한 의회의 의견청취• 설명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  | 시장 등에 대한 문서를 이용한 질문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 예산•결산에 관한 심의－자료의 작성（설명）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  | 정책집행에 관한 감시 및 형가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  | 의결 대상건의 확대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 [도도부현 의회] [정령시 의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 목 | 미 <br> 에 <br> 현 | 후 쿠 시 마 현 | 카 <br> 나 <br> 가 <br> 와 <br> 현 | 이 <br> 와 <br> 테 <br> 현 | $\begin{aligned} & \text { 오 } \\ & \text { 사 } \\ & \text { 카 } \\ & \text { 부 } \end{aligned}$ | 오 <br> 타 <br> 현 | $\begin{aligned} & \text { 미 } \\ & \text { 야 } \\ & \text { 기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북 } \\ & \text { 해 } \\ & \text { 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나 } \\ & \text { 가 } \\ & \text { 노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고 } \\ & \text { 치 } \\ & \text { 현 } \end{aligned}$ | 이 <br> 시 <br> 카 <br> 와 <br> 현 | $\begin{aligned} & \text { 가 } \\ & \text { 고 } \\ & \text { 시 } \\ & \text { 마 } \\ & \text { 현 } \end{aligned}$ | 나 <br> 라 <br> 현 | $\begin{aligned} & \text { 교 } \\ & \text { 토 } \\ & \text { 부 } \end{aligned}$ | 히 <br> 로 <br> 시 <br> 마 <br> 현 | 에 <br> 히 <br> 메 <br> 현 | $\begin{aligned} & \text { 가 } \\ & \text { 와 } \\ & \text { 사 } \\ & \text { 키 } \\ & \text { 현 } \end{aligned}$ | 사 <br> 이 <br> 타 <br> 마 <br> 시 | $\begin{aligned} & \text { 나 } \\ & \text { 고 } \\ & \text { 야 } \\ & \text { 시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히 } \\ & \text { 로 } \\ & \text { 시 } \\ & \text { 마 } \\ & \text { 시 } \end{aligned}$ | 니 가 타 시 |
|  | 부속기관의 설치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O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6. 의회의 | 전문가(학계전문가등)의 활용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  | 검토회 등의 설치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 의원상호간의 자유토의중심의 운영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 의원간의 토의에 의한 합의 형성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 7. 토의의 <br> 보장 확대 | 지자체 단체장의 본회의 등에의 필요최소 한의 출석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 적극적인 의원제안(정책제언)의 노력의무 <br> - 기능강화 | $\bigcirc$ | $\bigcirc$ | $\times$ | O | $\bigcirc$ | $\bigcirc$ | $\bigcirc$ | O | $\bigcirc$ | $\bigcirc$ | O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정책토론회의 개최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8. 의회개혁 | 추진 (의회개혁회의의 설치 등)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  | 의회홍보의 충실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  | 위원회 등의 적절한 운영(활동)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사무국 <br> 체제 | 의원연수의 충실, 강화 (연수회, 연구회의 개최 등) | $\bigcirc$ | $\times$ | $\times$ | O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 의회도서관의 웅녕 및 기능강화 • 주민이용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  | 사무국의 기능강화(조사, 법제기능 등)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0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부록 1 일본 도도부현 의회기본조례규정항목등 비교표

| [도도부현 의회] [정령시 의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 | 목 | 미 에 현 | $\begin{aligned} & \text { 후 } \\ & \text { 쿠 } \\ & \text { 시 } \\ & \text { 마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카 } \\ & \text { 나 } \\ & \text { 가 } \\ & \text { 와 } \\ & \text { 현 } \end{aligned}$ | 이 <br> 와 <br> 테 <br> 현 | $\begin{aligned} & \text { 오 } \\ & \text { 사 } \\ & \text { 카 } \\ & \text { 부 } \end{aligned}$ | 오 <br> 타 <br> 현 | $\begin{aligned} & \text { 미 } \\ & \text { 야 } \\ & \text { 기 } \\ & \text { 현 } \end{aligned}$ | 북 <br> 해 <br> 도 | $\begin{aligned} & \text { 나 } \\ & \text { 가 } \\ & \text { 노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고 } \\ & \text { 치 } \end{aligned}$ 현 | 이 <br> 시 <br> 카 <br> 와 <br> 현 | $\begin{aligned} & \text { 가 } \\ & \text { 고 } \\ & \text { 시 } \\ & \text { 마 } \\ & \text { 현 } \end{aligned}$ | 나 <br> 라 <br> 현 | $\begin{aligned} & \text { 교 } \\ & \text { 토 } \\ & \text { 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히 } \\ & \text { 로 } \\ & \text { 시 } \\ & \text { 마 } \\ & \text { 현 } \end{aligned}$ | 에 <br> 히 <br> 메 <br> 현 | $\begin{aligned} & \text { 가 } \\ & \text { 와 } \\ & \text { 사 } \\ & \text { 키 } \\ & \text { 현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사 } \\ \text { 이 } \\ \text { 타 } \\ \text { 마 } \\ \text { 시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나 } \\ & \text { 고 } \\ & \text { 야 } \\ & \text { 시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히 } \\ & \text { 로 } \\ & \text { 시 } \\ & \text { 마 } \\ & \text { 시 } \end{aligned}$ | 니 가 타 시 |
| 10. 의원의 <br> 정치 윤리 <br> 신분 등 | 의원의 정치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  | 징 벌 |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 의 원보수 |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  | 의 원정수 |  | $\times$ | $\times$ | O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  | 정례회의 횟 | - 회기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 11. 정무조사비(별도 조례에서 규정 |  |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 12. 조례의 최고규범성 |  |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13. 의회의 기본적 사항으로서의 위치 |  |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 14. 의회 및 의원의 책무 (의회의 조례 등을 준수한 의 회운영) |  |  | $\times$ | O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 15. 조례의 재검토 규정 |  |  | $\bigcirc$ | $\bigcirc$ |  | O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0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 부록 2

##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2013년 3월 28일 현재．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 | 가나가와현 직원등 불상사 방지 대책 조례 | 2007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43 호 | 총무국 <br> 총무부 <br> 행정사무 <br> 감찰과 | 직원 등의 윤리 유지 및 공정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고，현의 정책에 대한 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직원 부패 방지 대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8년 | 없음 |
| 2 | 가나가와현 직원 정수 조례 | 1949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46호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자치법 제 172 조 제3항에 의해 지사 직속기관 등의 직원 정수를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3 | 가나가와현 부지사 정수 조례 | $\begin{gathered} 1962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59 \text { 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자치법 제 161 조 제 2 항에 의해 가나가와 현의 부지사 정수를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4 | 재임용에 관한 조례 | 2001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9호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공무원법 제 28 조의 <br> 4 제1항，제 2 항 및 제 3 항에 의해 재임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5 | 공익법인 <br> 등에의 <br> 파견등에 관한 조례 | $\begin{aligned} & \text { 2001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61 \text { 호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총무국 } \\ & \text { 인재과 } \end{aligned}$ | 공익법인 등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법인 등에 직원의 파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 6 | 임시직원 채용에 관한 조례 | 2003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4호 | $\begin{aligned} & \text { 총무국 } \\ & \text { 인재과 } \end{aligned}$ | 지방공공단체의 일반직 <br> 기간제 직원채용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등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임기를 정한 채용 및 임기를 정하여 채용된 직원급여의 특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7 | 임시직 연구원 채용등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2002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5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공공단체의 일반직 기간제연구원의 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 호, 제 3 조 제 1 항 및 제5조 제1항 및 지방 <br> 공무원 법 제 24 조 <br>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의 시험연구기관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기를 정한 채용 및 임기를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급여의 특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 8 | 지사 및 <br> 부지사의 <br> 급여등에 관한 조례 | 1953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8호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자치법 제204조 제3항에 따라 지사와 부지사의 급여, 기타 급여 및 여비 및 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9 | 지사등의 급여의 특례에 관한 조례 | 2005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12 호 | 총무국 <br> 인재과 | 별정직의 급여 등에 <br> 대해서는 별도로 <br>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현 재정 및 현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적 자세를 보이기 위해 별정직의 급여 등에 대해 특례 감액 조치를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 | 없음 |
| 10 | 현 의회의원의 <br> 의원보수， <br> 비용보상 및 기말수당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6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1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자치법 제203조 <br> 제4항에 따라 <br> 의원보수비용 변상 및 기말수당의 금액 및 그 지급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 11 | 교육위원회의 보수등에 관한 조례 | 1951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9호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에게 <br> 지급하는 보수 및 <br> 비용변상，그 <br>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교육장인 교육위원회 위원을 제외한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12 | 인사위원회 위원의 급여 등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1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38 \text { 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br> 2 제4항에 따라 <br> 인사위원회 위원의 <br> 보수 또는 월급 기타의 <br> 급여 및 비용변상 또는 <br> 여비 및 그 지급 <br> 방법에 대해 정하고 <br>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3 | 감사위원의 급여등에 관한 조례 | 1951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8호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2 제4항 및 제204조 제 3 항에 근거하여 감사위원의 보수 또는 월급 기타의 급여 및 비용변상 또는 여비 및 그 지급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 14 | 가나가와현 노동위원회의 위원등의 보수 및 비용보상과 그 지급방법에 관한 조례 | 1951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17 호 | $\begin{aligned} & \text { 총무국 } \\ & \text { 인재과 } \end{aligned}$ |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br> 2 제4항에 따라 <br> 노동위원회 위원, <br> 특별조정위원 및 <br> 알선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변상, 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 15 | 선거관리위원 <br> 등의 보수 등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6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32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2 제 4 항에 의하여 선거관리 위원 및 임시위원인 보충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변상, 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 16 | 선거장등의 <br> 보수등에 관한 <br>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6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33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br> 2 제 4 항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지급하는 보수 및 <br> 비용변상, 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 17 | 가나가와현 <br> 수용위원회위 <br> 원 및 그외의 <br> 자의 급여등에 <br> 관한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51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79호 } \end{aligned}$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2 제 4 항에 근거하여 수용 위원회 위원 등에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 변상, 그 지급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8 | 해구 어업 조정 위원회 위원 및 전문 위원의 보수 등에 관한 조례 | 1953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10 호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2 제4항에 근거하여 해구어업조정 위원회 위원 및 전문 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변상，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19 | 내수면 어장 관리 위원회 위원의 보수 등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3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11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br> 2 제4항에 따라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 위원에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변상，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0 | 공안위원회 위원의 보수등에 관한 조례 | 1951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10 호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자치법 제 203 조의 2 제4항에 따라 공안위원회 위원에 지급하는 보수 및 <br> 비용변상，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1 | 공영기업관리 자의 급여등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66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51 \text { 호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총무국 } \\ & \text { 인재과 } \end{aligned}$ | 지방자치법 제204조 <br> 제3항에 따라 <br> 공기업관리자 및 <br> 병원사업 관리자의 <br> 급료 기타의 급여 및 <br> 여비 및 그 지급방법에 <br>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2 | 부속 기관의 위원 기타 구성원의 보수 등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6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34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2 제4항에 근거하여 부속 기관의 위원 기타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변상，그 지급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3 | 가나가와 현 전문 위원 등 보수 및 비용 보상, 그 지급 방법에 관한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50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71 \text { 호 } \end{aligned}$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br> 2 제4항에 근거하여 전문위원 등에 지급하는 보수 및 <br> 비용변상, 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4 | 증인 등의 <br> 비용 보상에 관한 조례 | 1953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12 호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자치법 제207조에 따라 동법 제 10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출두한 선거인 등의 <br> 비용변상, 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 \text { 7월 개정 } \end{aligned}$ | 2013년 | 없음 |
| 25 | 지사 등의 <br> 기말 수당 및 <br> 직원의 관리직 <br> 수당의 특례에 <br>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1998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8호 } \end{gathered}$ | 구 총무부 인사과 | 1998년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현 재정 및 현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적 방침의 필요에 의해, 1998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특별직의 기말수당 및 직원의 관리직 수당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 정하고 있다. | 폐지한다. <br> <상세> <br> $\rightarrow$ 2009년 <br> 7월 폐지 | - | 없음 |
| 26 |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hline \text { 1957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52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노무급여과 |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7 | 직원의 특수근무 <br> 수당에 관한 <br>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7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53 \text { 호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총무국 } \\ \text { 노무급여과 } \end{gathered}$ |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급여(특수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8 | 현업 직원의 급여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1957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55 \text { 호 } \end{gathered}$ | 총무국 노무급여과 | 지방공영기업 등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5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업직원의 급여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9 | 직원의 퇴직수당에 관한 조례 | 195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7호 | 총무국 노무급여과 | 지방자치법 제204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 24 조 제 6 항에 근거하여 직원퇴직수당의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30 | 직원의 여비에 관한 조례 | 1956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26호 | 총무국 노무급여과 | 지방자치법 제 204 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 24 조 제 6 항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31 | 직원 근무 <br> 시간，휴가 <br> 등에 관한 <br>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7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54 \text { 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노무급여과 |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근무 시간，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32 | 직원의 신분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1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53 \text { 호 } \end{gathered}$ | 총무국 노무급여과 |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직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 및 감봉의 사유，직원의 의사에 반한 강등，면직，휴직 및 감봉의 절차•효과 및 직원의 실직의 예외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cdot$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33 | 쇼와천황의 승하에 따른 직원의 징계 면제 및 직원의 배상 <br> 책임에 근거하는 채무 면제에 관한 조례 | 1989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4호 | 총무국 <br> 인재과 | 쇼와천황의 승하에 따른 국가공무원 징계 면제 등과 같은 조치를 <br>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해당 징계를 장래에 향해 면제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원의 배상책임에 근거하는 채무에 대해서 장래에 향해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34 | 직원의 징계 <br> 절차 및 효과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hline \text { 1951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54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공무원법 제29조 제 2 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직원의 징계절차 및 효과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 35 | 직원의 정년 등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1983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28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공무원법 제28조의 2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및 제 28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현의 직원 등의 정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 36 | 직원의 육아 <br> 휴업 등에 <br>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92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7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노무급여과 |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37 | 직원의 수학 부분 휴업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05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9호 } \end{gathered}$ | 총무국 조직인재부 인재과 | 지방공무원법 제 26 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학업 부분휴업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5년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38 | 직원의 고령자 부분 휴업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05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10 \text { 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노무급여과 | 지방공무원법 제 26 조의 <br> 3 의 규정에 따라 <br> 직원의 고령자 부분 <br> 휴업에 관한 필요 <br>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5년 | 없음 |
| 39 | 직원의 복무의 선서에 관한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51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2호 } \end{aligned}$ | 총무부 <br> 인재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새로 직원이된 자의 복무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40 | 직무에 전념할 의무의 특례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1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3호 } \end{gathered}$ | 총무부 <br> 인재과 | 지방공무원법 제35조에 따라 직무에 전념할 의무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41 | 외국의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 등에 파견되는 직원의 처우 등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88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6호 } \end{gathered}$ | 총무부 <br> 인재과 | 외국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등에 파견되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제 7 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등에 파견되는 직원의 처우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42 | 직원의 대학원 등 파견 연수 비용의 상환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07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5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인재과 | 국가공무원 유학비용의 <br> 상환에 관한 법률 <br> 제 1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대학원 등 파견연수비용의 상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7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43 | 가나가와현 연금 조례 | 1957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41호 | 총무부 <br> 직원후생과 | 1962년 11월 30일 <br>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 등에 대한 연금 지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44 | 연금 및 다른 <br> 지방 공공 <br> 단체의 퇴직 <br> 연금 및 퇴직 <br> 일시금의 <br> 기초가 될 <br> 재직 기간과 <br> 직원의 퇴직 <br> 연금 및 퇴직 <br> 일시금의 <br> 기초가 될 <br> 재직 기간과 <br> 통산에 관한 <br> 조례 | 1957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41호 | 총무부 <br> 직원후생과 | 연금 및 다른 지방공공단체의 퇴직연금 및 퇴직 일시금의 기초가 될 재직기간과 직원의 퇴직연금 및 퇴직 일시금의 기초가 될 재직기간과 통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45 | 의회의 의원 <br> 기타 파트 <br> 타임 직원의 <br> 공무 재해 <br> 보상 등에 <br> 관한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67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50 \text { 호 } \end{aligned}$ | 총무국 <br> 노무급여과 | 지방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9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원 기타 비상근 직원에 관한 공무상 재해 또는 통근에 의한 재해보상 제도를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12 \text { 월 } \\ \text { 개정 } \end{gathered}$ | 2015년 | 없음 |
| 46 | 현립 학교 의사, 학교 치과 의사, 학교 약사 공무 재해 보상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87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18 \text { 호 } \end{gathered}$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보건체육과, <br> 현민부 <br> 학사진흥과, <br> 보건복지부 <br> 보건복지과 | 현립학교의 교내치과의사, 교내약사 공무재해보상 범위, 금액 및 지급방법 기타 보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5년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47 | 직원 단체 등록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66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28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노무급여과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직원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3년 | 없음 |
| 48 | 직원 단체를 위한 직원의 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66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29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노무급여과 | 지방공무원법 제 55 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 단체를 위한 직원의 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3년 | 없음 |
| 49 | 가나가와현 <br> 인사 행정의 운영 등의 상황의 공표에 관한 조례 | 2005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11호 | 총무국 <br> 조직인재부 <br> 노무급여과 | 지방공무원법 제 58 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현의 인사행정의 운영 등의 상황보고 및 공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5년 | 없음 |
| 50 | 가나가와 현 조례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1950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39 \text { 호 } \end{gathered}$ | 정책국 정책법무과 | 지방자치법 제 16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현 조례 등의 공포에 대해 공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 \text { 12월 } \\ & \text { 개정 } \end{aligned}$ | 2013년 | 없음 |
| 51 | 가나가와현 <br> 정보 공개 <br> 조례 | 2000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26호 | 현민국 정보공개과 | 행정문서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밝히는 동시에 그 권리에 대응하는 기관의 공개의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 3 \text { 월 개정 } \end{aligned}$ | 2014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52 | 가나가와현 개인정보보호 조례 | $\begin{gathered} 1990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6호 } \end{gathered}$ | 현민국 정보공개과 | 현의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개시, 정정 및 이용정지를 요구하는 개인의 권리를 밝히는 동시에 개인 정보의 적절한 취급확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rray}{\|c}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8 \text { 월 개정 } \end{array}$ | 2014년 | 있음 |
| 53 | 가나가와현 행정절차조례 | 1995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1호 | 정책국 정책법무과 | 현의 조례 등을 근거로 처분•신고 및 현이 행하는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에 관해 공통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54 | 가나가와현 행정 수속 등에서의 정보 통신 기술 이용에 관한 조례 | 2005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8 호 | 총무부 <br> 행정개혁과 | 행정운영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위해 현의 기관에 온라인 수속 등에 관해 공통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5년 | 없음 |
| 55 | 가나가와현 통계조사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51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43호 } \end{aligned}$ | 총무부 <br> 통계과 | 현이 통계조사를 <br> 실시하면서 조사 <br> 대상자의 신고의무, <br> 조사원 등에 의한 <br> 실시조사 결과에 관한 <br> 비밀보호, 조사 결과의 <br> 공표 등 필요한 사항을 <br> 정하고 있다. | 개정을 <br> 검토함 $\begin{gathered} \text { <상 세> } \\ \rightarrow 2008 \text { 년 } \\ \text { 12월 } \\ \text {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있음 |
| 56 | 가나가와현의 <br> 행정 공로자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1999 ㄴ ㅕ ㄴ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11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인재과 | 현의 행정 공로자 지정, 전형, 위치 등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57 | 가나가와현 외부 감사 계약에 근거한 감사에 관한 조례 | 1999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2호 | 총무부 행정사무 감찰과 | 지방자치법 제 252 조의 <br> 27 제 1 항의 규정에 기초한 외부감사계약에 따라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58 |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및 가나가와 현 지사 선거의 선거 운동의 판공비 부담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93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18 \text { 호 } \end{gathered}$ | 총무부 <br> 시정촌 행정과 | 공직 선거 법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의회 <br> 의원 및 가나가와현 지사 선거시 자동차 사용 및 선거운동용 포스터의 작성 등의 공비 <br> 부담액•지급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59 | 포스터게시판 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1982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55 \text { 호 } \end{gathered}$ | 총무부 <br> 시정촌 <br> 행정과 | 공직선거법 제144조의 2 제 8 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용 포스터 게시의 설치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60 | 선거공보에 <br>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1952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4호 } \end{gathered}$ | 총무부 <br> 시정촌 행정과 | 공직선거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의회 의원선거에서 선거공보의 발행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61 | 가나가와현 의회정례회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6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39호 } \end{gathered}$ | 정책부 <br> 재정과 | 가나가와현 의회 정례회 횟수를 매년 4회로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hline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09 \text { 견 } \\ 10 \text { 월 } \\ \text {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62 | 가나가와현 행정에 관한 기본 계획을 의회의 의결 사건으로 정하는 조례 | $\begin{aligned} & \text { 2004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58 \text { 호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정책국 } \\ & \text { 총무과 } \end{aligned}$ | 지방자치법 제96조 <br> 제2항에 따라 현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br> 계획의 책정 등을 <br> 의회의 의결건으로 <br> 하는 것에 관해 필요한 <br>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4년 | 없음 |
| 63 | 정치 윤리의 확립을 위한 가나가와현 지사의 자산 등의 공개에 관한 조례 | 1995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56호 | 지사실 <br> 비서과 |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br> 따라 가나가와현 지사의 자산 등의 공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 64 | 가나가와현부 설치 조례 | 1956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30 호 | $\begin{aligned} & \text { 총무국 } \\ & \text { 인재과 } \end{aligned}$ | 지방자치법 제 158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사의 최근 하위의 내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하는 사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 세> | 2013년 | 없음 |
| 65 | 가나가와현 행정기관 설치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6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31호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총무부 } \\ & \text { 인사과 } \end{aligned}$ | 지방자치법 제 155 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 156 조 제 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경찰서 제외)의 설치 및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 66 |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 | 1953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5호 | $\begin{aligned} & \text { 총무국 } \\ & \text { 인재과 } \end{aligned}$ | 지방자치법 제 138 조의 4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회 심의회 조사회 <br> 기타 조정 및 심사, 자문 또는 조사를 위한 부속기관의 명칭, 설치목적 및 위원수에 대해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12 \text { 월 } \\ \text {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67 | 가나가와현의 휴일을 정하는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89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12 \text { 호 } \end{aligned}$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따라 가나가와현의 휴일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68 | 도시로서의 요건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4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4호 } \end{gathered}$ | 총무부 <br> 시정촌 <br> 행정과 | 지방자치법 제 8 조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 되려는 보통 지방공공단체가 구비해야 하는 도시시설 기타 도시로서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69 | 마을로서의 요건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48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32호 } \end{gathered}$ | 총무부 <br> 시정촌 <br> 행정과 | 지방자치법 제 8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町）이 되려는 보통 지방공 단체가 구비해야 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70 | 사무처리의 특례에 관한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57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41호 } \end{aligned}$ | 총무부 <br> 시정촌 <br> 행정과 | 지방자치법 제 252 조의 17 의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읍면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71 | 가나가와현 고정자산평가 심의회 조례 | $\begin{gathered} 1962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39 \text { 호 } \end{gathered}$ | 총무부 <br> 시정촌 <br> 행정과 | 지방세법 제401조의 2의 규정에 기초하여 설치해 가나가와현 고정자산평가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72 | 가나가와현 인사위원회 설치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51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37호 } \end{aligned}$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현 인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73 | 가나가와현 감사위원에 관한 조례 | 2007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3호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자치법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74 | 가나가와현 <br> 공익인정등 <br> 심의회 조례 | $\begin{aligned} & \text { 2007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37호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총무국 } \\ & \text { 문서과 } \end{aligned}$ | 가나가와현 공익인정 등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7년 | 없음 |
| 75 | 가나가와현 행정서사시험 절차 수수료 조례 | 2000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3호 | 정책국 정책법무과 |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br> 시행을 의무화되고 <br> 있는 행정사시험에 <br> 관련된 수수료에 관해 <br>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br>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76 | 주민 기본 <br> 대장 법에 근거한 본인 확인 정보 보호에 관한 심의회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02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6호 } \end{gathered}$ | 총무부 <br> 시정촌 행정과 | 주민기본대장법 제 30 조의 9 의 규정에 의거 도도부현에 설치가 의무화된 본인확인정보(주민등록 표에 기재된 <br> 성명 -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표 코드 - 부수 정보)의 보호에 관한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 • } \\ \text { 폐지 } \\ \text { 필요없음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text { 4월 폐지 } \end{gathered}$ | -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77 | 주민 기본 <br> 대장 법에 기초하여 지정 <br> 정보 처리 기관이 행하는 <br> 국가 기관 <br> 등에 대한 <br> 본인 확인 <br> 정보의 제공에 <br> 관련된 <br> 수수료에 관한 조례 | 2002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7호 | 총무부 <br> 시정촌 <br> 행정과 | 주민기본대장법 제 30 조의 10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사가 <br> 본인확인 <br> 정보처리업무를 지정정보처리기관에 <br> 위임할 때 해당 사무처리에 관련된 <br> 수수료를 <br> 지정정보처리기관의 수입으로 하는 것과 해당 수수료 산정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 세＞ <br> $\rightarrow$ 2010년 <br> 4월 폐지 | － | 없음 |
| 78 | 전자서명에 관련된 지방 공공 단체의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발행수수료 및 <br> 정보제공 수수료에 관한 조례 | $\begin{aligned} & \text { 2003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72 \text { 호 } \end{aligned}$ | 총무국 <br> 정보기획과 | 전자서명에 관련된 <br> 지방공공단체의 <br> 인증업무에 관한 <br>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지사가 지정인증기관에 인증업무를 위임할 때， <br> 전자증명서의 <br> 발급수수료 및 <br> 정보제공수수료를 <br> 지정인증기관의 <br> 수입으로 하는 것과 <br> 수수료 액수의 <br> 결정방법에 대해 <br>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79 | 의회의 의결에 부의해야하는 <br> 사건 등에 관한 조례 | 196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74호 | 정책국 <br> 총무과 | 지방자치법 제96조 제1항 제 5 호 및 제 8 호와 제 2 항， <br> 제 224 조 2 제 2 항의 규정에 근거해，의회의 의결에 부의해야 하는 사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4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80 | 보통 재산 및 물품의 교환, 출자,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등에 관한 조례 | 196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74호 | $\begin{aligned} & \text { 정책국 } \\ & \text { 총무과 } \end{aligned}$ | 지방자치법 제96조 제 1 항 제 5 호 및 제 8 호 및 제2항 및 제 244 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정할 사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81 | 수입인지에 <br> 관한 조례 | 196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78호 | 총무국 <br> 재산관리과 | 지방자치법 제2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재산 및 물품의 교환, 출자,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82 | 장기계속계약 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을 정한 조례 | 196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76호 | 정책부 <br> 재정과 | 지방자치법 제231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증지에 의한 수입방 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83 |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05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87호 } \end{gathered}$ | 정책국 예산조정과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67 조의 17 의 규정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84 | 행정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사용료에 관한 조례 | 1928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75호 | 정책국 예산조정과 | 지방자치법 제209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 3 \text { 월 개정 } \end{aligned}$ | 2014년 | 없음 |
| 85 | 가나가와현 재정기금조례 | 196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79호 | 총무부 <br> 재산관리과 | 지방자치법 제238조의 4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을 <br> 허가한 경우의 <br> 사용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4년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86 | 가나가와현 현채관리기금 조례 | $\begin{gathered} 1979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32호 } \end{gathered}$ | 정책국 자금조사과 |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화 대처 등을 위해 가나가와현 재정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87 | 가나가와현 수수료 조례 | $\begin{gathered} 1979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33 \text { 호 } \end{gathered}$ | 정책국 자금조사과 | 현채의 상환 및 현채의 적정한 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br> 적립하기 위한 가나가와 현의 현채 관리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을 <br> 검토함 ＜상세＞ $\rightarrow$ 2009년 <br> 12월 <br> 개정 | 2014년 | 없음 |
| 88 | 가나가와현 현세（県税） 조례 | 2000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2호 | 정책국 <br> 예산조정과 | 지방자치법 제227조 및 <br> 제 228 조 제 1 항의 <br> 규정에 따라 다르게 조례로 규정이 있는 것 외에，수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 \text { 7월 개정 } \end{aligned}$ | 2013년 | 없음 |
| 89 | 가나가와현 임시특례기업 세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70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26호 } \end{gathered}$ | 정책국 <br> 세제기획과 |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현세의 부과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 | 없음 |
| 90 | 미국 군대의 <br> 구성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의 특례에 관한 조례 | 2001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37호 | 정책국 <br> 세제기획과 |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br> 법정외보통세인 <br> 임시특례기업 세금 <br>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91 | 미국 군대의 <br> 구성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 세율의 특례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1952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38 \text { 호 } \end{gathered}$ | 정책국 세제기획과 | 일본과 미국간의 <br> 상호협력 및 <br>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따라 시설 및 구역 및 일본의 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br> 실시에 수반되는 지방세법의 임시특례에 <br> 관한 법률 제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의 징수에 대해 가나가와현 현세 조례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3년 | 없음 |
| 92 | 산업 집적의 촉진에 관한 법인 사업세 및 부동산 취득세율의 특례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1952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69 \text { 호 } \end{gathered}$ | 정책국 세제기획과 | 미군의 구성원 등의 소유에 관련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 일본과 미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따라 시설•구역 및 일본의 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 13 조 제 3 항 등 규정에 따라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 6 조 제 2 항에 따라 가나가와현 현세 조례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 \text { 7월 개정 } \end{aligned}$ | 2013년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93 | 가나가와현 재정 상황의 공표에 관한 조례 | $\begin{aligned} & \text { 2004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62 \text { 호 } \end{aligned}$ | 정책국 세제기획과 |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br> 법인사업세 및 부동산취득세율에 대해서，가나가와현 현세 조례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8 \text { 월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없음 |
| 94 | 가나가와현 <br> 직업 능력 <br> 개발 심의회 <br> 조례 | 1948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30 호 | 정책국 <br> 예산조정과 | 지방자치법 제 243 조의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현의 재정상황의 공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95 | 가나가와현 직업 능력 개발 촉진 법 관계 수수료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10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13 \text { 호 } \end{gathered}$ | 상공노동국 <br> 산업인재과 | 직업 능력 개발 촉진 법 제 30 조의 규정에 <br> 의거 도도부현에 실시해야 할 직업 훈련 지도원 면허 및 동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거 도도부현에 실시해야 할 기능 검정 시험에 관련된 수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 3 \text { 월 개정 } \end{aligned}$ | 2013년 | 없음 |
| 96 | 가나가와현립 고등 직업 기술 학교 등에 관한 조례 | 1979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1호 | 상공노동국 <br> 산업인재과 | 구직자 등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 훈련 시설인 가나가와 현립 고등 직업 기술 학교 등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text { 12월 } \\ \text {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97 | 가나가와 현립 산업 기술 단기 대학교 조례 | 199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2호 | 상공노동국 산업인재과 | 구직자 등에게 직업에 필요한 고도의 기능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 훈련 시설인 가나가와 현립 산업 기술 단기 대학교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을 <br> 검토함 <상세> $\rightarrow$ 2010년 <br> 12월 <br> 개정 | 2014년 | 없음 |
| 98 | 가나가와현립 가나가와 노동 플라자 조례 | 1995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6호 | 상공노동국 <br> 노정복지과 |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문화 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 현립 가나가와 노동 플라자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99 |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시행 조례 | $\begin{gathered} 1998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37 \text { 호 } \end{gathered}$ | 현민국 <br> NPO협동 <br> 추진과 | 지사가 관할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에 관한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있음 |
| 100 | 가나가와 자원봉사 활동 추진 기금 21조례 | $\begin{aligned} & \text { 2001년 } \\ & \text { 가나가 } \end{aligned}$ <br> 와현 조례 제 10호 | 현민국 <br> NPO협동 <br> 추진과 |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가나가와 자원봉사 활동 추진 기금 21 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01 | 가나가와현 소비생활 조례 | $\begin{gathered} 1980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1 \text { 호 } \end{gathered}$ | 현민국 소비생활과 | 소비자의 권리를 확립하고 현민의 소비 생활의 안정과 향상 및 친환경 소비 생활의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현민의 소비 생활에 관해，현 및 사업자의 책무를 밝혀 현이 실시하는 시책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이ㅆㅡㅡㅁ |
| 102 | 가나가와현 교통안전대책 회의 조례 | $\begin{aligned} & 1970 \text { 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45 \text { 호 } \end{aligned}$ | 안전 <br> 방재국 <br> 생활 안전 <br> 교통과 | 교통 안전 대책 기본법 제 17 조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교통 안전 대책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103 | 가나가와현립 현민활동 지원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96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11 \text { 호 } \end{gathered}$ | 현민국 <br> NP O협동 <br> 추진과 | 현민의 자주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 현립 가나가와 현민 활동 지원 센터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104 | 가나가와현립 공문서관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93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24호 } \end{gathered}$ | 현민국 정보공개과 | 가나가와 현립 공문서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05 | 가나가와현립 현민홀 조례 | 197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1호 | 현민국 <br> 문화과 | 현민의 문화 예술 진흥 <br> 및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가나가와 현립 현민 홀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을 <br> 검토함。 <br> <상세> <br> $\rightarrow 2009$ 년 <br> 3월 개정 | 2013년 | 없음 |
| 106 | 가나가와현립 음악당 조례 | 1995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3호 | 현민국 <br> 문화과 | 현민의 음악 예술 진흥 <br> 및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가나가와 현립 음악당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107 | 가나가와현립 가나가와현 근대 문학관 조례 | 198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3호 | 현민국 <br> 문화과 | 근대 문학에 관련된 <br> 도서 및 그 저자의 유품 등을 수집해 정리 보존 및 전시해 및 근대 문학에 관련된 도서를 열람에 제공하는 시설인 가나가와 현립 가나가와 근대 문학관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108 | 가나가와현립 가나가와여성 센터 조례 | $\begin{gathered} 1982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3호 } \end{gathered}$ | 현민국 <br> 인권남녀 공동참획과 | 가나가와 현립 가나가와 여성 센터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109 | 가나가와현립 후지노 예술의 집 조례 | $\begin{gathered} 1995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호 } \end{gathered}$ | 현민국 청소년과 | 가나가와 현립 후지노 예술의 집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hline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3 \text { 월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10 | 가나가와현립 <br> 지구시민 <br> 가나가와 <br> 플라자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97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37호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현민국 } \\ & \text { 국제과 } \end{aligned}$ | 가나가와 현립 지구 시민 가나가와 플라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3 \text { 월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없음 |
| 111 | 가나가와현립 사가미호 교류 센터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99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0호 } \end{gathered}$ | 정책국 토지수자원 <br> 대책과 | 수원 지역의 자연 보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현민에게 수원 지역의 자연과 접촉 및 다양한 교류 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 현립 사가미 호 교류 센터 설치，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12 \text { 월 } \\ \text {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없음 |
| 112 | 가나가와현 <br> 남녀공동참획 추진 조례 | 2002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8호 | 현민국 <br> 인권남녀 <br> 공동참획과 | 남녀 공동 참여 사회의 형성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남녀 공동 참여의 추진에 관해，현 사업자 및 현민의 책무를 밝히는 동시에，남녀 공동 참여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이ㅆㅡㅡㅁ |
| 113 | 가나가와현 범죄없는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추진 조례 | $\begin{aligned} & \text { 2004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65 \text { 호 } \end{aligned}$ | 안전 <br> 방재국 <br> 생활안전 <br> 교통과 | 가나가와 현의 구역에서의 범죄의 방지 등에 관해，현， 현민 및 사업자의 책무，범죄 발생할 기회를 줄이기 위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5년 | 있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14 | 가나가와현 청소년보호육 성 조례 | 1955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1호 | 현민국 청소년과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나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hline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10 \text { 월 } \\ \text { 개정 } \end{gathered}$ | 2016년 | 이ㅆㅡㅡㅁ |
| 115 | 가나가와현 청소년 흡연음주 방지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06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66호 } \end{gathered}$ | 현민국 청소년과 | 청소년 흡연과 음주를 방지하는 사회 환경의 정비를 위해 청소년 <br> 흡연과 음주를 <br> 방지하기 위한, 현, 보호자, 사업자 및 현민의 책무를 밝히는 <br> 동시에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의 방지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7년 | 이ㅆㅡㅡㅁ |
| 116 | 가나가와현 청소년 센터 조례 | 196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11호 | 현민국 청소년과 | 가나가와 현립 청소년 <br> 센터의 설치, 관리 <br> 등에 관한 필요한 <br>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117 | 가나가와현립 야나기시마 청소년 야영장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64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12 \text { 호 } \end{gathered}$ | 현민국 청소년과 | 가나가와 현립 야나기 시마 청소년 야영장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egin{gathered}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1 \text { 년 } \end{gathered}$ <br> 4월 폐지 | - | 없음 |
| 118 | 가나가와현립 <br> 기요카와 <br> 청소년의 집 <br> 조례 | $\begin{gathered} 1972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립 } \\ \text { 조례 } \\ \text { 제49호 } \end{gathered}$ | 현민국 청소년과 | 가나가와 현립 <br> 기요카와(清川) 청소년의 집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rightarrow 2011 \text { 년 }$ <br> 4월 폐지 | -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19 | 학교법인 조성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0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40 \text { 호 } \end{gathered}$ | 현민국 학사진흥과 | 사립 학교 법 제59조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한 사립 학교 교육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폐지를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 8 \text { 월 폐지 } \end{aligned}$ | － | 있음 |
| 120 | 가나가와현립 보건복지대학 조례 | 2002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67호 | 보건복지국 <br> 보건복지 인재과 | 가나가와 현립 보건 복지 대학 설치，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121 | 가나가와현립 외국어단기대 학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67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35 \text { 호 } \end{gathered}$ | 현민국 학사진흥과 | 현립 외국어 단기 <br> 대학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폐지를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12 \text { 년 } \\ & 6 \text { 월 개정 } \end{aligned}$ | － | 없음 |
| 122 | 인정 유치원의 <br> 요건을 정하는 <br> 조례 | $\begin{gathered} 2006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65 \text { 호 } \end{gathered}$ | 현민국 학사진흥과 | 취학 전 아이에 관한 <br> 교육，보육 등의 <br> 종합적인 제공의 <br> 추진에 관한 법률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 어린이원 직원의 <br> 배치，자격，시설 설비나 교육의 내용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7년 | 있음 |
| 123 | 공장입지법 <br> 제 4 조의 2 <br> 제 1 항의 <br> 규정에 의한 <br> 준칙을 정하는 <br> 조례 | $\begin{gathered} 2000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제 } \\ 63 \text { 호 } \end{gathered}$ | 상공노동국 <br> 산업입지과 | 공장 입지 법 제4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율 등에 관한 준칙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있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24 | 가나가와현 산업기술센터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1995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8 호 | 상공노동국 <br> 신산업 <br> 진흥과 | 가나가와 현 산업 기술 <br> 센터가 의뢰를 받아 하는 시험, 연구, 가공, 성적서의 복본의 교부 등에 관련된 수수료 및 <br> 기기 등의 사용에 <br> 관련된 사용료의 <br>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br>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125 | 가나가와현 계량법 관계수수료 조례 | 2000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12 호 | 상공노동국 <br> 신산업 <br> 진흥과 | 계량 법에 기초한 도도부현에 실시가 의무화되고 있는 지정 <br> 검사 등에 관련된 수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126 | $\begin{gathered} \text { 가나가와 현립 } \\ \text { 아시노코 } \\ \text { 캠프촌 조례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1995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9호 } \end{aligned}$ | 상공노동국 <br> 관광과 | 가나가와 현립 아시노코 캠프촌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text { 2월 개정 } \end{gathered}$ | 2013년 | 없음 |
| 127 | 가나가와현 환경기본조례 | $\begin{gathered} 1996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12 \text { 호 } \end{gathered}$ | 환경농정국 환경계획과 | 환경의 보전 및 창조에 <br> 관한 기본 이념, 현 - 시읍면, 사업자, 현민의 책무, 환경의 <br> 보전 및 창조를 <br> 추진하기 위한 시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 3 \text { 월 개정 } \end{aligned}$ | 2014년 | 있음 |
| 128 | 가나가와현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1997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35호 | 환경농정국 <br> 대기수질과 | 공장 및 사업장의 설치에 대한 규제, 사업 활동 및 일상 생활에서의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 기타 환경 보전 상의 지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11 \text { 년 } \\ & \text { 7월 개정 } \end{aligned}$ | 2017년 | 있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29 | 가나가와현 환경영향평가 조례 | $\begin{gathered} 1980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36호 } \end{gathered}$ | 환경농정국 환경계획과 | 가나가와 현 환경 기본 <br> 조례의 본뜻을 달성하기 위해 땅의 형상 변경，공작물의 건설 등의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리 조사，예측 및 평가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한 수속 등의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12 \text { 월 } \\ \text {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이ㅆㅡㅡㅁ |
| 130 | 자연환경보전 조례 | $\begin{gathered} 1972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52 \text { 호 } \end{gathered}$ | 환경농정국 자연환경 보전과 | 자연 환경의 보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지정，해당 지역에서의 행위 규제， 자연 환경의 유지 및 회복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rray}{\|l}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1 \text { 년 } \\ 3 \text { 월 개정 } \end{array}$ | 2014년 | 이ㅆㅡㅡㅁ |
| 131 | 가나가와현 자연환경보전 심의회 조례 | 1973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5호 | 환경농정국 <br> 자연환경 <br> 보전과 | 자연 환경 보전 법 제 51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자연 환경 보전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32 | 가나가와현 <br> 라스트녹색 <br> 기금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86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호 } \end{gathered}$ | 환경농정국 자연환경 보전과 | 가나가와의 뛰어난 자연 환경 및 역사적 환경을 보전해 푸른 가나가와를 대물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적립하기 위해 가나가와 트러스트 미도리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3년 | 없음 |
| 133 | 가나가와현 환경보전기금 조례 | $\begin{gathered} 1990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2호 } \end{gathered}$ | 환경농정국 <br> 총무과 | 지역에 기인한 환경 보전 활동을 하기 위한 환경 보전 기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3년 | 없음 |
| 134 | 가나가와현 <br> 수원 환경 <br> 보전 및 재생 <br> 기금 조례 | $\begin{aligned} & 2005 \text { 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88 \text { 호 } \end{aligned}$ | 환경농정국 수원환경 보전과 | 수원 환경의 보전 및 재생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해 가나가와 현 수원 환경 보전 및 재생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7년 | 없음 |
| 135 | 가나가와현립 자연공원 조례 | 1959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6호 | 환경농정국 자연환경 보전과 | 자연 공원 법의 규정에 따라 현립 자연 공원에 <br> 관한 공원 계획의 결정, 지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11 \text { 년 } \\ & 3 \text { 월 개정 } \end{aligned}$ | 2014년 | 있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36 | 캠프 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 | 196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15 호 | 환경농정국 <br> 총무과 | 특정 구역에서의 캠프를 금지함으로써， 캠프를 하는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해당 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의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있음 |
| 137 | 가나가와현립 자연환경보전 센터 조례 | 1978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34호 | 환경농정국 <br> 자연환경 <br> 보전과 | 자연의 보호 및 녹화에 관한 사상의 보급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 현립 자연 보호 센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 \text { 7월 개정 } \end{aligned}$ | 2013년 | 없음 |
| 138 | 가나가와현 환경심의회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94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28호 } \end{gathered}$ | 환경농정국 <br> 환경계획과 | 환경 기본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환경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139 | 대기오염방지 <br> 법 제4조 <br> 제 1 항의 <br>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 및 수질 <br> 오염방지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 기준을 정하는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71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52 \text { 호 } \end{gathered}$ | 환경농정국 <br> 대기수질과 | 현내의 구역에 대한 대기 오염 방지 법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물질의 배출 기준을 정하고，수질 오염 방지 법 제3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 물의 오염 상태에 관련된 배수 기준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11 \text { 년 } \\ & 3 \text { 월 개정 } \end{aligned}$ | 2014년 | 있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40 | 가나가와현 자동차배출질 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총량삭감계획 책정 협의회 조례 | $\begin{gathered} 1992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48 \text { 호 } \end{gathered}$ | 환경농정국 <br> 대기수질과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 및 미세 먼지의 특정 지역의 총량의 삭감 등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자동차 배출 질소 산화물 및 미세 먼지 총량 삭감 계획 책정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141 | 공해분쟁처리 법에 규정하는 압선, 조정 및 중재에 관련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 1970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44호 | 환경농정국 <br> 대기수질과 | 지방 자치 법 제227조 및 제 228 조 제 1 항의 규정 및 공해 분쟁 처리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해 분쟁 처리 법에 규정하는 아츠세은, 조정 및 중재에 관련된 수수료 등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142 | 가나가와현 산업 폐기물 처분에 관련된 수수료 징수 조례 | $\begin{aligned} & 2005 \text { 년 } \\ & \text { 가나가 } \end{aligned}$ <br> 와현 <br> 조례 <br> 제 105 호 | 환경농정국 <br> 폐기물 <br> 지도과 |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br> 관한 법률 제 13 조 <br>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현이 의뢰를 받아 하는 산업 폐기물 처분에 관련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6년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43 | 가나가와현 <br> 폐기물의 <br> 부적정 처리 <br> 방지 등에 <br>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06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67호 } \end{gathered}$ | 환경농정국 <br> 폐기물 <br> 지도과 | 폐기물에 관련된 환경 부하 저감을 도모하고 양호한 생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지에 관한 시책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 세> | 2017년 | 있음 |
| 144 | 가나가와현 방재회의 조례 | $\begin{gathered} 1962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40 \text { 호 } \end{gathered}$ | 안전방재국 재해대책과 | 재해 대책 기본 법 제 15 조 제 8 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방재 회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145 | 가나가와현 재해대책본부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62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1호 } \end{gathered}$ | 안전방재국 재해대책과 | 재해 대책 기본 법 제 23 조 제 7 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재해 대책 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3년 | 없음 |
| 146 | 가나가와현 국민 <br> 보호대책본부 및 가나가와현 긴급대책사태 대책본부 조례 | $\begin{aligned} & \text { 2004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63 \text { 호 } \end{aligned}$ | 안전방재국 위기관리 대책과 | 무력 공격 사태 등의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제 183 조에서 준용하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국민 보호 대책 본부 및 가나가와 현 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47 | 가나가와현 국민보호협의 회 조례 | 200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64호 | 안전방재국 위기관리 대책과 | 무력 공격 사태 등의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8 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국민 보호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148 | 재해 파견 <br>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1962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50 \text { 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노무급여과 | 지방 공무원 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 파견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149 | 재해시에 응급 조치의 업무에 종사한 자에 관련된 손해 보상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1962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51 \text { 호 } \end{gathered}$ | 안전방재국 <br> 재해대책과 | 재해 대책 기본 법 제 8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 명령에 의한 응급 조치의 업무에 종사한 자에 관련된 손해 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이ㅆㅡㅡㅁ |
| 150 | 가나가와현 소방법 관계 수수료 조례 | 2000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제 <br> 4호 | 안전방재국 <br> 소방과 | 소방 법에 규정하는 <br> 업무와 관련된 <br> 수수료에 관한 필요한 <br>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151 | 가나가와현 석유 콤비나트 등 방재 본부 조례 | $\begin{gathered} 1976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30 \text { 호 } \end{gathered}$ | 안전방재국 공업보안과 | 석유 콤비나트 등 재해 방지 법 제2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석유 콤비나트 등 방재 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52 | 가나가와현 <br> 지진 <br> 재해경계본부 <br>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79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34호 } \end{aligned}$ | 안전방재국 재해대책과 |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 조치 법 제17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지진 재해 경계 본부에 관한 법에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3년 | 없음 |
| 153 | 가나가와현 화약류단속법 관계 수수료 조례 | $\begin{gathered} 2000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5호 } \end{gathered}$ | 안전방재국 <br> 공업보안과 | 화약류 단속 법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 3 \text { 월 개정 } \end{aligned}$ | 2013년 | 없음 |
| 154 | 가나가와현 고압 가스보안법 관계 수수료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00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6호 } \end{gathered}$ | 안전방재국 공업보안과 | 고압 가스 보안 법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 3 \text { 월 개정 } \end{aligned}$ | 2013년 | 없음 |
| 155 | 가나가와현 액화 석유가스보안 의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관계 수수료 조례 | $\begin{gathered} 2000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7호 } \end{gathered}$ | 안전방재국 <br> 공업보안과 | 액화 석유 가스 보안의 <br> 확보 및 거래의 <br>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br> 규정하는 업무와 <br> 관련된 수수료에 관한 <br>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 3 \text { 월 개정 } \end{aligned}$ | 2013년 | 없음 |
| 156 | 사회복지법인 <br> 의 조성에 <br>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4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8호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보건복지국 } \\ \text { 총무과 } \end{gathered}$ | 사회 복지 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사회 복지 법인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4년 | 있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57 | 가나가와현 간병 복지사 <br> 및 사회 복지사 수학 자금 대출 조례 | 199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1호 | 보건복지국 <br> 보건복지 인재과 | 장래 현내 등에서 간병 <br> 복지사 또는 사회 <br> 복지사의 업무에 <br> 종사하는 유능한 <br>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br> 가나가와 현 간병 <br> 복지사 및 사회 복지사 <br> 수학 자금을 대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4년 | 이ㅆㅡㅡㅁ |
| 158 | 가나가와현 <br> 복지 마을 <br> 조성 조례 | $\begin{gathered} 1995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5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br> 지역보건 복지과 | 장애자 등이 안심하고 생활해 자유롭게 이동 및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복지 마을 조성에 관한, 현•시읍면, 사업자, 현민의 책무, 현의 기본 방침이나, 시설 등을 장애자 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정비 기준의 준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08 \text { 년 } \\ 12 \text { 월 } \\ \text {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이ㅆㅡㅡㅁ |
| 159 | 가나가와현 중증 장애자 등 수당 지급 조례 | 1969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9호 | 보건복지국 장해복지과 | 재택의 중증 장애자 등에 대해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현이 주는 수당에 대해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 \text { 7월 개정 } \end{aligned}$ | 2015년 | 있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60 | 가나가와현립 아동복지 <br> 시설에 관한 조례 | 196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28 호 | 보건복지국 <br> 가정과 | 아동 복지 법 제37조， 제41조 및 제44조에 각각 규정하는 <br> 가나가와 현립의 <br> 유아원，아동 양호 <br> 시설 및 아동 자립 <br> 지원 시설의 설치 및 <br>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br>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161 | $\begin{gathered} \text { 가나가와현 } \\ \text { 특별 } \\ \text { 모자복지자금 } \\ \text { 대출 조례 } \end{gathered}$ | $\begin{gathered} 1970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30 \text { 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br> 가정과 | 모자 복지 자금 또는 과부 복지 자금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아울러 대출하는 가나가와 현 특별 모자 복지 자금의 대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rray}{\|c} \text { 폐지를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8 \text { 월 폐지 } \end{array}$ | － | 있음 |
| 162 | 가나가와현립 여성상담소 조례 | 196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26호 | 현민국 <br> 인권남녀 공동참획과 | 가나가와 현립 여성 상담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09 \text { 견 } \\ & \text { 7월 개정 } \end{aligned}$ | 2013년 | 없음 |
| 163 | 가나가와현 여성보호시설 사츠키기숙사 <br>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64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27호 } \end{gathered}$ | 현민국 <br> 인권남녀 <br> 공동참획과 | 가나가와 현 여성 보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text { 7월 개정 } \end{gathered}$ | 2013년 | 없음 |
| 164 | 가나가와현 장애자 시책 추진 협의회 조례 | 1971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제 <br> 7호 | 보건복지 <br> 국장해 <br> 복지과 | 장애자 기본 법 제 26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장애자 시책 추진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65 | 가나가와현립 지적장애아 및 장애자 지원 종합 시설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1983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2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br> 장해 서비스과 | 주로 지적 장애가 있는 아자에 대한 시설 장애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현립의 지적 장애아 시설 및 장애인 지원 시설의 설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3년 | 없음 |
| 166 | 가나가와현 라이트센터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74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2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장해복지과 | 신체 장애자 복지 법 <br> 제34조에 규정된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제공 시설 중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시설인 가나가와 현 라이트 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167 | 가나가와현 청각장애자복 지센터 조례 | 1980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2호 | 보건복지국 장해복지과 | 신체 장애자 복지 법 제 34 조에 규정하는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제공 시설 중 청각 장애인 정보 제공 시설인 가나가와 현 청각 장애자 복지 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68 | 가나가와현 심신장애자 부양공제제도 조례 | 1970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31호 | 보건복지국 장해복지과 | 심신 장애자의 보호자의 상호 부조의 정신으로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현저한 장애가 있는 상태가 된 후 심신 장애자 연금 등을 지급하는 심신 장애자 부양 공제 제도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있음 |
| 169 | 가나가와현 장애자 자립지원대책 임시특례기금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07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7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br> 장해 서비스과 | 장애인 자립 지원 대책 임시 특례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7년 | 없음 |
| 170 | 가나가와현립 종합요양상담 센터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95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58 \text { 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가정과 | 신체 장애자 복지 법 제 11 조에 근거한 신체 장애자 재활 상담소 및 지적 장애자 복지 법 제 12 조에 근거한 지적 장애자 재활 상담소 <br> 외，아동 및 신체 장애자，지적 장애인의 진료，료육 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 현립 종합 료육 상담 센터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71 | 가나가와현 종합재활센터 조례 | $\begin{aligned} & \text { 2004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52 \text { 호 } \end{aligned}$ | 보건복지국 병원사업과 | 심신 장애자 및 중장년 등의 사회 복귀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와 의료 제휴에 의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사회 복귀 요법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이다. 가나가와 현 종합 재활 센터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172 | 가나가와현 국민 건강보험 광역화 등 지원 기금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03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6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의료보험과 | 가나가와 현 국민 건강 보험 광역화 등 지원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173 | 국민 건강 보험 법에 근거한 도도부현 조정 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2005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제 } \\ \text { 106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의료보험과 | 국민 건강 보험 법의 규정에 의거 도도부현 조정 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 세> | 2015년 | 없음 |
| 174 | 개호보험법 시행 조례 | $\begin{aligned} & 2000 \text { 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37호 } \end{aligned}$ | 보건복지국 고령복지과 | 개호 보험 법의 규정에 의거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고 있는 개호 보험에 관한 재정 안정화 기금, 심사회 수수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3 \text { 월 개정 } \end{gathered}$ | 2013년 | 없음 |
| 175 | 가나가와현 질료소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hline \text { 1964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1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병원사업과 | 가나가와 현립의 진료소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76 | 가나가와현 준 간호사 시험 위원회 조례 | $\begin{gathered} 1952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35 \text { 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br> 보건복지 인재과 |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법 제 2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준 간호사 시험 등의 조사 심의를 <br> 실시하기 위해 가나가와 현 준 간호사 시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3년 | 없음 |
| 177 | 가나가와 현립 히라츠카 간호 전문 학교 조례 | 1971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54호 | 보건복지국 보건복지 인재과 | 가나가와 현립 히라츠카 간호 전문 학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178 | 가나가와 현립 요코하마 간호 전문 학교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74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57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보건복지 인재과 | 가나가와 현립 요코하마 간호 전문 학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4년 | 없음 |
| 179 | 가나가와현립 위생간호전문 학교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78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35 \text { 호 } \end{aligned}$ | 보건복지국 보건복지 인재과 | 가나가와 현립 위생 간호 전문 학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4년 | 없음 |
| 180 | 가나가와현 현립병원 등 간호사의 수학 자금 대부 조례 | 196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39호 | （구）보건 <br> 복지부 <br> 지역보건 <br> 복지과 | 장래 현립병원 등에 근무할 유능한 간호사를 육성하기 위해 가나가와현 현립병원 등 간호사의 수학 자금 대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폐지를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 4 \text { 월 폐지 } \end{aligned}$ | － | 있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81 | 가나가와현 <br> 간호사 등의 <br> 수학 자금 <br> 대부 조례 | 196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40 호 | 보건복지국 <br> 보건복지 인재과 | 장래 현내에서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업무에 종사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가나가와현 간호사 등의 수학 자금 대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있음 |
| 182 | 가나가와현 <br> 이학요법사 및 작업요법사 수학 자금 대부 조례 | 1970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3호 | 보건복지국 <br> 보건복지 인재과 | 장래 현내에서 <br> 이학요법사 또는 <br> 작업요법사 업무에 종사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가나가와현 이학요법사 및 작업요법사 수학 자금 대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있음 |
| 183 | 약물 중독 환자 신고에 관한 조례 | 1948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10 호 | 보건복지국 약무과 | 약물로 인한 급성중독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지사에 신고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폐지를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8 \text { 월 폐지 } \end{gathered}$ | - | 있음 |
| 184 | 위생시험, 치료 등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1959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5 \text { 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총무과 | 위생연구소 및 <br> 온천지학연구소, 보건복지사무소의 위생시험(검사), 치료 등에 관해, 시험 의뢰 등이 가능한 자, 의뢰 신청 방법, 수수료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3 \text { 월 개정 } \end{gathered}$ | 2013년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85 | 소규모 특정 급식 시설의 영양 개선에 관한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99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42호 } \end{aligned}$ |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법에 규정된 <br> 특정급식시설보다 소규모인 급식시설에 대한 영양개선지도 기회를 확보하고， 현민의 건강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있음 |
| 186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영업의 <br>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2000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8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식품위생과 | 식품위생법 제50조 <br> 제2항 및 제51조 <br> 규정에 따라，영업시 강구해야 할 공중위생상 조치의 기준（관리운영기준）및 영업 시설기준과 기타 식품위생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3 \text { 월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있음 |
| 187 | 어패류 행상 <br> 등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66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2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식품위생과 | 식품위생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패류 행상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이들 <br> 영업으로 인한 <br> 식품위생상의 <br>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text { 12월 } \\ \text {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있음 |
| 188 | 가나가와현 복어 취급 및 판매 조례 | $\begin{gathered} 1959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26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식품위생과 | 복어의 적절한 취급 및 <br> 판매를 도모하고， <br> 복어로 인한 중독 <br>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br> 규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 \text { 8월 개정 } \end{aligned}$ | 2014년 | 있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89 | 여관업법 <br> 시행조례 | $\begin{gathered} 1957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64 \text { 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 여관업법 규정에 근거해, 여관업 영업 시설의 위생 조치 기준, 구조 설비 기준 및 그 밖의 여관업 업무의 적절한 운영 확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이ㅆㅡㅡㅁ |
| 190 | 흥행장법 시행 조례 | 198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25호 |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 흥행장법 규정에 근거해 흥행장 설치 장소의 기준, 구조 설비 기준, 위생상 필요한 조치의 기준 및 그 밖의 흥행장 영업의 적절한 운영 확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12 \text { 월 } \\ \text {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이ㅆㅡㅡㅁ |
| 191 | 공중 목욕탕 <br> 설치 장소의 <br> 배치 및 위생 <br> 조치 등의 <br> 기준 등에 <br>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1973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 공중욕장(浴場)법 <br> 규정에 근거해, <br> 대중목욕탕 설치 <br> 장소의 기준, 위생 및 풍기에 필요한 조치의 <br> 기준과 그 밖의 대중목욕탕의 적절한 영업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을 <br> 검토함 $\begin{gathered}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text { 12월 } \\ \text {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이ㅆㅡㅡㅁ |
| 192 | 이용사법 시행 조례 | 2000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9호 |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 이용사법 규정에 근거해, 이용업 운영시 강구해야 할 위생상 조치, 이용소에 강구해야 할 위생상 조치와 그 밖의 이용 업무의 적절한 운영확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rray}{\|l}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3 \text { 년 } \\ 3 \text { 월 개정 } \end{array}$ | 2014년 | 있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93 | 미용사법 시행 조례 | $\begin{gathered} 2000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10 \text { 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 미용사법 규정에 근거해，미용업 운영시 강구해야 할 위생상 조치，미용소（미용실）에 강구해야 할 위생상 조치와 그 밖의 미용 업무의 적절한 운영확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rray}{\|c}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3 \text { 년 } \\ 3 \text { 월 개정 } \end{array}$ | 2014년 | 있음 |
| 194 | 클리닝업법 시행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02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69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br> 환경위생과 | 클리닝업（세탁업）법 제 3 조 제 3 항 제 6 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클리닝소（세탁소）에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조치를 정함과 동시에 클리닝소의 검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 세> | 2014년 | 있음 |
| 195 | 가나가와현 <br> 수욕（水浴）장 <br> 등에 관한 <br>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9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 해수욕장，강－계곡 등 물놀이 시설，수영장 및 탈의휴게실에 대해 공중위생 및 공중위험 방지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rray}{\|c}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3 \text { 월 개정 } \end{array}$ | 2013년 | 이ㅆㅡㅡㅁ |
| 196 | 태반 및 기타 출산 관련 폐기물 처리업자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0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52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 태반 및 기타 출산 관련 폐기물의 처리업에 종사하는 자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13 \text { 년 } \\ & 3 \text { 월 개정 } \end{aligned}$ | 2014년 | 있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97 | $\begin{gathered} \text { 소규모 수도 } \\ \text { 및 소규모 } \\ \text { 수수조(受水槽) } \\ \text { 수도의 } \\ \text { 안전하고 } \\ \text { 위생적인 } \\ \text { 음료수 확보에 } \\ \text { 관한 조례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1995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7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 수도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 <br> 수도（수도사업용으로 공급된 수도 및 전용수도 이외의 수도로，지하수 또는 표류수를 수원으로 거주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수도）및 소규모 수수조（저수조， <br> 물탱크） <br> 수도（수도사업용으로 공급된 수도，전용수도 <br> 및 간이전용수도 <br> 이외의 수도로， <br> 수도사업용으로 <br> 공급되는 수도에서 <br> 공급받은 물만을 <br> 수원으로 하며 그 물을 받기 위한 수조를 갖춘 수도）의 관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있음 |
| 198 | 도축장법 시행 조례 | $\begin{gathered} 2003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7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식품위생과 | 도축장법 시행령 제 1 조 제 11 호 규정에 근거해， <br>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축（獣畜：짐승， 가축）의 적절한 처리를 <br> 위해 공중위생적 <br> 견지에서 요구되는 <br> 도축장의 구조 설비 <br> 기준 등과 관련해 <br>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br> 동시에 도축 검사 등에 <br> 소요되는 수수료를 <br> 규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 3 \text { 월 개정 } \end{aligned}$ | 2014년 | 있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199 | 화제（化製）장 <br> 등에 관한 <br> 법률 시행 <br> 조례 | 198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26호 | 보건복지국 식품위생과 | 화제장（폐가축부산물 재가공 시설）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제장법’）의 규정에 따라 화제장의 구조 설비 기준 등을 정함과 동시에 시설 설치 등의 허가에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3년 | 이ㅆㅡㅡㅁ |
| 200 | 가나가와현 정화조 보수 점검 업체 등록에 관한 조례 | 1985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36호 |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 정화조법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정화조 <br> 보수점검업자 <br> 등록제도를 <br> 시행함으로써， <br> 정화조를 통한 <br> 배설물의 적절한 <br>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 3 \text { 월 개정 } \end{aligned}$ | 2014년 | 있음 |
| 201 | 가나가와현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1979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35 호 | 보건복지국 식품위생과 |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애법＇）에 근거해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있음 |
| 202 | 가나가와현 동물보호센터 수수료 징수 조례 | 1972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8호 | 보건복지국 식품위생과 | 가나가와현 <br> 동물보호센터가 의뢰 받아 실시하는 개， 고양이와 그 밖의 작은 동물에 대한 검사， 처치 또는 진단서 등 문서 교부시의 수수료 징수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03 | 가나가와현 <br> 묘지 등의 <br> 경영 허가 <br> 등에 관한 <br> 조례 | $\begin{aligned} & \text { 2002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68 \text { 호 } \end{aligned}$ |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 묘지, 이장 등에 관한 법률 제 10 조 규정에 따라, 경영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 묘지 등의 구조설비기준 및 그 밖에 동법 시행과 관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4년 | 있음 |
| 204 | 가나가와현 생활위생적정 화심의회 조례 | 2000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11호 |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 생활 위생 관련 영업의 운영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9조 규정에 근거해, 가나가와현 생활위생적정화심의회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4년 | 없음 |
| 205 | 감염증 진단 협의회 조례 | 1999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4호 | 보건복지국 건강위기 관리과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규정에 근거해, 감염증진단협의회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06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임의입 원자의 증상 등의 보고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06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69 \text { 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br> 보건예방과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선명령에 따라 5 년이내의 정신과병원 또는 개선되지 않은 정신과병원에 대한 임의입원자의 증상 등의 보고의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7년 | 있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07 | 가나가와현 <br> 정신 보건 <br> 복지 심의회 <br> 조례 | 1978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41호 | 보건복지국 <br> 보건예방과 | 정신보건 및 정신보건복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복지심 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08 | 정신보건지정 의사의 보수 등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1950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53 \text { 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보건예방과 | 정신보건 및 정신보건복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해， 지사가 정신보건지정의에게 정신장애 관련 진찰 등을 하도록 했을시의 보수 및 비용변상의 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3년 | 없음 |
| 209 | 가나가와현 <br> 정신 <br> 보건복지센터 <br> 사용료 및 <br> 수수료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02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9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br> 보건예방과 | 가나가와현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진찰 등에 드는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3년 | 없음 |
| 210 | 가나가와현 병원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66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9호 } \end{gathered}$ | 보건복지국 병원사업과 | 현민의 건강 <br> 보호유지에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사업의 설치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을 검토함 ＜상세＞ $\rightarrow 2009$ 년 12 궐 개정 | 2014년 | 없음 |
| 211 | 가나가와현 병원 사업청 기업 직원 급여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조례 | $\begin{aligned} & \text { 2004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66호 } \end{aligned}$ | （구）병원 <br> 사업청 <br> 병원국 <br> 현립병원과 | 지방공영기업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병원사업청 기업직원의 급여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 $\begin{array}{\|c} \text { 폐지를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4 \text { 월 폐지 } \end{array}$ | －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12 | 가나가와현 중산간지역 등 농업 활성화 지원 기금 조례 | $\begin{aligned} & 2000 \text { 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62 \text { 호 } \end{aligned}$ | (구) 환경 <br> 농정부 <br> 농지과 | 중산간지역 등(평야 <br> 외연부에서 <br> 산간지까지의 농업 생산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계속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br> 가나가와현 중산간지역 등 농업 활성화 지원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rightarrow 2010 \text { 년 }$ <br> 3월 실효 | - | 없음 |
| 213 | 가나가와현 도시농업추진 조례 | $\begin{aligned} & \text { 2005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90 \text { 호 } \end{aligned}$ | 환경농정국 농정과 |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br> 발전에 대한 <br> 기본이념을 정하고 현 및 현민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6년 | 이ㅆㅡㅡㅁ |
| 214 | 가나가와현립 <br> 가나가와농업 <br> 아카데미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70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6호 } \end{gathered}$ | 환경농정국 취농참입 지원과 | 가나가와현 립 가나가와농업아카데미 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15 | 주요농작물 종자법의 실시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2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9호 } \end{gathered}$ | 환경농정국 <br> 농업진흥과 | 주요농작물 종자법에 근거해 현이 실시하는 종자생산포장(圃場)의 지정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16 | 가나가와현 <br> 지방도매（卸売） <br> 시장 조례 | 1971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65호 | 환경농정국 <br> 농업진흥과 | 도매시장법 제68조 및 제74조 규정에 근거해，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및 업무，중앙도매시장 <br> 및 지방도매시장 <br> 이외의 도매시장의 <br> 개설 등에 관해 필요한 <br>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 8 \text { 월 개정 } \end{aligned}$ | 2014년 | 있음 |
| 217 | 가나가와현 <br> 도매（卸売）시장 <br> 심의회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71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66호 } \end{gathered}$ | 환경농정국 <br> 농업진흥과 | 도매시장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현 도매시장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18 | 가나가와현립 <br> 플라워센터 <br> 오후나（大船） <br> 식물원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64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9호 } \end{gathered}$ | 환경농정국 농정과 | 화훼（花卉）원예의 진흥， 식물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현민이 식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현립 플라워 센터 오후나（大船）식물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219 | 현영（縣營） 토지개량사업 분담금 징수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6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58 \text { 호 } \end{gathered}$ | 환경농정국 <br> 농지보전과 | 토지개량법 제91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br> 현영（縣營） <br> 토지개량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 7 \text { 월 개정 } \end{aligned}$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20 | 가나가와현 <br> 꿀벌 <br> 전사（轉飼） <br> 조정 조례 | 195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48 호 | 환경농정국 <br> 축산과 | 현내에서의 양봉사업의 <br> 건전한 발달을 <br> 도모하기 위해， <br> 전사（벌치는 장소의 <br> 이동）허가 및 <br> 수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4년 | 있음 |
| 221 | 가나가와현 <br> 종축（種畜） <br> 검사 조례 | 1952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6호 | （구）환경 <br> 농정부 <br> 축산과 | 가축의 개량을 <br> 도모하기 위해 현이 실시하는 종축（種畜） 검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폐지를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3 \text { 월 폐지 } \end{gathered}$ | － | 있음 |
| 222 | 가나가와현립 오노（大野）산 유우（乳牛） 육성 목장 조례 | 1968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13 호 | 환경농정국 <br> 축산과 | 우량 후계우를 <br> 육성함으로써 낙농업의 <br> 진흥을 도모하고， <br> 더불어 현민의 <br> 축산업에 대한 이해 고취의 장을 제공하기 <br> 위한 시설인 <br> 가나가와현립 <br> 오노（大野）산 <br> 유우（젖소）육성 목장의 <br> 설치，관리 등에 관해 <br> 필요한 사항을 <br> 규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223 | 가나가와현 <br> 현행 <br> 조림（縣行造林） <br> 조례 | 1936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4호 | （구）환경 <br> 농정부 <br> 삼림과 | 치수，국토보안 및 <br> 삼림 자원의 <br> 배양보호유지를 <br> 목적으로，현이 토지 소유자와 <br> 수익분수（分收）방법에 <br> 따라 사유림 등을 <br> 조성하는 데 필요한 <br>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폐지를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 \text { 7월 폐지 } \end{aligned}$ | －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24 | 가나가와현립 21세기 숲 조례 | 1983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3호 | 환경농정국 삼림재생과 | 삼림 및 임업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향상과 임업의 진흥을 <br> 도모하고，더불어 현민의 보건 및 휴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설인 21 세기 숲의 설치，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25 | 가나가와 산림기금 조례 | $\begin{gathered} 1990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7호 } \end{gathered}$ | 환경농정국 삼림재생과 | 건전한 삼림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가나가와 삼림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3 \text { 월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없음 |
| 226 | 가나가와현립 후다카케（札掛） 숲의 집 조례 | $\begin{gathered} 1992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8호 } \end{gathered}$ | 환경농정국 삼림재생과 | 현민의 삼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현민이 참여하는 삼림 육성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인 후다카케（札掛）숲의 집의 설치，관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27 | 가나가와현 삼림 병해충 등 방제（防除）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에 관한 조례 | 1951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1호 | 환경농정국 수원환경 보전과 | 삼림 병해충 등 방제（防除）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거해，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 범위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28 | 가나가와현 어항（漁港） 관리 조례 | $\begin{gathered} \hline 1969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4호 } \end{gathered}$ | 환경농정국 수산과 | 현이 관리하는 어항（漁港）의 유지관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4년 | 없음 |
| 229 | 가나가와현 <br> 공영 기업의 <br> 설치 등에 <br> 관한 조례 | 1966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50호 | 기업청 <br> 기업국 <br> 총무과 | 지방공영기업법에 의거해，가나가와현 공영기업의 설치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4년 | 없음 |
| 230 | 가나가와현 기업 직원 급여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1953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23호 } \end{gathered}$ | 기업청 <br> 기업국 <br> 총무과 | 지방공영기업법 제 3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해，기업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 231 | 가나가와현 현영 상수도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4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11 \text { 호 } \end{gathered}$ | 기업청 <br> 기업국 <br> 업무과 | 가나가와현 현영 상수도의 급수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 232 | 사가미（相模）강 <br> 종합개발 <br> 공동사업에 <br> 지방공영기업 <br> 법 전부를 <br> 적용하는 조례 | $\begin{gathered} 1960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39 \text { 호 } \end{gathered}$ | 기업청 <br> 기업국 <br> 총무과 | 지방공영기업법 제2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사가미（相模）강 종합개발 공동사업에 지방공영기업법 전부를 적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 233 | 사카와（酒匂）강 <br> 종합 개발 사업에 지방 공영기업법 전부를 적용하는 조례 | $\begin{gathered} 1969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12 \text { 호 } \end{gathered}$ | 기업청 <br> 기업국 <br> 총무과 | 지방공영기업법 제2조 <br>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사카와（酒匂）강 <br> 종합개발사업에 지방공영기업법 전부를 적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34 | 공영기업자금 <br> 등 운용사업에 <br> 지방공영기업 <br> 법 전부를 <br> 적용하는 조례 | 1958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5호 | 기업청 <br> 기업국 <br> 총무과 | 지방공영기업법 제2조 <br> 제 3 항의 규정에 <br> 의거해，공영기업자금 등 운용사업에 <br> 지방공영기업법 전부를 적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35 | 가나가와현 법정 외 공용재산 사용료 징수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99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43 \text { 호 } \end{aligned}$ | 현토정비 <br> 국 용지과 | 국유재산법 제1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성 소관 법정외의 공공용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의 사용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236 | 가나가와현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 $\begin{gathered} 1953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19 \text { 호 } \end{gathered}$ | 현토정비국 도로관리과 | 도로법 규정에 근거해 <br> 점용허가를 받은 <br> 도로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점용료 금액 및 징수방법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 8 \text { 월 개정 } \end{aligned}$ | 2014년 | 없음 |
| 237 | 연도（沿道）구역 <br> 지정 기준에 <br> 관한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57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45 \text { 호 } \end{aligned}$ | 현토정비국 도로관리과 | 도로법 제44조 제1항의 <br> 규정에 근거해， 도로관리자가 도로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을 <br> 연도（沿道）구역으로 <br> 지정하는 경우의 <br>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있음 |
| 238 | 가나가와현 <br> 도로 부속물 자동차 주차장 조례 | $\begin{aligned} & 2000 \text { 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74호 } \end{aligned}$ | 현토정비국 도로관리과 | 도로법 제24호2 <br> 제1항에 규정된 주차장요금의 징수를 위한 도로부속물인 자동차주차장의 관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을 검토함 $\begin{gathered} \text { <상 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text { 12월 } \\ \text {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39 | 가나가와현 <br> 유수（流水） <br> 점용료 등 <br> 징수 조례 | $\begin{gathered} 1999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4호 } \end{gathered}$ | 현토정비국 <br> 유역해안 <br> 기획과 | 하천법상 유수（流水） 혹은 토지의 점용， 폐천（廢川）부지의 사용 또는 토석 등의 채취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거해 징수하는 유수점용료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4년 | 없음 |
| 240 | 사가미（相模） 호（湖），쓰쿠이 <br> （津久井）호， <br> 단자와（舟沢） <br> 호，사무카와 <br> （寒川）체수역 <br> （滞水域）， <br> 샤케（社家） <br> 체수역， <br> 이즈미（飯泉） <br> 체수역 등 <br> 수역에서의 <br> 행위 규제에 <br> 관한 조례 | 196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94호 | 현토정비국 유역해안 기획과 | 사가미（相模）호（湖）등 수역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수역에서의 주정（舟艇） 운항 등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12 \text { 월 } \\ \text {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있음 |
| 241 | 항만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64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93호 } \end{gathered}$ | 현토정비국 사방해안과 | 현이 설치하는 항만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242 | 항만 <br> 임항（臨港） <br> 지구내의 <br> 분구（分區）에서 <br> 의 구조물 <br> 건축의 규제에 <br> 관한 조례 | 2005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13 호 | 현토정비국 사방해안과 | 현이 관리하는 항만의 임항（臨港）지구 내에 건축되는 구조물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5년 | 있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43 | 가나가와현 <br> 해안 점용료 <br> 등 징수 조례 | $\begin{aligned} & 1999 \text { 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레 } \\ & \text { 제 } 45 \text { 호 } \end{aligned}$ | 현토정비국 사방해안과 | 해안법 제 11 조 및 <br> 제 37 조의 8 규정에 <br> 의거해 해안보전구역 혹은 <br> 일반공공해안구역의 <br> 점용 허가 또는 해안보전구역내 혹은 일반공공해안구역내에 서의 토석의 채취 허가에 드는 점용료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244 | 가나가와현 레저용 보트의 보관 장소에 관한 조례 | $\begin{aligned} & \text { 2001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64 \text { 호 } \end{aligned}$ | 현토정비국 <br> 유역해안 <br> 기획과 | 공공 수역 및 <br> 육상구역에서의 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레저용 보트 소유자 등의 책무 및 보관 장소 신고 등，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이ㅆㅡㅡㅁ |
| 245 | 가나가와현 <br> 사방（砂防） <br> 지정지의 <br> 관리에 관한 <br> 조례 | 2003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8호 | 현토정비국 사방해안과 | 사방（砂防）법 및 <br> 사방법시행규정에 <br> 근거한 사방 <br> 지정지（사방법 제2조 <br> 규정에 의거해 <br>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한 토지）의 관리， <br> 사방설비점용료의 징수 <br> 및 그 외 필요한 <br>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4년 | 있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46 | 흙 채취 규제 조례 | 1972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10 호 | 현토정비국 사방해안과 | 훍의 채취로 인한 재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채토완료구역에 녹화 등의 정비를 실시함으로써，현민의 안전 유지와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흙의 채취와 관련한 규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있음 |
| 247 | 가나가와현 토사의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 1999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3호 | 현토정비국 기술관리과 | 토사의 적절한 처리를 추진하기 위해 토사 반출，반입，매립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있음 |
| 248 | 가나가와현 수방（水防）협의 회 조례 | 1949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50 호 | 현토정비국 하천과 | 수방（水防）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해，수방 <br> 계획 및 그 밖의 수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가나가와현 <br> 수방협의회의 조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을 <br> 검토함 $\begin{gathered} \text { <상 세> } \\ \rightarrow 2009 \text { 년 } \\ \text { 12월 } \\ \text {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없음 |
| 249 | 가나가와현 토지이용조정 조례 | 1996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10 호 | 정책국 토지수자원 대책과 | 한정된 자원인 <br> 현토（縣土）를 적정하게 <br> 보전하고 계획적인 <br> 이용을 확보함으로써， <br> 현토의 균형 있는 <br> 발전과 현민의 복지 <br> 증진에 이바지하기 <br> 위해 개발행위 등의 <br>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br> 조정을 위한 협의 절차 <br> 등 필요한 사항을 <br> 규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있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50 | 가나가와현 국토이용계획 심의회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74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53 \text { 호 } \end{aligned}$ | 정책국 토지수자원 <br> 대책과 | 국토이용계획법 제 38 조 제 2 항의 규정에 근거해，가나가와현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51 | 가나가와현 토지이용심사 <br> 회 조례 | 197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54호 | 정책국 토지수자원 대책과 | 국토이용계획법 제39조 <br> 제 10 항의 규정에 근거해，가나가와현 토지이용심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52 | 가나가와현 도시계획 심의회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69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11 \text { 호 } \end{gathered}$ | 현토정비국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법 제77조 제 3 항의 규정에 근거해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가나가와현 도시계획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cdot$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53 | 가나가와현 토지수용사업 인정심의회 조례 | $\begin{aligned} & \text { 2002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42호 } \end{aligned}$ | 현토정비국 용지과 | 토지수용법 제34조7의 <br> 규정에 근거해 <br> 조사심의하는 <br> 가나가와현 <br> 토지수용사업인정심의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54 | 가나가와현 개발심사회 조례 | $\begin{gathered} 1969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45 \text { 호 } \end{gathered}$ | 현토정비국 건축안전과 | 도시계획법 제78조 <br> 제 8 항의 규정에 근거해，동법에서 그 권한으로 지정한 사항 및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裁決）을 위해 설치된 가나가와현 개발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55 | 공유지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모를 정하는 조례 | 2003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5호 | 정책국 토지수자원 대책과 | 공유지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정령’）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근거해， 도시계획시설 등의 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유상양도시 신고가 필요한 구역 및 규모를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있음 |
| 256 | 도시계획법 제 34 조 제 12 호 규정에 따른 개발허가 등 기준을 정한 조례 | 2001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63호 | 현토정비국 <br> 건축지도과 | 도시계획 법 제34조 제 12 호에 근거한 시가화（市街化）조정 구역내에서의 개발 허가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 개정을 <br> 검토함 <br> ＜상세＞ <br> $\rightarrow 210$ 년 <br> 8월 개정 | 2014년 | 있음 |
| 257 | 풍치 지구 조례 | $\begin{gathered} 1970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5호 } \end{gathered}$ | 환경농정국 자연환경 보전과 | 도시계획법 제58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풍치지구내에서의 행위와 관련해 필요한 규제를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8 \text { 월 개정 } \\ \rightarrow 2015 \text { 년 } \\ 4 \text { 월 폐지 } \end{gathered}$ | － | 있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58 | 가나가와현 도시공원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03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5호 } \end{gathered}$ | 현토정비국 도시공원과 | 가나가와현이 조성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 세＞ | 2014년 | 없음 |
| 259 | 가나가와현 <br> 경관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06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55 \text { 호 } \end{gathered}$ | 현토정비국 <br> 도시정비과 | 경관 조성과 관련해， 기본 이념， <br> 현•현민•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경관 조성 관련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6년 | 있음 |
| 260 | 가나가와현 옥외광고물 조례 | $\begin{aligned} & 1949 \text { 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62 \text { 호 } \end{aligned}$ | 현토정비국 <br> 도시정비과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 광고물 및 옥외 광고물을 거치하는 물건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및 지역 경관 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text { 12월 } \\ \text { 개정 } \end{gathered}$ | 2016년 | 이ㅆㅡㅡㅁ |
| 261 | 가나가와현 건축기준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60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28호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현토정비국 } \\ & \text { 건축지도과 } \end{aligned}$ | 건축기준법에 근거해， 건축물 등의 제한 및 그 밖의 건축기준법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hline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text { 12월 } \\ \text {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이ㅆㅡㅡㅁ |
| 262 | 가나가와현 <br> 건축심사회 <br> 조례 | $\begin{gathered} 1950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56 \text { 호 } \end{gathered}$ | 현토정비국 건축안전과 | 건축기준법 제83조 규정에 따라，동법이 규정하는 동의 및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裁決）을 위해 설치된 가나가와현 건축심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63 | 가나가와현 건축사법 관계 수수료 조례 | $\begin{gathered} 2000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14호 } \end{gathered}$ | 현토정비국 건축안전과 | 택지건물거래업 법에서 규정하는 사무에 드는 수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00 \text { 년 } \\ & 3 \text { 월 개정 } \end{aligned}$ | 2013년 | 없음 |
| 264 | 가나가와현 택지조성 등 규제법 관계 수수료 조례 | $\begin{aligned} & 2000 \text { 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15 \text { 호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현토정비국 } \\ & \text { 건축지도과 } \end{aligned}$ | 택지조성 등 규제법에 따른 신청에 대해 징수하는 수수료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265 | 가나가와현 택지건물 거래업법 관계 수수료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00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17 \text { 호 } \end{gathered}$ | 현토정비국 건설업과 | 택지조성 등 규제법에 따른 신청에 대해 징수하는 수수료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266 | 가나가와현 현영주택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97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36호 } \end{aligned}$ | 현토정비국 공공주택과 | 공영주택법에 근거한 <br> 공영주택 및 <br> 공동시설과 <br> 주택지구개량법에 근거한 개량주택 및 지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 3 \text { 월 개정 } \end{aligned}$ | 2014년 | 있음 |
| 267 | 가나가와 <br> 현영의 후생 <br> 주택에 관한 <br>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64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54호 } \end{gathered}$ | （구）현토 <br> 정비부 <br> 주택과 | 현영 후생주택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폐지를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text { 4월 폐지 } \end{gathered}$ | － | 이ㅆㅡㅡㅁ |
| 268 | 가나가와현영（ <br> 縣營） <br> 리로케이션 <br> 주택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95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10 \text { 호 } \end{gathered}$ | （구）현토 <br> 정비부 <br> 주택과 | 현영（縣營）리로케이션 <br> 주택의 설치，관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폐지를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4 \text { 월 폐지 } \end{gathered}$ | － | 이ㅆㅡㅡㅁ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69 | 가나가와현 <br> 임차 <br> 공공임대주택 <br> 조례 | 1993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1호 | 현토정비국 주택계획과 | 현 임차（借上） 공공임대주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9 \text { 년 } \\ \text { 12월 } \\ \text { 개정 } \end{gathered}$ | 2014년 | 있음 |
| 270 |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 조직 조례 | $\begin{aligned} & 1999 \text { 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39 \text { 호 } \end{aligned}$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 조 단서의 규정에 근거해，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의 위원 수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271 | 가나가와현립 종합교육센터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02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10 \text { 호 } \end{gathered}$ | 교육위원 <br> 회 교육국 총무과 | 교육관계직원의 연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기관인 가나가와현립 종합교육센터의 설치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72 | 가나가와현 교과용도서선 정심의회 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 196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70호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어린이교육 <br> 지원과 | 의무교육학교의 교과용 도서 무상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br> 제11조 제2항에 근거해，현 교육위원회가 설치한 교육용도서선정 심의회 의 위원의 정수를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73 | 가나가와현 스포츠진흥심 의회 조례 | 1962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7호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스포츠과 | 스포츠진흥법 제 18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br> 현 교육위원회가 설치하는 가나가와현 스포츠진흥심의회의 위원 정수，임기 및 기타 심의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개정 • } \\ \text { 폐지 } \\ \text { 필요없음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10 \text { 월 } \\ \text { 폐지 } \end{gathered}$ | － | 없음 |
| 274 |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 사무처리 특례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1999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46 \text { 호 } \end{gathered}$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행정과 |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5 조 제 1 항의 규정에 <br> 의거해，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br> 시정촌（市町村）이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4년 | 없음 |
| 275 | 시정촌（市町村） <br> 립 학교직원 정수 조례 | 1951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40 호 | 총무국 <br> 인재과，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소중학교 <br> 인사과 |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1 조 규정에 근거해， 현비（縣費）부담교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276 | 교육장의 급여 등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1949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42 \text { 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자치법 제204조 <br> 제3항의 규정에 <br> 의거해，교육장의 급여， 수당 및 여비와 그 지급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77 | 학교 직원의 <br> 급여 등에 <br>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7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56 \text { 호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총무국 } \\ \text { 노무급여과 } \end{gathered}$ |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br> 법률 제42조 및 시정촌（市町村）립학교직 <br> 원의 급여부담법 제 3 조의 규정에 근거한 현립학교（대학교 제외）직원 및 시정촌립학교직원의 급여부담법 제1조 및 제 2 조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78 | 공립 <br> 의무교육학교 등의 <br> 교육직 원의 <br> 급여 등에 <br> 관한 <br> 특별조치에 관한 조례 | 1971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67호 | $\begin{gathered} \text { 총무국 } \\ \text { 노무급여과 } \end{gathered}$ |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br> 법률 제42조，공립 <br> 의무교육학교 등의 교육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모든 공립 의무교육학교 등의 교육직원의 급여와 그 밖의 근무 조건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79 | 학교 직원의 <br> 근무 시간， <br> 휴가 등에 <br> 관한 조례 | 1957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57호 | 총무국 <br> 노무급여과 | 지방공무원법 제24조 <br> 제6항 및 <br>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2 조 규정에 의거해， 현립학교（대학교 제외）직원（이하 <br> ‘현립학교직원’）및 <br> 시정촌（市町村）립 <br> 학교직원의 급여부담법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직원（이하 ‘현비부담교직원’）의 근무시간，휴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80 | 시정촌（市町村） <br> 립 학교 현비부담교직 <br> 원의 <br> 분한（分限）에 관한 조례 | 1956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35호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3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해， <br> 시정촌（市町村）립학교직 원의 급여부담법 제 1 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직원（이하 <br> ‘현비부담교직원’）의 뜻에 반하는 휴가 및 급여삭감의 이유， 현비부담교직원의 뜻에 반하는 강직，면직， 휴직 및 급여삭감의 절차 및 효과와 현비부담교직 원의 실직의 예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81 | 시정촌（市町村） <br> 립 학교 현비부담교직 <br> 원의 징계 절차 및 효과에 관한 조례 | 1956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36호 | 총무국 <br> 인재과 |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br> 제43조 제3항에 근거해， <br> 시정촌（市町村）립학교직 원의 급여부담법 제 1 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징계 절차 및 효과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 282 | 외국 <br> 지방공공단체 <br> 기관 등에 <br> 파견된 <br> 시정촌（市町村） <br> 립 학교 <br> 현비부담교직 <br> 원의 처우 <br> 등에 관한 <br> 조례 | $\begin{gathered} 1988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7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인재과 | 외국 지방공공단체 <br> 기관 등에 파견된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제 7 조 및 부칙 제 2 조의 규정에 근거해，외국 <br> 지방공공단체 기관 등에 파견된 <br> 시정촌（市町村）립학교교 <br> 직원의 급여부담법 <br> 제1조 및 제 2 조에 <br> 규정된 직원（이하 <br> ‘현비부담교직원’）의 <br> 처우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 283 | 가나가와현립 고등학교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64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68 \text { 호 } \end{aligned}$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행정과 | 가나가와현이 설립한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3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84 | 현립학교 수업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 1958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3호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학교경리과 | 지방자치법 제 225 조 및 제227조와 학교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해, 가나가와현립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의 수업료 및 기타 비용의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4년 | 없음 |
| 285 | 현립학교의 증명서 교부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55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12 \text { 호 } \end{aligned}$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학교경리과 | 현립학교의 학생이었던 자가 재학기간 상황 등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발급받을 시의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4년 | 없음 |
| 286 | 가나가와현 장학금 대부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64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69호 } \end{gathered}$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학교경리과 | 가나가와현 <br> 교육위원회가 <br> 소장(소관)하는 <br> 장학금의 대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을 <br> 검토함 <br> <상 세> <br> $\rightarrow$ 검토 <br> 결과 <br> 개정필요 <br> 없음 | 2014년 | 있음 |
| 287 | 가나가와현 평생 학습 심의회 조례 | 1992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9호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생애학습과 | 생애(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계 등의 정비에 <br> 관한 법률 제 10 조 <br> 제 1 항에 근거해, 현 교육위원회에 설치하는 <br> 가나가와현 <br> 생애학습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88 | 가나가와현 <br> 사회교육위원 회의 정수 및 임기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1949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52 \text { 호 } \end{gathered}$ | （旧）교육 <br> 위원회 <br> 교육국 <br> 생애학습 <br> 문화재과 | 사회교육법 제 15 조 제 1 항에 근거해，현의 교육위원회에 설치하는 사회교육위원회의 정수 <br> 및 임기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gathered} \text { 폐지를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text { 4월 폐지 } \end{gathered}$ | － | 없음 |
| 289 | 가나가와 현립 도서관 조례 | 1958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32호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생애학습과 | 현민의 지식 및 교양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교육시설인 가나가와현립 도서관의 설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290 | 가나가와 현립 가나자와（金沢） 문고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67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5호 } \end{gathered}$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생애학습과 | 현민의 지식 및 교양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교육시설인 가나가와현립 가나자와（金沢）문고의 설치，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291 | 가나가와 현립 박물관 조례 | $\begin{gathered} 1966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3호 } \end{gathered}$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생애학습과 | 현민의 지식 및 교양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교육시설인 가나가와현립 박물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292 | 가나가와현 <br> 현립 근대미술관 조례 | 1967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6호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생애학습과 | 현민의 지식 및 교양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교육시설인 가나가와현립 근대미술관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4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93 | 가나가와 현립 만남의 마을（ふれあい の村）조례 | $\begin{gathered} 1990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26호 } \end{gathered}$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교육기획 <br> 지원과 | 아동，학생，청소년 등이 자연을 체험하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자립심，협동심 등을 기를 수 있는 어우러짐 활동을 위한 시설로써의 가나가와현립 만남의 마을（ふれあいの村）의 설치，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3년 | 없음 |
| 294 | 가나가와 현립 스포츠 회관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84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호 } \end{gathered}$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스포츠과 | 스포츠의 진흥을 <br> 도모하고，현민 심신의 <br> 건전한 발달에 <br> 기여하기 위한 시설인 <br> 가나가와현립 <br> 스포츠회관의 설치， <br> 관리 등과 관련해 <br>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br>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295 | 가나가와 현립 <br> 무도（武道）관 조례 | $\begin{gathered} 1982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호 } \end{gathered}$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스포츠과 | 무도（武道）의 진흥을 도모하고，현민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현립 무도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96 | 가나가와현립 체육센터 및 가나가와현립 세이쇼（西湘）지 구 체육센터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65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26호 } \end{gathered}$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스포츠과 | 체육의 진흥을 <br> 도모하고 현민 심신의 <br> 건전한 발달에 <br> 기여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현립 체육센터 <br> 및 가나가와현립 <br> 세이쇼（西湘）지구 <br> 체육센터의 설치，관리 <br> 등에 관해 필요한 <br>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297 | 가나가와 현립 사가미（相模）호 조정장 조례 | $\begin{aligned} & 1963 \text { 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40 \text { 호 } \end{aligned}$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스포츠과 | 보트 경기 등을 통한 현민의 스포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현립 사가미（相模）호 조정장의 설치，관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298 | 가나가와 현립 이세하라（伊勢原）사격장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97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11호 } \end{aligned}$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스포츠과 | 현민에게 사격 관련 지식의 습득 및 기술의 <br> 향상을 위한 장을 제공하고，이를 통해 현민의 스포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인 <br> 가나가와현립 <br> 이세하라（伊勢原） <br> 사격장의 설치，관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begin{array}{\|l} \text { 개정을 } \\ \text { 검토함 } \\ \text { <상세> } \\ \rightarrow 2010 \text { 년 } \\ 3 \text { 월 개정 } \end{array}$ | 2014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299 | 가나가와현립 산악스포츠센 터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97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 } 12 \text { 호 } \end{aligned}$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스포츠과 | 현민에게 등산 관련 지식의 습득, 기술의 향상 및 레크레이션의 장을 제공하고, 이로써 현민의 스포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현립 산악스포츠센터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4년 | 없음 |
| 300 | 가나가와현 문화재 보호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5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13 \text { 호 } \end{gathered}$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문화유산과 | 문화재보호법(이하 ‘법’) 제 18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해,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 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중에서 현 관할구역내에 존재하며 현에 중요한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4년 | 있음 |
| 301 | 가나가와현 문화재 보호 심의회 조례 | 1976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5호 | 교육위원회 <br> 교육국 <br> 문화유산과 | 문화재보호법 제 190 조 제 1 항에 근거해, 현 교육위원회에 설치된 가나가와현 문화재보호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4년 | 없음 |
| 302 | 공안 위원회 위원의 복무 선서에 관한 조례 | $\begin{aligned} & \text { 1954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34호 } \end{aligned}$ | 경찰본부 <br> 총무부 <br> 총무과 | 경찰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지방공무원법 제 31 조 규정에 근거해, 공안위원회 위원의 복무 선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 세> | 2014년 | 없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303 | 경찰조직에 <br>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4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28호 } \end{gathered}$ | 경찰본부 <br> 경무부 <br> 경무과 | 경찰법 제47조 제4항 <br> 및 제53조 제 4 항의 <br> 규정에 근거해， <br> 경찰조직의 기본적 <br>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304 | 가나가와현 경찰서 협의회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01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11 \text { 호 } \end{gathered}$ | 경찰본부 <br> 총무부 <br> 광보현민과 | 경찰법 제53조2 <br>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해，가나가와현 경찰서협의회의 설치， 위원 정수，임기 및 기타 경찰서협의회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4년 | 없음 |
| 305 | 가나가와현 경찰관에 대한 지급품 및 대여 물품에 관한 조례 | 195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29호 | 경찰본부 <br> 총무부 <br> 장비과 | 가나가와현 경찰관에 게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복장을 지급하고 장비물품을 대여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306 | 가나가와현경찰 교통순시원에 대한 지급품 및 대여품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70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47호 } \end{gathered}$ | 경찰본부 <br> 총무부 <br> 장비과 | 가나가와현경찰 교통순시원（순찰원）에 게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복장을 지급하고， 장비물품을 대여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307 | 가나가와현 유치 시설 시찰 위원회 조례 | $\begin{aligned} & \text { 2007년 } \\ & \text { 가나가 } \\ & \text { 와현 } \\ & \text { 조례 } \\ & \text { 제8호 } \end{aligned}$ | 경찰본부 <br> 총무부 <br> 유치관리과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21 조 제 6 항의 규정에 근거해， 유치시설시찰위원회（이 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br> ＜상세＞ | 2017년 | 없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308 | 가나가와 현 지방 경찰 직원 정수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4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32호 } \end{gathered}$ | 총무국 <br> 인재과, <br> 경찰본부 <br> 경무부 <br> 경무과 | 경찰법 제57조 제 2 항의 규정에 근거해, 지방경찰직원 정수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개정을 } \\ & \text { 검토함 } \\ & \text { <상세> } \\ & \rightarrow 2012 \text { 년 } \\ & \text { 3월 개정 } \end{aligned}$ | 2014년 | 없음 |
| 309 | 경찰관 직무에 협력원조한 자에 대한 재해급부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85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30 \text { 호 } \end{gathered}$ | 경찰본부 <br> 경무부 <br> 경무과 | 경찰관의 직무에 협조한 자의 재해(부상, <br> 질병, 장애 또는 사망)로 인한 요양 및 그 밖의 급부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있음 |
| 310 | 집회, 집단 행진 및 집단 시위 운동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0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69호 } \end{gathered}$ | 경찰본부 <br> 경비부 <br> 경비과 | 집회, 단체행진 및 집단시위운동과 관련해, 공공의 안전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있음 |
| 311 | 가나가와현 민폐행위 방지 조례 | $\begin{gathered} 1963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26호 } \end{gathered}$ | 경찰본부 생활안전부 생활안전 총무과 | 현민 및 체류자의 생활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난폭행위, 치한 및 도촬 등의 난잡행위, 풍속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등 대중에게 현저하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 및 단속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있음 |
| 312 | 확성기 <br> 사용으로 인한 폭소음 규제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92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36호 } \end{gathered}$ | 경찰본부 <br> 경비부 공안제일과 | 현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할만한 확성기의 사용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있음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br> 결과 | 다음 재검토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313 | 풍속영업 등의 <br>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조례 | 1984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44호 | 경찰본부 생활안전부 생활안전 총무과 |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해，풍속영업 등의 영업장소와 영업시간의 제한，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풍속영업 허가신청 수수료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있음 |
| 314 | 투견，투계， <br> 투우 등의 <br> 방지에 관한 <br> 조례 | $\begin{gathered} \text { 1956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40 \text { 호 } \end{gathered}$ | 경찰본부 생활안전부 생활경제과 | 난폭하고 잔혹한 풍조를 조성할 우려가 있는 투견，투계，투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있음 |
| 315 | 가나가와현 도로교통법 관계 수수료 조례 | $\begin{gathered} 2000 \text { 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18 \text { 호 } \end{gathered}$ | 경찰본부 <br> 교통부 교통총무과 | 도로교통법 <br> 제112호（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에서 규정하는 사무에 드는 수수료의 징수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있음 |
| 316 | 가나가와현 폭주족 등의 추방 촉진에 관한 조례 | $\begin{gathered} \text { 2003년 } \\ \text { 가나가 } \\ \text { 와현 } \\ \text { 조례 } \\ \text { 제 } 73 \text { 호 } \end{gathered}$ | 경찰본부 <br> 교통부 교통수사과 | 폭주족 및 폭주행위를 하는 자의 추방 촉진과 관련해，현，현민， 보호자 등의 책무 및 폭주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있음 |


| 구분 | 조례명 | 조례번호 | 소관과 | 조례의 개요 | 재검토 결과 | 다음 <br> 재검토 <br> 예정 | 재검토 <br> 규정의 <br> 유무 |
| :---: | :---: | :---: | :---: | :---: | :---: | :---: | :---: |
| 317 | 자동차 <br> 보관장소 증명서 교부 신청 수수료 등 징수 조례 | 1972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 12 호 | 경찰본부 <br> 교통부 <br> 주차대책과 | 경찰서장이 시행하는 자동차 보관장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br> ‘보관장소법’)에 관한 사무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 <br> 폐지 <br>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 318 | 가나가와현 경찰교통 안전센터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 1967년 <br> 가나가 <br> 와현 <br> 조례 <br> 제37호 | 경찰본부 <br> 교통부 <br> 교통총무과 | 가나가와현 경찰교통안전센터에서 실시하는 운전자의 성격 등에 관한 적성검사의 수수료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정• <br> 폐지 필요없음 <상세> | 2014년 | 없음 |


[^0]:    4) 김기표,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2011), 9쪽.
    5) 임종훈/박수철, 입법과정론, 박영사(2006), 278쪽.
[^1]:    10) 네이버 백과사전, 규제일몰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5204\&cid $=200000000 \&$ categoryId $=200000205$ (2013년 10월1일 검색) 참조.
[^2]:    18）西尾 勝•神野 直彦•礒崎 初仁，前揭書， 12 頁。

[^3]:    19）西尾 勝•神野 直彦•礒崎 初仁，前揭書， 31 頁。
    20）예를 들면，주민기본대장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 해 제정한 쿠마모토시의 주민기본대장의 열람제한조례등이 있다．
    21）예를 들면，마을만들기 조례，러브호텔 규제 조례등 다양한 조례가 있다．

[^4]:    27）田中孝男，「分権時代の法制評価を考える」，地方自治の職員研修434号，1999年，44～45頁。
    28）http：／／www．pref．kanagawa．jp／osirase／01／0115／minaoshi／index．html 참조．
    29）出石稔，「自治立法の整備活用方針」，ガバナンス62号，2006年，118頁以下。

[^5]:    30）일정기간 경과후에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조례．

[^6]:    32）自治体法務検定委員会編，『自治体法務検定公式テキスト 政策法務編 平成 23 年度検定対応』第1法規，2010年，326頁。
    33）自治体法務検定委員会編，前掲注 316－317頁。
    34）自治体法務検定委員会編，前掲注 319－321頁。

[^7]:    47）北村 喜宣•山口 道昭•出石 稔•礒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地域特性に適合し た法環境の創造，有斐閣，2011，226頁。

[^8]:    59）衣笠章 前掲論文，137頁。
    60）衣笠章 前掲論文，138頁。

